계간

KIPF 재정동향

제1권 제3호(통권 제3호)

2010년 9월

한국조세연구원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5

Ⅰ. 재정정책 동향 ····· 7

1. 2009년 및 2010년 집행 ····· 7
2. 2011회계연도 계획 ····· 12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15
4. 최근 재정상황 ····· 16

Ⅱ. 이슈 및 분석 ····· 20

1. 일본재정의 재점검 / 박형수 ····· 20
2. 지방재정 위기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 김현아 ····· 38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박노욱 ····· 53
4.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 박형수 ····· 66
5. 독일의 통일비용과 재정대응 / 홍승현 ····· 80

Ⅲ. 국내외 보고서 ····· 89

1. 주요 보고서 요약 ····· 89
2. 보고서 목록 ····· 108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 121

Ⅰ. 주요국 동향 ····· 123

Ⅱ. 미국 (FY2010: 2009.10~2010.9) ····· 126

Ⅲ. 일본 (FY2010: 2010.4~2011.3) ····· 134

Ⅳ. 영국 (FY2010-11: 2010.4~2011.3) ····· 152

Ⅴ. 독일 (FY2010: 2010.1~2010.12) ····· 163

Ⅵ.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 169

Ⅶ. 호주 (FY2010-11: 2010.7~2011.6) ····· 177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 191

Ⅰ. 미국 (2010년 6월 기준) ····· 193

Ⅱ. 일본 (2010년 5월 기준) ····· 199

Ⅲ. 영국 (2010년 6월 기준) ····· 205

Ⅳ. 독일 (2010년 6월 기준) ····· 210

Ⅴ. 캐나다 (2010년 5월 기준) ····· 215

Ⅵ. 호주 (2010년 5월 기준) ····· 22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Ⅰ 재정정책 동향*

1. 2009년 및 2010년 집행

가. 2009년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 7월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5.9%인 29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21.4%인 105개 사업이 미흡사업으로 평가됨

○ 기획재정부는 34개 부처, 490개(총 35.2조원)의 일반예산, R&D, 정보화사업에 대한 '09년도 성과평가를 수행,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음

– 일반예산사업 : 341개(31.6조원), R&D : 70개(3조원), 정보화 : 79개(0.6조원)

○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금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음

– R&D 사업의 경우 단순한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기준을 적용하였고

– 예산집행실적은 중앙정부 배정기준에서 지자체 등 예산집행기관의 실집행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비가 증액되며, 부진한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11년 예산편성시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할 예정

– 다만 법정의무지출, 연도별 공정이 정해진 SOC사업 등은 제외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표 1-Ⅰ-1〉 사업유형별 평가결과

(단위: 개, 점, %)

	사업수	평균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계	490	63.3	29	5.9	356	72.7	105	21.4
일반재정 (예산)	341	62.8	18	5.3	249	73.0	74	21.7
R&D	70	65.9	7	10.0	49	70.0	14	20.0
정보화	79	63.2	4	5.1	58	73.4	17	21.5

나. 2009년 6개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

□ 3년 이상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특정평가(심층평가)가 실시되어 사업구조조정 등의 권고가 내려짐

○ R&D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방식의 특정평가제도는 장기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실시해 옴

– 현재 각 부처가 수행하는 R&D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체크리스트 방식)와 특정평가(심층평가 방식)의 2가지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

– 금번 특정평가는 기재부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2009년 10월부터 9개월간 실시함

○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점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

〈사업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①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 사업추진의 3가지 방식 중에서 R&D 역량 강화(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지원서비스(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는 타 사업과 중복 등을 감안, 가급적 중단하고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미니클러스터 운영, 기술포럼, 세미나 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

–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특정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단지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 필요

②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 전반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수한 질적 성과를 창출한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INNO-BIZ) 지원과제, 對中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과제,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제(해외 수요기업 공동참여형 사업, 합작투자 등)에 중점 지원 필요

③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

–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출연(연)에서 이관받은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추가기술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추가기술 R&D 지원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제성격,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필요

④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사업

–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 '04~'13년)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화 및 라이센싱 등을 통한 실적이 부재하며 목표 대비 연구비 자체조달률이 낮음

–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현실적인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가 사업을 통해 지원한 48개 핵심환경기술 중 5개 기술은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후속사업에서 투자비중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제외

• 5개 기술 : 먹는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저수조·옥내배관 유지관리기술, 오염토양복원기술

⑥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 1차 사업('01~'10)을 통해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

– 후속사업인 2차 사업('11~'20)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분야에 집중하고, 미흡

했던 상용화 부문의 지원은 축소

〈표 1-Ⅰ-2〉 2009년 R&D 특정평가 대상사업

사업명	부처	'09년 예산 (억원)
계		6,574
①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지식경제부	688
②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사업	〃	3,187
③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	지경부, 중기청 등	990
④ 동북아R&D허브 기반구축사업	교과부	283
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1,003
⑥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	농진청	423

다. 2010 회계연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

□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통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

○ 정부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60%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 6월말까지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1.3조원 중 165.4조원을 집행(진도율 61.0%)하여 상반기 집행계획 162.9조원(진도율 60.0%) 대비 2.5조원(진도율 1%p) 초과 집행

– 이는 2009년에 비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 등과 함께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 정부는 하반기중 재정집행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

① 최근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균등집행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②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 감소 보완을 위해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

③ 아직도 어려운 서민체감 경기를 감안하여 일자리 · 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

④ 상반기 조기집행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지속 추진

〈표 1-Ⅰ-3〉 6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2010년 집행규모 (A)	계 획		실 적		증감	
		금액 (B)	진도율 (B/A)	금액 (C)	진도율 (C/A)	금액 (C-B)	집행률 (C/B)
합 계	271.3	162.9	60.0	165.4	61.0	2.5	101.6
예 산	175.1	105.7	60.4	109.3	62.4	3.6	103.4
기 금	31.3	17.8	56.8	18.2	58.1	0.4	102.2
공공기관	64.9	39.3	60.6	38.0	58.6	-1.3	96.4

□ 이러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민간소비 · 투자를 보완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87%p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다만 이러한 재정 조기집행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하반기 및 내년도의 성장률 하락효과로 상쇄될 전망

○ 이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사업은 연간예산 5.5조원의 63.6%인 3.5조원을 집행하여 민간부문 고용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고용확대에도 기여

○ 또한, 수출금융 · 긴급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 · 중소 벤처지원 등을 통해 아직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도 적극 지원

2. 2011회계연도 계획

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

□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9조원으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306.6조원)보다 6.3조원 정도 큼

○ 각 부처는 지난 4월말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6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

– 각 부처가 요구한 총지출 규모는 312.9조원으로 2010예산 대비 요구 증가율은 6.9%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이후 지출증가 억제를 위해 이례적으로 요구 증가율(4.9%)을 낮추었던 지난해보다는 높았지만, 그 이전 3개년 평균(7.5%)보다는 다소 낮아져 예산요구가 평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요구 증가율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1년 총지출 계획치가 306.6조원이었으나 최근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당국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음

–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부는 2011년도에는 제로베이스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을 천명

– 예산과 기금의 요구 증가율이 6.9%로 동일하지만, 특히 예산의 경우 요구액이 219.4조원으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치(213.8조원)보다 5.6조원 큰 상황임

– 지출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국방, 일반공공행정 등 분야의 요구액이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분야별 계획치보다 큼

○ 정부가 발표한 증액요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정책지원 소요 : '10년 대비 +5조원 수준

-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 : +1.5조원
- 4대강 살리기 사업(SOC) : +0.1조원
- 30대 선도 프로젝트 : +0.9조원
- 보금자리 주택 건설 : +1.4조원

– 국방전력 유지, 방위력 개선 : +2.0조원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 +4.1조원

– 국채이자 : +3.5조원

–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 +4.7조원

〈표 1–Ⅰ–4〉 각 부처 2011년 요구 총괄표

(단위: 조원)

구 분	'10 예산 (A)	중기계획 (B)	'11 요구 (C)	'10 예산 대비 증감		중기계획 대비 증감	
				(C–A)	%	(C–B)	%
1. R&D	13.7	14.9	15.2	1.5	10.8	0.3	2.0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1	15.1	14.6	–0.5	–3.5	–0.5	–3.3
3. SOC	25.1	25.3	25.2	0.1	0.3	–0.1	–0.4
4. 농림수산식품	17.3	17.4	16.9	–0.4	–2.3	–0.5	–2.9
5. 보건 · 복지 · 노동	81.2	85.3	87.3	6.1	7.4	2.0	2.3
6. 교 육	38.3	40.7	40.5	2.2	5.8	–0.2	–0.5
7. 문화 · 체육 · 관광	3.9	3.8	3.7	–0.2	–6.1	–0.1	–2.6
8. 환 경	5.4	5.5	5.3	–0.1	–2.5	–0.2	–3.6
9. 국 방(일반회계 총계)	29.6	30.9	31.6	2.0	6.9	0.7	2.3
10. 외교 · 통일	3.3	3.4	3.7	0.4	11.8	0.3	8.8
11. 공공질서 · 안전	12.9	13.2	13.5	0.6	4.7	0.3	2.3
12. 일반공공행정	48.7	52.7	53.4	4.7	9.7	0.7	1.3
총 지 출	292.8	306.6	312.9	20.1	6.9	6.3	2.1

나. 2011년 예산편성 일정

□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 2010. 1월말	각 부처, 2010~2014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2010. 4.17	국무회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 확정(4월말 각 부처 통보)
○ 2010. 5.9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 2010. 5.14	기획재정부,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 2010. 6월	「'1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12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 2010. 6월말	각 부처, 2011년 예산요구서 제출
○ 2010. 8.3	2010년 시 · 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 향후 일정

○ 2010. 7~9월	예산 · 기금 요구 협의 · 보완
○ 2010. 9월 중순	재정정책자문회의
○ 2010. 9.30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 2010. 10.2	2011예산안 국회제출
○ 2010. 11~12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2010. 12.2	2011예산안 국회 본회의 심의 · 의결(법정시한)
○ 2010. 12월	2011예산 국회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의결 2011예산 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3.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됨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규율 강화 및 여건 변화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정규율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종류, 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 규정

–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구조조정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 산출근거,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재정수반 법령안의 제·개정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에 법령안이 변경되어 재협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는 요건 규정

–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도 성인지 예산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 대규모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의무화

–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000억원 이상

4. 최근 재정상황

□ **(2010년 5월 통합재정)** 전년도 1~5월에 비해 수입은 19.7조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0.2조원 정도 감소하여 관리대상수지가 16.8조원이나 개선(33.4조원 적자 → 16.8조원 적자)되어 금년도 적자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전망

– 다만 과거보다 약 2배 정도로 높게 계획된 자본수입의 진도비가 39.5%로 과거 실적에 비해 부진

○ 반면,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상반기 60% 집행 목표)으로 5월 진도비가 48.6%에 달하였는데, 이는 과거 5년 평균(44.0%)은 물론 전년(46.6%)보다도 높은 편

○ 이에 따라 5월까지의 누적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16.8조원으로 금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목표(30.1조원)의 55.8% 수준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Ⅰ-1] 2009년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의 월별 진도비 추이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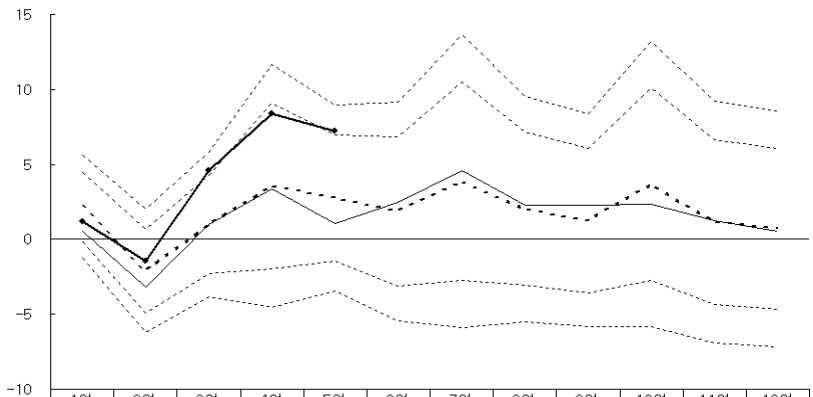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upper bound(15%)	5.6	2.0	5.8	11.7	8.9	9.2	13.6	9.5	8.4	13.2	9.2	8.6
------- lower bound(15%)	-1.3	-6.2	-3.8	-4.6	-3.4	-5.4	-5.9	-5.5	-5.9	-5.8	-6.9	-7.2
------- upper bound(30%)	4.5	0.7	4.3	9.1	7.0	6.8	10.5	7.1	6.1	10.1	6.6	6.0
------- lower bound(30%)	-0.2	-4.9	-2.3	-2.0	-1.4	-3.1	-2.8	-3.1	-3.6	-2.8	-4.3	-4.6
- - - - 2004~2009년 평균	2.2	-2.1	1.0	3.6	2.8	1.9	3.9	2.0	1.3	3.7	1.2	0.7
—— 2009년	0.5	-3.2	1.0	3.4	1.0	2.5	4.6	2.3	2.3	2.3	1.2	0.5
—●— 2010년	1.2	-1.5	4.6	8.4	7.2							

(지출 및 순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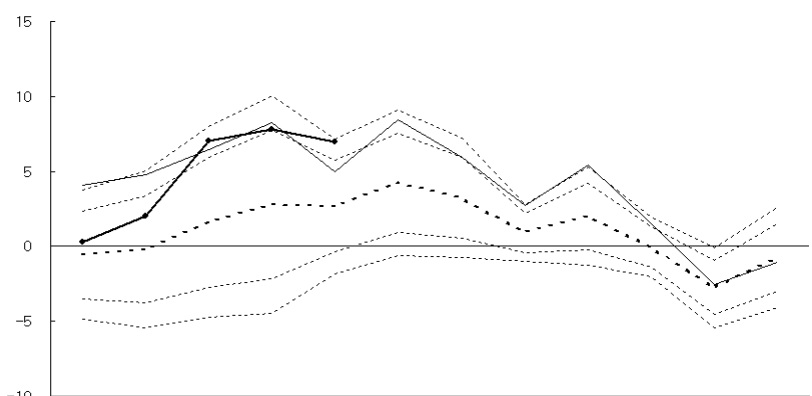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upper bound(15%)	3.7	5.0	8.0	10.0	7.2	9.1	7.2	2.8	5.3	1.9	-0.1	2.6
------- lower bound(15%)	-4.9	-5.5	-4.7	-4.5	-1.8	-0.6	-0.7	-1.0	-1.3	-2.0	-5.4	-4.1
------- upper bound(30%)	2.4	3.4	5.9	7.7	5.7	7.6	6.0	2.2	4.2	1.3	-0.9	1.5
------- lower bound(30%)	-3.5	-3.8	-2.7	-2.2	-0.4	0.9	0.5	-0.4	-0.2	-1.4	-4.6	-3.0
- - - - 2004~2009년 평균	-0.6	-0.2	1.6	2.8	2.7	4.2	3.2	0.9	2.0	0.0	-2.8	-0.7
—— 2009년	4.1	4.8	6.5	8.2	5.0	8.4	6.0	2.7	5.4	1.5	-2.5	-1.1
—●— 2010년	0.3	2.0	7.0	7.8	7.0							

주: 월별 진도비에서 매월 균등할 경우의 진도비를 차감한 수치임. upper and lower bound는 과거 6년간의 월별 진도비의 평균 및 표준편차 통계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연간목표 달성가능확률이 15% 및 30%에 불과하여 경계하여야 할 가상적인 진도비 수준을 표시한 것으로, 월별 진도비가 동 영역을 상회 또는 하회하면 연간목표를 초과 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표 1-Ⅰ-5〉 통합재정 추이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소계	경상수입	자본수입	소계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2004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	본예산	263,984	262,171	1,813	257,536	206,582	42,096	8,858	6,449	-24,765
	추경	253,911	251,822	2,088	275,898	211,488	45,011	19,398	-21,987	-51,044
	1월	23,367	23,314	52	31,908	22,721	5,958	3,228	-8,541	-9,457
	2월	35,563	35,271	291	55,202	41,270	9,465	4,466	-19,638	-21,190
	3월	68,582	68,156	427	81,007	62,363	13,832	4,812	-12,425	-21,940
	4월	96,967	96,284	682	107,021	83,069	18,156	5,797	-10,055	-21,209
	5월	108,420	107,161	1,259	128,690	99,470	21,303	7,917	-20,271	-33,436
	6월	133,237	131,538	1,700	161,193	123,570	28,048	9,575	-27,955	-42,659
	7월	159,728	157,923	1,805	177,385	136,729	30,647	10,008	-17,657	-34,544
	8월	175,113	173,233	1,880	191,454	149,225	32,114	10,114	-16,341	-35,304
	9월	196,185	194,135	2,050	221,876	174,632	36,273	10,971	-25,690	-47,906
	10월	217,503	215,352	2,151	234,112	184,569	37,765	11,778	-16,609	-40,544
	11월	235,887	233,549	2,338	245,971	193,911	39,655	12,406	-10,083	26,125
	12월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25,630
2010	본예산	262,263	258,714	3,548	264,278	212,396	45,933	5,948	-2,015	-30,100
	1월	25,002	24,946	56	22,694	18,952	2,452	1,290	2,308	466
	2월	39,849	39,651	199	49,312	38,478	8,063	2,771	-9,462	-12,470
	3월	77,599	77,258	340	84,619	68,298	13,728	2,593	-7,020	-19,513
	4월	109,371	108,211	1,160	108,643	87,453	17,387	3,803	728	-13,635
	5월	128,157	126,755	1,402	128,493	103,611	20,575	4,307	-337	-16,804
5월진도비		48.9%	49.0%	39.5%	48.6%	48.8%	44.8%	72.4%	-	-
(전년도)		(42.7%)	(44.8%)	(41.0%)	(43.9%)	(45.2%)	(37.3%)	(41.8%)	-	-
(5년 평균)		(44.9%)	(44.9%)	(45.9%)	(44.0%)	(45.2%)	(38.7%)	(38.8%)	-	-

□ **(국가채무 통계)** 2009년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GDP 대비 33.8%)으로 2008년말 대비 50.6조원(GDP 대비 3.7%p) 증가

○ 일반회계 적자보전(34.0조원), 외환시장 안정(10.9조원) 등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48.1조원) 및 지방채 발행 증가에 기인

– 지방정부 채무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 이후 확정 예정

○ 2009년 추경예산보다는 6.4조원(GDP 대비 1.8%p)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국고채권 발행 감소(2.0조원),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른 외평채 발행 축소(5.3조원) 등에 기인

〈표 1–Ⅰ–6〉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연말기준,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산	추경	결산	예산	중기 계획	중기 계획	중기 계획
국가채무 총계	309.0	366.0	359.6	407.2	446.7	474.7	493.4
(GDP 대비, %)	(30.1)	(35.6)	(33.8)	(36.1)	(37.6)	(37.2)	(35.9)
중앙정부	297.9	355.3	346.1	394.6	433.6	461.1	479.5
○ 국채	289.4	345.4	337.5	n.a.	425.5	453.5	472.5
– 국고채	239.3	282.9	280.9	n.a.	358.0	383.9	400.4
– 국민주택채권	44.9	48.9	48.3	n.a.	49.9	50.8	52.0
– 외국환평형채권	5.2	13.6	8.3	n.a.	17.6	18.8	20.1
○ 차입금	5.3	6.5	5.4	n.a.	4.2	3.7	3.2
○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4	3.2	n.a.	3.9	3.9	3.8
지방정부순채무	11.1	10.7	13.5	12.6	13.1	13.7	13.9

출처: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2010년 4월), 2010회계연도 예산, 2011~2013년은 국가채무관리계획(2009년 10월)

Ⅱ 이슈 및 분석

1. 일본재정의 재점검*

가. 검토 배경

□ 정부부채비율이 19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도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7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인구고령화 정도, 경제성장률, 고용률 및 실업률,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최근의 우리나라와 유사했던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이 이후 재정이 악화되었던 추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

〈표 1-Ⅱ-1〉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

	인구구조			경제				노동		
	인구 증가율	합계 출산율	노인인구 비중	1인당GDP	경제 성장률	투자율	노동 생산성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 자비중
일본 (85~89)	0.53%	1.73명	10.59%	13,810달러	4.34%	28.66%	3.68	66.96%	2.68%	17.16%
우리나라 (05~08)	0.31%	1.12명	9.29%	22,413달러	4.76%	29.16%	4.48	63.75%	3.53%	0.88%

	산업구조							대외거래	
	농림 어업	제조업 +에너지	건설업	서비스업 계	(도소매+음식 숙박+운수)	(금융 · 부동산)	(정부)	무역 비중	무역 수지
일본 (85~89)	2.99%	30.18%	7.93%	59.08%	19.24%	19.70%	20.14%	10.67%	668억달러
우리나라 (05~08)	3.36%	30.89%	9.10%	56.64%	16.99%	21.10%	18.55%	42.67%	208억달러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 특히 일본은 사회보장 확대,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지출이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는데, 1973년 공적 연금제도의 급부율 인상, 노인의료비 무상화 등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복지 원년'으로 불림

○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부비가 GDP 대비 5.7%(1970년) → 12.4%(1980년), 13.4%(1990년) → 20.5%(2000년)로 급증

○ 이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장기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세출증대 ·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최근까지도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Ⅱ-1] 일본의 사회보장 등 재정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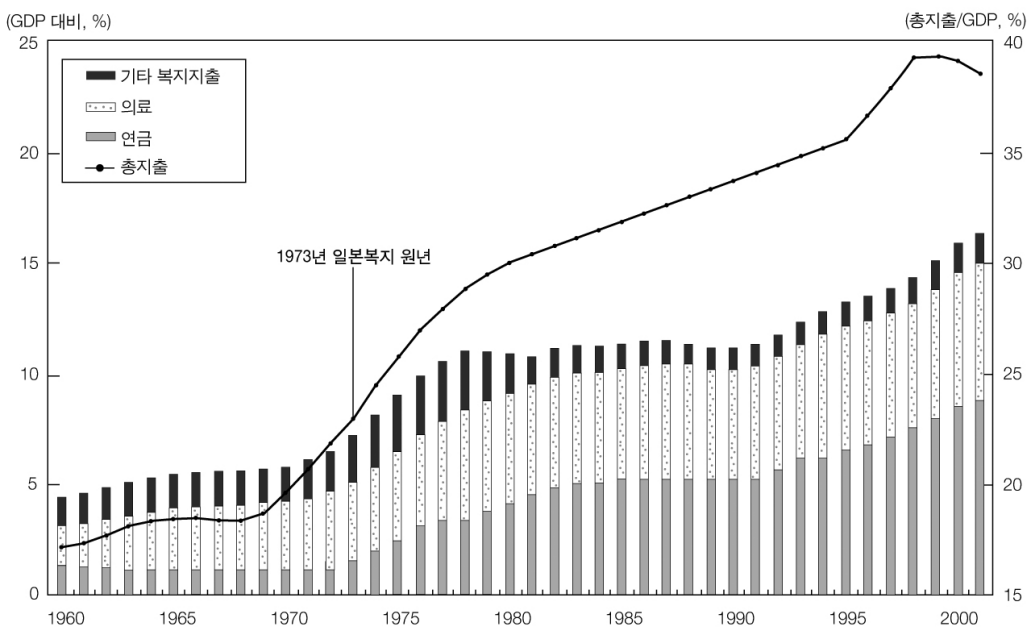

□ 1980년대 후반의 일본처럼 최근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복지제도가 도입 · 확충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

나. 일본의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

□ (경제상황) 잃어버린 10년 이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최근 다시 경기침체

○ 1985년 미국과의 Plaza 합의로 엔화를 평가절상시킨 이후 발생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버블이 1991년부터 꺼지면서 일본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됨

– 1980년대에는 평균성장률이 4.7%에 달하였으나, 1990년대의 10년간은 1.1%에 그침

○ 2000년대 들어 경기가 회복되어 성장률이 2%대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급락

[그림 1-Ⅱ-2] 일본의 자산가격 및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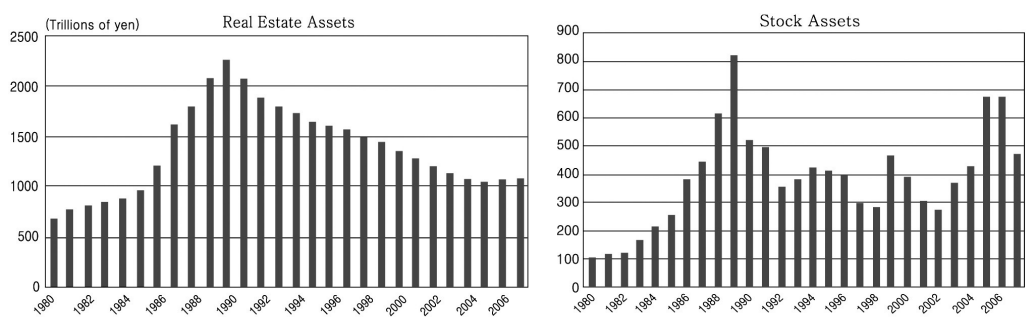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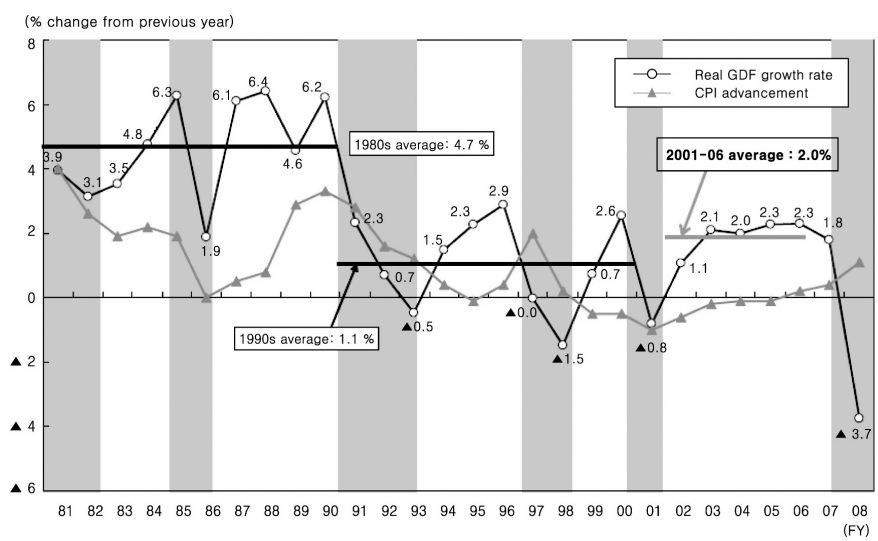

□ (정부정책) 그동안 일본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여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음

○ 정책금리를 0%까지 인하하는 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화폐유통속도의 급락으로 통화량이 급감

[그림 1-Ⅱ-3] 일본의 금리 및 통화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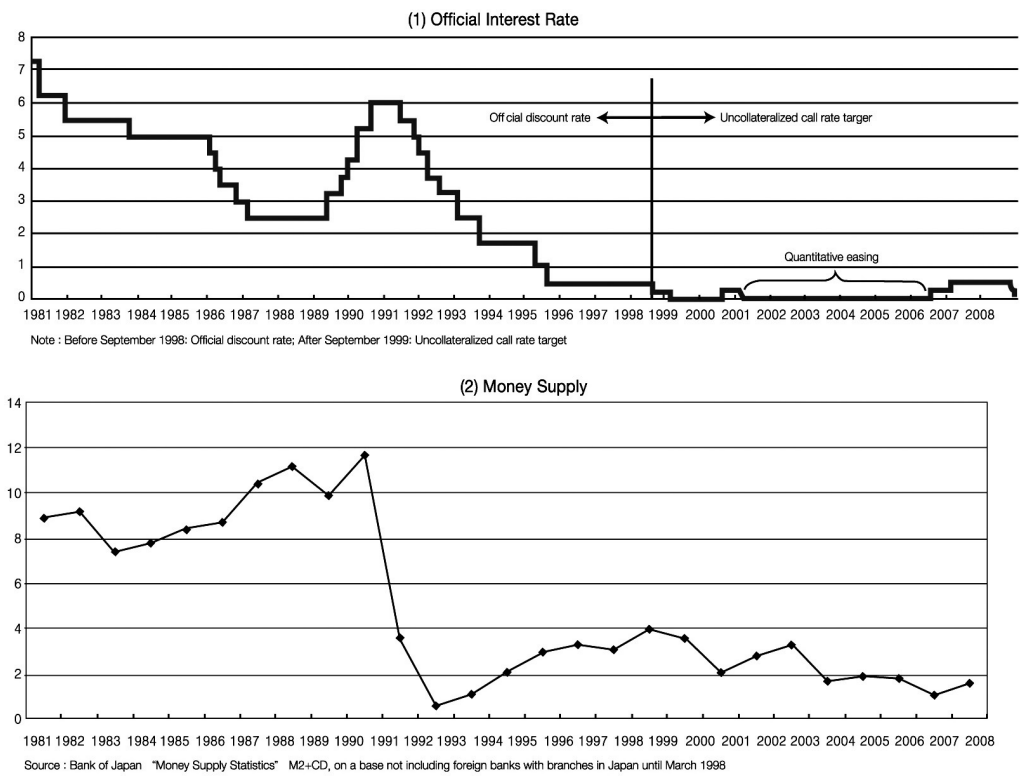

○ 특히 1992~2002년 기간 중에 13차례에 걸쳐 조세부담을 인하하고 공공투자를 포함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총 160조엔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실시

– 경기 대응 지출확대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사회자본정비와 공공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정지출 확대의 재원은 재정투융자재원으로 주로 각종 공적자금(우편예금, 연금, 보험금 등)으로 조달

[그림 1-Ⅱ-4] 일본의 경제대책 추이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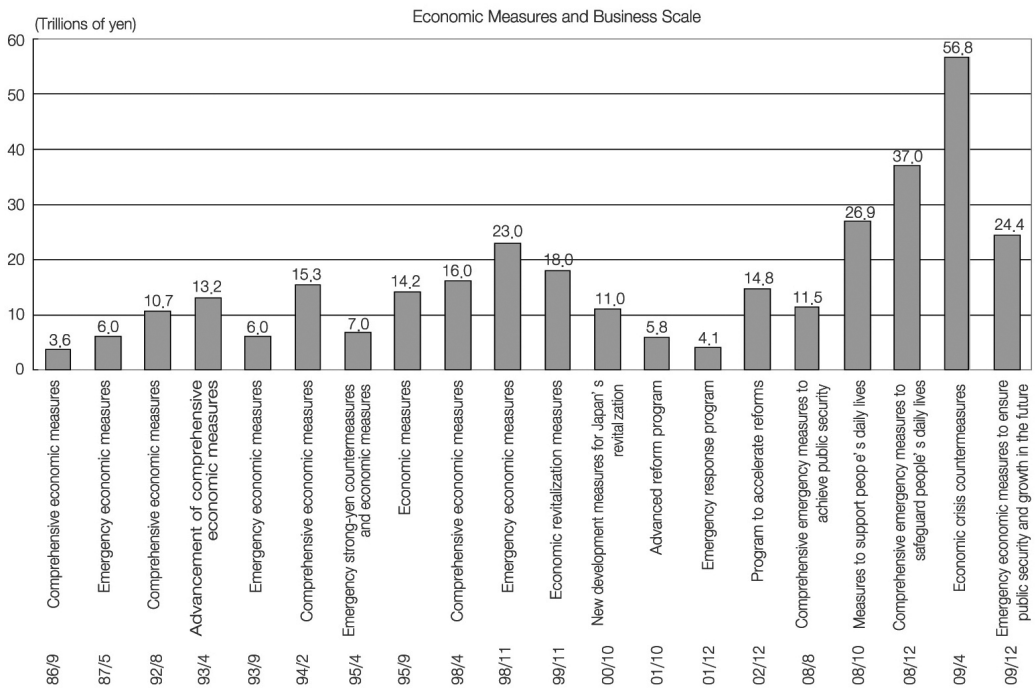

□ (낮은 정책효과) 이러한 경제정책의 효과가 매우 작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극히 낮았는데, 이는 은행과 건설업체의 부실을 충분히 청산하지 않은 채 적극적 경기대책을 추진한 결과

– 재정지출 정책의 절반 이상이 공공투자사업에 할당되어 불필요한 시설에 투자되는 결과 건설업자는 방대한 채무를 안고 있어 공공사업이 확대되어도 경기자극 효과가 낮았음. 투자이익은 원청업체 채무상환에 주로 이용되었고 하청업체의 사업성은 개선되지 않았음. 지가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난 은행 역시 대출 확대보다 유동성 개선에 치중

– 금융완화 정책의 낮은 효과성은 은행 유동성 개선을 위한 안전자산(국채) 선호현상에 기인. 은행은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민간대출보다 국채 매입에 이용

– 성과중심의 기업경영 추세도 민간소비의 회복을 더디게 한 요인. 불황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이익 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소비회복은 더디게 됨

-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적인 고령인구의 소비여력도 축소

○ 일본에서는 경기불황기에 경기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잠재성장능력만 훼손하고 재정투융자에 의한 막대한 부실채권만 양산한 결과를 초래

- 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재정투자가 경제성장률 변동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대책으로 공공투자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공공투자 규모의 조정, 사업의 효율화·투명화 추진, 도로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자원배분 왜곡 시정, 공공공사 비용의 감축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이에 따라 잃어버린 10년 동안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등 일본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낭비적인 SOC사업의 확대로 재정지출 승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조세승수보다도 작아졌다는 분석도 있음(Kuttner, Kenneth N. and Posen, Adam S., "Fiscal Policy Effectiveness in Japan," August 27, 2002,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No. 02-2)
- IMF(2003)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81~2000년중 재정지출에 대한 승수는 1961~1980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공공투자사업 및 높은 국가채무비율에 기인

□ (평가) 일본정부의 막대한 재정확대와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Powell; 2002)

○ 재정지출정책의 낮은 효과성은 비효율적인 지출 배분시스템에 기인

- 집권 자민당의 정치인이 재정지출을 배분하는 기관(Agencies)의 대부분을 운영함으로써 건설업 등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으로 재원을 배분
- 주요 정치기반인 지방 토건업자를 포함한 토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공공토목사업에의 자금투입 지속
- 그 결과 사회적 수요와 배치된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함

○ 통화완화 정책도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대출의 증가보다는 금융부문의 유동성

개선에 주로 이용

- 기존의 높은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실질적인 민간부문으로의 자금공급에는 한계

다. 일본의 재정문제

□ (재정악화) 일본의 재정악화는 1990년대에 급속히 진전되었는데, 비교적 재정상황이 건전하였던 1990년과 비교하여 2009년의 채무는 약 397조엔 증가하였음

○ 1995~2005년의 11년간 GDP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1980년대 중반 7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정부부채비율이 2009년에 무려 189%에 달하게 됨

- 이러한 정부부채 규모는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데,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벨기에의 1993년 141% 및 이탈리아의 1998년 13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
- 특히 금년에는 OECD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정부부채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를 초과할 전망

○ 1990년대에 채무가 증가한 요인은 버블경기 붕괴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투자 증대와 세수 감소

- 공공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2000년 이후에도 지출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음
- 세수의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감소와 더불어 1990년대에 행해진 감세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침

[그림 1-Ⅱ-5] 일본의 세입, 세출, 국채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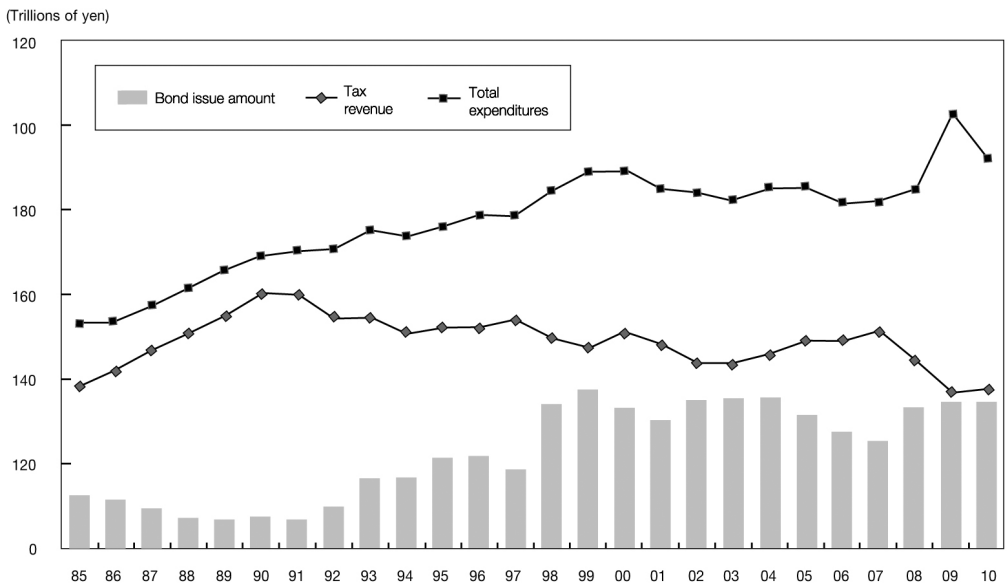

○ 이러한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인플레이션 등에 기인

- 재정적자 확대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지는데, 당시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상태로 이를 줄이려는 정책목표와 부합
- 199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 위험이 적었음
- 단기·장기 금리가 낮아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는 현상이 현저하지 않았음
- 또한 금리가 0%에 가까워 금융확장 정책의 여지가 거의 없어 재정정책에 의존

□ (재정상황의 심각성)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상의 재정상황은 세출의 높은 사회보장관계비, 국채비 및 지방교부세 비중, 세입부문에서 높은 공채의존도로 요약됨

○ 세출규모는 약 92조엔이지만, 이 가운데 사회보장관계비 27조엔, 국채비 21조엔, 지방교부세 17조엔으로 3개 항목이 전체 세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장경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중

반 이후는 세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수는 37조엔으로 총세출의 약 40%에 그치고 있으며, 공채의존도가 48%에 달함

○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3.6조엔(2010년)에 달하며, 이는 공채발행을 통해 보전할 예정

〈표 1-Ⅱ-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표

(단위: 억엔)

구분		2008	2009		2010
		결산	당초예산	제2차 추경	당초예산
세입	세수	442,673	461,030	368,610	373,960
	기타수입	117,729	91,510	122,422	106,002
	공채금	331,680	332,940	534,550	443,030
	합 계	892,082	885,480	1,025,582	922,992
세출	국채비	191,665	202,437	192,515	206,491
	지방교부세 등	156,792	165,733	165,733	174,777
	일반세출	498,517	517,310	288,069	534,542
	사회보장관계비	225,617	248,344	288,069	272,686
	합 계	846,974	885,480	1,025,582	922,992
공채의존도		39.2%	37.6%	52.1%	48.0%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 140,015	▲ 130,503	▲ 342,035	▲ 236,539

□ (국가채무) 일본의 중앙정부 국채잔고는 2010년도말 637조엔으로 약 17년분의 세수에 상당하는 금액

○ 중앙정부 공채잔고에 지방의 채무 등을 더한 중앙 · 지방의 장기 채무잔고는 2009년도 말에 862조엔 (GDP대비 18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본 재정법에 의하면 공채발행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75년 이후 경상적 경비 재원으로서 적자공채를 발행. 이는 재정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나 매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특례조치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적자공채를 특례공채라 칭함

[그림 1-Ⅱ-6] 일본 중앙정부의 공채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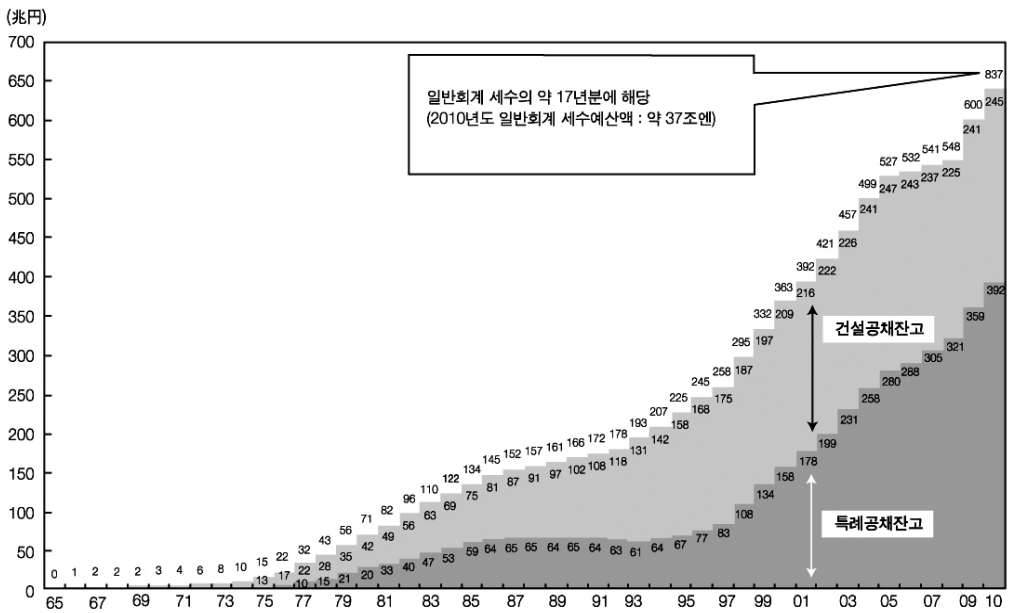

□ (재정위기의 미발현) GDP 대비 200%에 달하는 일본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낮은 금리로 인한 정부의 이자부담이 2.5% 내외로 아직은 낮은 수준

– 2009년말 국가채무비율 × 장기국채금리 = 국채이자 부담
189.3% 1.4% 2.6% 정도(실제부담은 2.5%)

○ 공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입이 증가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제되지 않음

– 일본국채의 외국인 소유비중은 7% 미만으로 독일(52.6%), 미국(50.3%), 영국(36.5%), 프랑스(33.8%)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

– 그러나 최근 외국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2003년 3.5% → 20083년 6.8%)

〈표 1-Ⅱ-3〉 일본국채의 소유분포

(Unit : trillion, %)

Holders	End of FY2003		End of FY2004		End of FY2005		End of FY2006		End of FY2007		December 2008 (Provisional)	
		Share		Share		Share		Share		Share		Share
General Government (ex Public Pension)	1.4	0.2%	2.0	0.3%	7.3	1.1%	3.5	0.5%	2.5	0.4%	3.0	0.4%
Public Pension	46.8	8.2%	57.6	9.0%	61.5	9.2%	68.2	10.2%	77.8	11.2%	82.2	11.7%
Fiscal Loan Fund	53.5	9.4%	48.8	7.6%	39.4	5.9%	23.9	3.6%	10.9	1.6%	6.8	1.0%
Postal Savings	87.6	15.4%	109.7	17.1%	126.2	18.9%	140.0	20.8%	-	-	-	-
Postal Life Insurance	50.1	8.8%	55.1	8.6%	57.0	8.6%	61.0	9.1%	-	-	-	-
Bank of Japan	83.9	14.7%	92.1	14.3%	86.7	13.0%	71.0	10.6%	63.7	9.2%	58.2	8.3%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204.9	36.0%	218.7	34.1%	218.1	32.7%	215.8	32.1%	437.9	63.2%	448.6	64.1%
Banks	111.2	19.5%	111.6	17.4%	114.2	17.1%	101.3	15.1%	245.3	35.4%	252.7	36.1%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mpanies	46.7	8.2%	54.8	8.5%	58.3	8.7%	61.8	9.2%	128.8	18.6%	133.8	19.1%
Pension Funds	19.9	3.5%	21.3	3.3%	24.0	3.6%	26.2	3.9%	26.7	3.9%	26.9	3.8%
Other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Note 1)	27.0	4.7%	31.0	4.8%	21.6	3.2%	26.5	3.9%	37.2	5.4%	35.3	5.0%
Overseas	19.6	3.5%	26.4	4.1%	30.2	4.5%	40.2	6.0%	47.3	6.8%	47.2	6.8%
Households	14.6	2.6%	21.8	3.4%	28.0	4.2%	33.4	5.0%	36.3	5.2%	36.7	5.2%
Others (Note2)	7.0	1.2%	9.6	1.5%	12.3	1.9%	15.0	2.2%	16.1	2.3%	17.0	2.4%
Total	569.5	100.0%	641.9	100.0%	666.7	100.0%	672.0	100.0%	692.4	100.0%	699.6	100.0%

Note 1 : 'Other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es 'Securities investment trusts' and 'Securities Companies'
2 : 'Others' = 'Nonfinancial corporations' + 'Private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3 : From preliminary figures of the end of FY2007, Banks, etc includes Japan Post Bank .Life and Nonlife Insurance includes Japan Post Insurance.
4 : JGBs in this list doesn' t include FBs .Refunding bonds include TBs
5 : The retroactive adjustment of Flow-of-Funds Statistics (BOJ) at Mar.23,2009 is reflected in figures till FY2007.
Source : Bank of Japan

〈표 1-Ⅱ-4〉 국채 소유분포의 국제비교

	Govement		Central bank		Financial institutions		Overseas		Households		Others		Total
		Share		Share		Share		Share		Share		Share	
Japan (as fo Dec. 2008) (¥ trillion)	92.0	13.1%	58.2	8.3%	448.6	64.1%	47.2	6.8%	36.7	5.2%	17.0	2.4%	699.6
US (as of Dec. 2008) ($ billion)	805.1	12.7%	475.9	7.5%	1,468.4	23.2%	3,187.4	50.3%	273.2	4.3%	127.6	2.0%	6,338.2
UK (as of Dec. 2008) (£ billion)	0.3	0.0%	28.8	4.4%	363.0	55.9%	237.3	36.5%	17.9	2.8%	2.5	0.4%	649.7
Germany (as of Sep. 2008) (€ billion)	0.5	0.0%	4.4	0.3%	432.1	27.9%	814.5	52.6%			296.0	19.1%	1,547.5
France (as of Dec. 2008) (€ billion)	61.5	3.1%	45.1	2.3%	1,162.1	58.1%	676.3	33.8%	38.0	1.9%	18.8	0.9%	2,001.9

Note 1 : The breakdown of govement securities in each countries is as follows.
Japan General bonds, FILP bonds. US: Treasury securities excluding those are held by govement agencies and trust funds.
UK: Gilts, Treasury bills. Germany: whole public debts including local govement bonds.
France: transferalble bonds and similar securities in euros.
2 : There ar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of holder categories amoung countries.
'Govement' in Japan includes Fiscal Loan Fund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es Postal Savings and Postal Life Insurance.
3 : US: nominal value, the others: market value.
4 : These are preliminary figures and not sum up to the total because of rounding.
Source : Japan : Japan' s Flow of Funds Accounts(Bank of Japan)
US: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oard)
UK: United Kingdom Economic Account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ermany: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Deutsche Bundesbank)
France : Annual Financial Accounts (Banque de France)

○ 막대한 규모의 가계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해외저축 규모로 국채발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은 저축과잉 상태이므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거시경제가 더욱 위축된다는 주장도 있음

[그림 1-Ⅱ-7] 일본의 경제부문별 자금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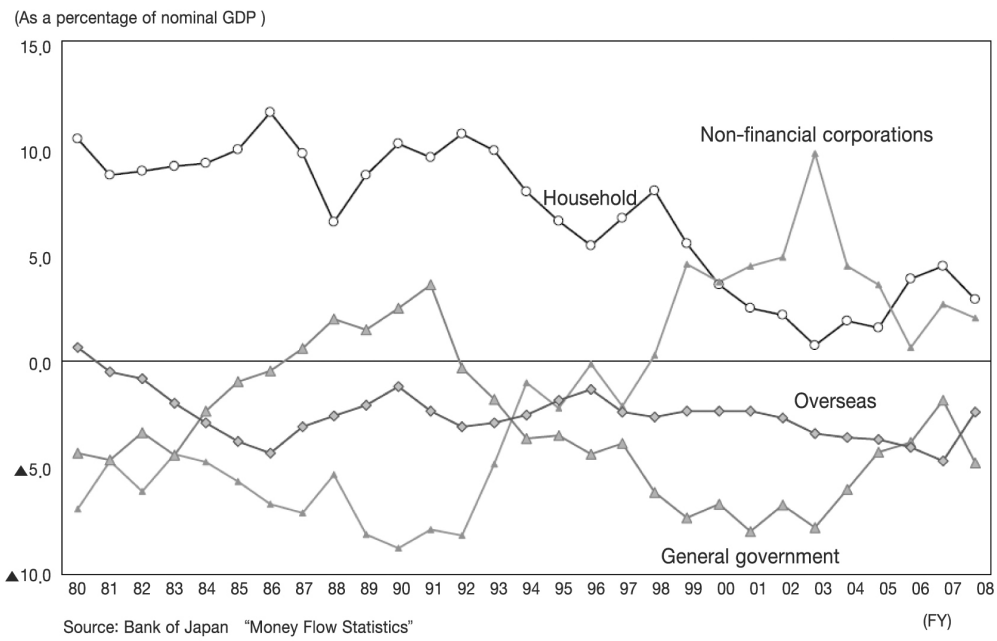

라. 향후 전망

□ (재정위기 압력) 조만간 일본경제가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의 낙관적인 상황이나 낙관적인 주장의 근거들이 흔들리고 있어 재정위기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

○ 우선 경기회복, 디플레이션에서의 탈피 및 국제금리의 상승 등의 환경변화는 낮은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낮은 상황을 지속되기 힘들게 하고 있음

– 지금도 일반회계의 23%에 달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데 향후 금리가 1%p 정도만 상승하더라도 정부의 이자부담이 GDP 대비 약 2%나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됨

– 2009년중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1.4%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들의 장기국채 금리는 2.3~11.9%(평균 4.8%)에 달함

○ 내국인의 공채 소유로 인한 안정성 확보는 점차 차입자의 국적보다는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불안

– 현재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내국인 보유가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음

–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은 약 1,500조엔, 가계부채는 약 400조엔 정도로 1,100조엔 정도의 잉여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산

○ 높은 저축률 수준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저축률 감소는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기인

[그림 1-Ⅱ-8] 일본의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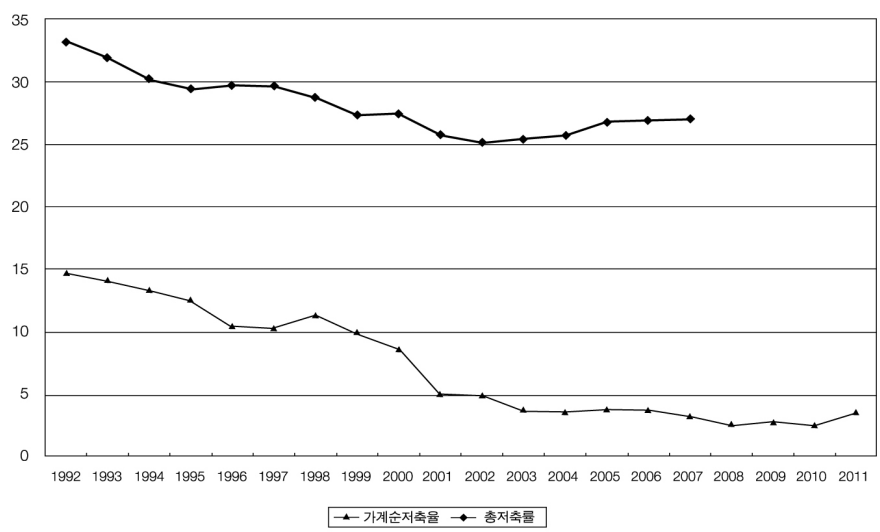

□ (복지재원 조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

○ 1973년 복지원년 이후 지속적인 복지지출 증가추세

○ G7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 고이즈미 총리 시절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지출소요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 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

〈 고이즈미 내각의 연금·사회보장제도 개혁 〉

- 연금급부금 삭감, 연금보험료 인상,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 인상, 연금지급 연령 조정,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등
- 介護 및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구

-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3년 이내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안심 강화와 양질의 복지를 동시에 제공
-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세입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채무비율 안정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함
- 내각부 산하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소비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표 1-Ⅱ-12〉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규모 시산 결과

			재정소요	소비세율 인상규모
2015년	사회보장기능 강화	조세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17조~34조엔	5~10%p
		사회보험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7.6조~8.3조엔	2.3~2.5%p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포함시	조세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6~11%p
		사회보험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3.3~3.5%p
2025년	사회보장기능 강화	조세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31조~48조엔	8~12%p
		사회보험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19조~20조엔	5%p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포함시	조세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9~13%p
		사회보험방식을 전제하는 경우		6%p

[그림 1-Ⅱ-9] 일본 복지지출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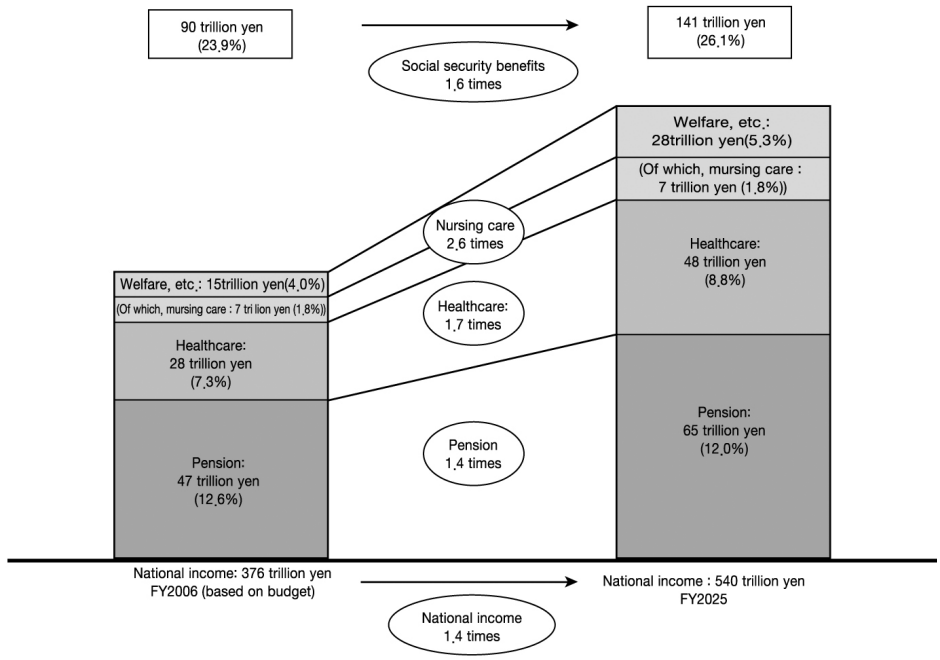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음

○ S&P는 금년 1월 25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 Stable에서 AA Negative로 하향조정한 바 있음

○ Moody's는 작년 5월 18일 Aaa에서 Aa2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낮춘 이후 Aa2 Stable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2월 25일 Aa2 Negative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

○ Fitch도 지난 4월 22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계획임을 시사

○ 한편, Economist誌는 지난 2월 11일자 분석기사에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한 국가를 순위별로 발표하였는데, 일본이 4위를 차지

- 1위 그리스, 2위 아일랜드, 3위 영국, 4위 일본, 5위 포르투갈, 6위 스페인

□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국가전략국, 행정쇄신회의 등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중장기적 재정구조 및 재정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

○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일체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추진방안이 신정권의 「재정운영전략」임

○ 재정 건전화 목표

- 수지(플로우) 목표 : 국가 ·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에 대해, 2015년도까지 GDP 대비 적자폭을 2010년(헤세이 22년) 수준으로 낮추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함. 2021년도 이후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
- 잔고(스톡) 목표 : 2021년 이후, 국가 · 지방의 GDP 대비 장기채무 수준을 현 181%에서 안정적으로 저하시킴
- 진척 상황의 공표 및 검증 : 현재 및 중장기 경제 ·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매년 예산 결정 후, 각종 최신 재정지표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진척 상황 등을 검증하여 공표. 국내외 경제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 또는 재정운영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의 달성 시기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재원확보 원칙(pay-as-you-go 원칙), 재정적자 감축 원칙,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세출 재검토의 원칙,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및 복지지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향후 경제안정화, 세입기반 확충, 지출효율화 등에 소홀할 경우 일본처럼 '저성장 ·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

○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 경제의 문제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 낮은 조세부담률 · 공공투자사업 등 지출효율성 저하로 인한 재정악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와 저성장

-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1950~1970년대의 독일 및 이탈리아, 1980~2010년대의 일본보다도 더 빠른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전망
-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10년 11.0%(통계청 11.0%)에서 2050년 34.2%(38.2%)로 3.1배(3.5배)가 될 전망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 2020년대 4.3% → 2020년대 2.8% → 2030년대 1.7% → 2040년대 1.2%
- 여성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부분적으로나마 상쇄시킬 수 있겠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저하될 위험도 높음

○ 인구고령화와 재정부담

- 우리나라의 경우 IMF의 2007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60년까지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 규모가 GDP의 약 11% 정도로 추정
- 한국조세연구원은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항목의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GDP의 13.9%(2004년 8.5% → 2050년 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출증가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함

○ 인구고령화와 세입전망

-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한 근로소득 하락이 금융소득 증가로 완전히 상쇄되지 않아 소득세 비중이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은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힘든 상황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낮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며, 조세 ·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세입증대 정책도 가능

○ SOC 등 경제분야 및 복지분야 지출효율화

- 우리나라의 SOC 투자 등 총투자(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지출 규모는 GDP 대비 4.9%로 OECD국가 평균의 약 1.7배에 달하고, 경제업무와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7.4%로 OECD국가 평균의 약 1.4배에 달해 동 분

야 재정지출 효율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GDP 대비 28.7%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평균(43.5%, 데이터 입수가 곤란한 호주, 멕시코,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24개국 기준)의 약 66% 수준이지만, 보건+복지(사회보호, 보건 분야) 이외 지출 규모는 GDP대비 21.5%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평균과 동일하여 이들 분야의 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신규 복지제도 도입, 최근 도입된 제도의 확대에 보다 신중하고 복지분야 내에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등을 통한 총량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 특히 IMF(2009.3)는 금번 경제위기 대응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현재가치가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현재가치의 1/20에 불과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폭증할 복지지출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할 것을 G20에 권고

2. 지방재정 위기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가. 지방재정 위기의 정확한 진단 필요

〈자치단체 재정압박 수위가 높아짐〉

□ 최근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지불유예, 서울시의 시금고 재정압박 사례 등으로 나타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차용금 지불유예 선언은 시 청사 건립을 위해 판교특별회계 재원을 차용한 것임

□ 성남시의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가 갖는 문제였다고 보여지나, 이로 인해서 나타난 지방재정 누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짐

○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회계간 전용은 각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된바, 법적 절차나 내용면에서도 부도나 파산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 그러나, 위의 두 사례는 첫째, 일반회계 재정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현행 거버넌스 구조상 시의회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면 법이 허용하는 회계간 전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통제할 수 있음[1)]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 가속〉

□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역시 시급한 사항임

○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이며, 지방정부의 off-budget 확대를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hyuna@kipf.re.kr)

1)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담고 있다.

○ 성남시 · 서울시의 재정압박과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는 결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일부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산관련 제도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관리제도 도입의 요구가 논의되고 있음[2)]

○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관련 제도보다는 재정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책임성 확보가 우선적인 조치라고 판단됨

□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방안」으로 보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 서울시의 부채감축안 발표자료에서는 긴축재정 및 불필요한 사업 자제를 골자로 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3)]

나. 지방재정 위기 내용

〈지방재정 현황〉

□ (정부간 재원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비중은 약 8:2이고 세출비중은 3.5 : 6.5에 해당함

○ 지방정부의 세입비중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나, 재정조정 이후의 지방정부 세출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2) 남황우,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조치」,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0년 7월호(통권31호)

3) 서울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2010년 8월 17일자 보도자료

〈표 1-Ⅱ-6〉 중앙과 지방간 조세수입 배분

(단위: 조원)

	2001	2005	2009
〈총조세수입〉	122.4	163.4	209.6
○ 국세(A)	95.8	127.4	164.5
○ 지방세(B)	26.7	36.0	45.1
〈조세수입 배분〉	122.4	163.4	209.6
○ 중앙정부(a)	49.8	67.9	73.6
○ 지방정부(b)	72.6	95.5	136.0
수입기준 비중(A:B, %)	78.2 : 21.8	78 : 22	78.5 : 21.5
지출기준 비중(a:b, %)	40.7 : 59.3	41.6 : 58.4	35.2 : 64.8

주: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을 합한 부분임
자료: 국세와 지방세(결산) 징수실적이며, 2009년 국세는 2010년 국세 세입실적 보도자료,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기준임

□ 지방재정 내 세입구성의 변화에서는 자체재원 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재정 전체 세입 중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거래세 위축이 주요 원인임

□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지방재정 내 세입구조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02년 이후 변화에서는 양여금 폐지 이후 지방교부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비중 감소,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증가 등의 영향은 2010년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함[4)]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p. 91

〈표 1-Ⅱ-7〉 지방재정 세입의 구성 변화

(단위: 조원)

분 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체재원	지방세	28.2 [31.0]	30.6 [31.4]	33.3 [33.7]	35.0 [32.7]	38.1 [33.0]	40.7 [31.8]	45.0 [31.2]	45.1 [28.8]
	세외수입	25.9 [28.4]	29.8 [30.5]	30.4 [30.7]	31.6 [29.6]	31.5 [27.3]	37.3 [29.2]	38.9 [27.0]	41.1 [26.3]
	합계	54.1 [59.4]	60.4 [61.9]	63.7 [64.4]	66.6 [62.3]	69.6 [60.3]	78.1 [61.0]	84.0 [58.2]	86.4 [55.1]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12.3 {37.2}	15.0 {43.6}	14.8 {45.3}	19.6 {53.4}	20.9 {49.8}	24.5 {52.8}	30.6 {54.2}	28.0 {46.4}
	보조금	16.2 {49.1}	14.2 {41.4}	13.7 {42.9}	17.2 {46.6}	21.1 {50.2}	21.9 {47.2}	25.9 {45.8}	32.4 {53.6}
	양여금	4.5	5.2	3.7	–	–	–	–	–
	합계	33.1 [36.4]	34.3 [35.2]	319.302 [32.3]	36.8 [34.4]	42.0 [36.4]	46.4 [36.3]	56.6 [39.2]	60.5 [38.6]
지방채		3.9	2.8	3.2	3.5	3.8	3.5	3.7	9.7
총규모		91.1	97.5	98.9	107.1	115.5	128.0	144.4	156.7

주: 1) 최종예산 순계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체 이전재원 대비 비중, [ ]안의 수치는 총재원 대비 비중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0

□ 또한, 2009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채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누적지방채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정부 지방채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국세 위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가 원인임

○ 2000년 이후 17조~18조원 대의 꾸준한 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던 누적 지방채무액은 2009년 25.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1-Ⅱ-8〉 연도별 지방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채	3.4	3.6	3.8	2.8	3.2	3.5	3.8	3.5	3.7	9.7
누적 지방채	18.7	17.7	17.0	16.5	16.9	17.4	17.4	18.2	19.0	25.5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예산개요』, 각 연도

□ 세출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 증가가 예상됨

○ 지방비 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 증가는 지방정부 행·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방세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여부와 지방채 규모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입여건은 불안정함

○ 또한,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따라 세출 역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아 당분간 지방재정 압박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표 1-Ⅱ-13〉 연도별 사회개발 부분 예산 현황(2008~2010)

(단위: 천억원, %)

	예산			비중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계	1,250	1,375	1,399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110	103	120	8.8	7.5	8.6
공공질서 및 안정	20	20	22	1.6	1.4	1.6
교육	70	79	81	5.6	5.7	5.8
문화 및 관광	60	71	78	4.8	5.2	5.6
환경보호	137	144	149	10.9	10.5	10.7
사회복지	217	241	265	17.3	17.6	19.0
보건	19	19	22	1.5	1.4	1.6
농림해양수산	81	93	97	6.4	6.7	7.0
산업중소기업	26	29	30	2.1	2.1	2.2
수송 및 교통	163	184	165	13.0	13.4	11.8
국토 및 지역개발	129	145	128	10.3	10.6	9.2
과학기술	7	7	4	0.6	0.5	0.3
예비비	22	24	22	1.8	1.7	1.6
기타	190	216	214	15.2	15.7	15.3

자료: 『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안전부

[그림 1-Ⅱ-10] 사회보장 복지예산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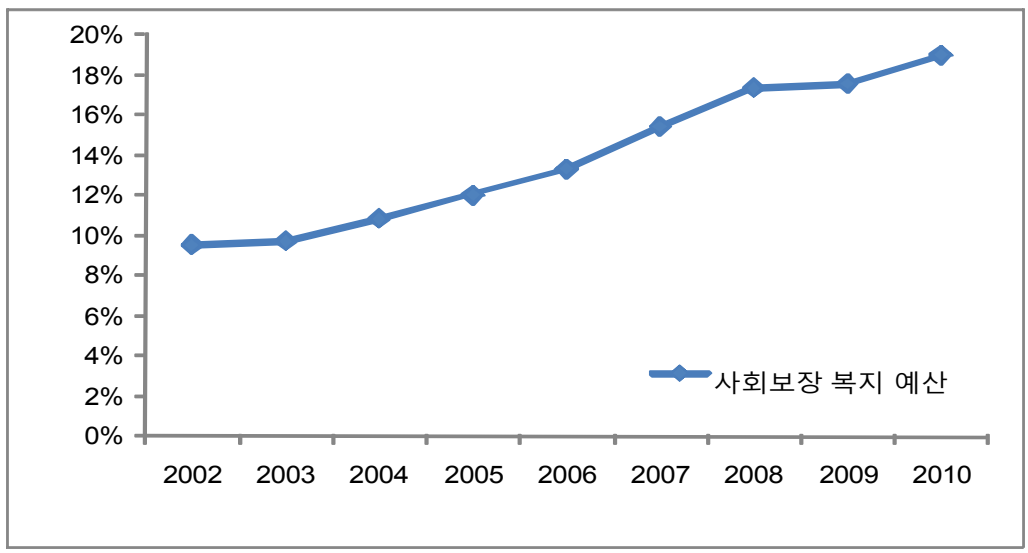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수준 급증의 문제는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로 보여짐

○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28.5조원으로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 중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말 SH공사 부채비율은 506%로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경기도시공사는 393%임[5)]

□ 지방공기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취지상 해당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 및 공단 설립은 현재 19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견제 시스템은 지방의회가 갖도록 되어 있음

○ 이상의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는 사실상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재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5)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부채 위험수위」, 2010.7.22. 매일경제

□ 공기업을 통한 예산외 지출활동 즉, off-budget의 지방재정규모 확장은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례임[6)]

□ 따라서 정치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 경제회복, 국내 경기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안정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지방공기업(개발공사 관련) 부채 회복의 관건으로 보여짐

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내용

〈지방채 규제 강화와 건전화 방안 마련〉

□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부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짐

○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의 경우 공공요율 인상 등 단기간의 운용개선이 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부채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부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중앙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행안부의 긴급점검을 통한 부채의 내용과 상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7월 20일과 22일, 26일, 27일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방안」과 「지방공기업 긴급점검」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7)]

6) 김현아 외,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 328~409

7)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2010.7.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긴급점검 실시」, 2010.7.2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T/F 구성 운영」, 2010년 7월 26일; 「행안부장관, 부실 지방공기업 직접 챙긴다」, 2010년 7월 27일

○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경우 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 · 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③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페널티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며, ④ 호화 과대청사 신축 등의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하고, ⑥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안임

○ 지방공기업 긴급 점검의 경우 지방공기업 현황 파악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선 16개 시도의 3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7월중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8월부터 시도 산하 30개 공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10월중 대상 공기업별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지방공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부채규모 감축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운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8)]

○ 서울시는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민선 5기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 엄격 제한, 대규모 사업 재원조달방안 의무화 투자심사 강화, 2010년 지방채 발행 축소 및 경기부양 지방채 1조 8,000억원 2014년까지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09년 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원 규모임

□ 이 외에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예산외 지출(off-budget) 활동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의 예산감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보도자료, 「서울시 부채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감축」, 2010년 8월 17일

라. 주요국의 대응방안 및 효과

〈주요국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효과〉

□ 지방정부 재정압박 사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 주정부 재정우려 논의 가속, 스페인, 그리스 등 지방정부의 재정신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9)]

□ (재정규율과 재정건전성) OECD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재정규율(fiscal rule)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채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10)]

○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재정규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적 재정적 환경에 따라 규제의 내용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정위기시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정부 정책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 첫째, 이전재원 규모 증가와

○ 둘째,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수행하며

○ 셋째, 정부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 요구되며

○ 넷째,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하여 중앙 · 지방간 통합적인 재정관리 강화 노력과, 구조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하고, 위기로 인한 정부간 균형(power balance)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9)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조세 · 재정 브리프, 2010.2.12

10) OECD, "Sub-central government and the Economic crisis," 2010

[그림 1-Ⅱ-11] 지방채 규제 강도와 부채수준 변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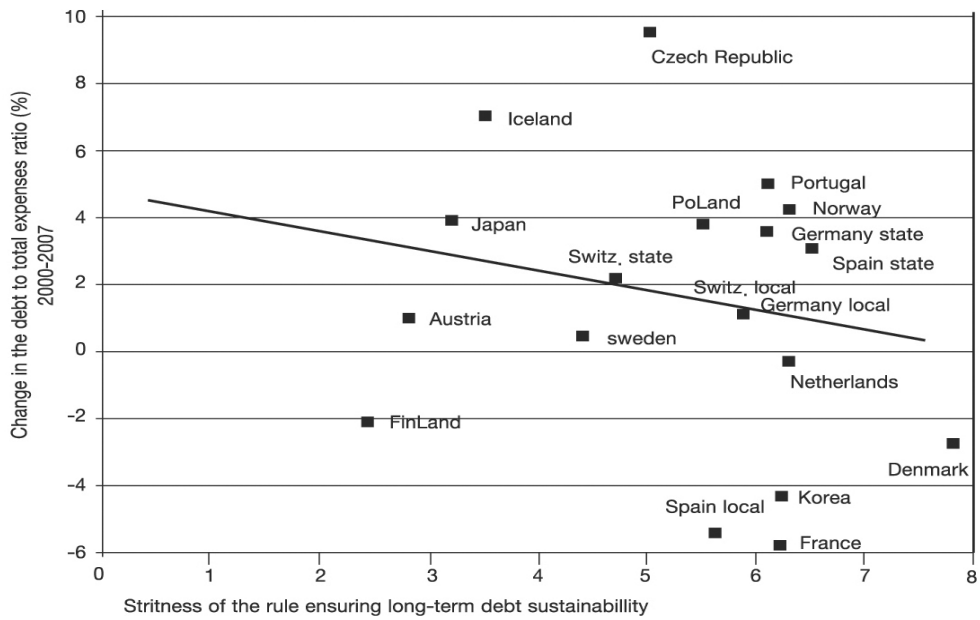

자료: Hansjorg Blochliger et. al, "Sub-central Governments and the Economic Crisi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52, OECD, Feb 18, 2010

□ (나라별 재정제도의 차이) 미국은 헌법에 의해 49개의 주들이 '균형예산(balanced budget)'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경제위기시 재정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정부 지출을 감소하고 세수를 증가시켜 적자폭을 감소시켰음

○ 반면,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 단계에서 Stimulus Package를 작동시켜 재정확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 단계의 자치권이 보장된 두 나라의 경우에도 재정제도에 따라 재정위기시 반대방향의 조치가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전재원 활용 증가)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이전재원 규모 증가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보다는 사업성과와 관리가 용이한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로 나타났음

○ 일본과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증가시켰고,

호주의 경우 Stimulus package 재정지원의 50% 이상, 스페인은 70% 이상이 국고보조금을 통한 자본지출(capital investment) 지원이었음

○ 특히, 스페인의 경우 80억유로 혹은 GDP의 0.7% 규모 달하는 'State fund for local governments'를 조성하여 2010년 1사분기에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배분한 바 있음

○ 단, 이들 이전재원에 있어서 조건부 지원 및 감독기능 강화가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매칭을 통한 재원누출 감시기능 강화폭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음

〈표 1-Ⅱ-10〉 중앙정부 재정지출 확대에서 지방정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 기준)

(단위: %)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		합계
		경상지출	자본지출	
호주	–	–	56	56
캐나다	–	6	78	84
프랑스	–	–	27	27
독일	–	–	29	29
일본	33	–	18	51
대한민국	–	–	28	28
노르웨이	7	2	30	39
포르투갈	–	–	22	22
스페인	–	1	72	73

자료: OECD, "Sub-central government and the economic crisis", 2010.

□ (재정조정 역할 증가) 호주 기초자치단체 연합은 연방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 프랑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채무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켰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음

□ (장기적인 중앙·지방간 재정조정 정책 구축)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통합재정시스템 마련이 꾸준히 주장되어 옴

○ 경제위기시 정책결정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몇몇 나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재정분권 정책이 지연되거나 당초 목적보다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음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

〈강력한 재정관리 및 규율제도의 문제점〉

□ Eichengreen and von Hagen(1996), Rodden(2002)은 지방정부의 세입비중과 세출비중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규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최종적인 재정책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자치권의 제한)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존재

○ 개념상 재정자치(fiscal autonomy)는 세율결정권, 감면결정권, 공동세 방안 등 제도적인 관점의 개념에 해당하며, OECD 분석(2005)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재정규율을 적용하는 것과 '지방자치' 개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Martinez et. al(2009), Worldbank 분석에서는 지방의 자치권 제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11)]

□ 지방정부는 자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예산외 부분의 공공부분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재정관리 및 규율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에는 적용 가능하나 법적으로 포괄하지 않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12)]

11) 재정규율의 강화에 따라 재정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별자치구(special district)를 만들거나, 공무원 임금수준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며, 세수입 외의 세외수입 증가, 기금 및 특별회계로의 전용이 나타나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각종 변칙들이 나타난 바 있음

12) World Bank(2002)

마. 결론

□ 경제위기와 주민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여건은 어려운 상황임

○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방세 둔화 현상이 지속되고,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지방교부세 여부와 지방채 규모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입여건은 불안정함

○ 또한,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따라 세출 역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아 당분간 지방재정 압박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의 내용면에서도 지방정부의 지방채 증가와 지방공기업 부채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지방채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내국세 위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한 것이며, 지방공기업 부채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개발공사 부분이 원인에 해당됨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각각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시 중앙정부(Ministry of Finance)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재정건전화 방안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은 이전재원 수단을 활용, 차입규제 완화, 정부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중재자 역할 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간 통합재정 강화 노력과 구조적인 재정분권 방안 제시, 위기로 인한 정부간 균형(power balance) 구조 재구축이 포함됨

○ 이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은 국가 전체 예산 관점에서 '정부간 재정건전화 방안'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예산외 지출(off-budget) 활동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의 예산감시 기능 강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인 조치로 요구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입비중과 세출비중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 자체세원 증가 마련 등 장기적인 재정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김현아 외,『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328~409

남황우,「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조치」,『지방재정과 지방세』, 2010년 7월호(통권31호)

삼성경제연구소,『지방재정 위기의 해법: 3調+2蓮』, SERI 경제포커스. 2010.7.20(제302호)

Eighengreen, Barry and Jurgen von Hagen, "Fiscal policy and Monetary Union: Federalism, Fiscal Restrictions, and the No-Bailout Rule.," In Horst Siebert(ed.), Monetary Policy in an Integrated World Economy, Tubingen: JCB Mohr, 1996

Douglas Sutherland, Robert Price and Isabelle Jourmad, "Fiscal rules for sub-central governments: Design and impact," OECD, 2005

Martinez, Jorge, Paul Smoke and Francois Vaillancourt, "The impact of the 2008-2009 global economic slowdown on local governments," October 2009

Thierry Paulais, "Local governments and the financial crisis: An analysis," Cities Alliances, December 2009

OECD, "Sub-central governments and the economic crisis: Impact and polic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752, Feb 2010

World Bank, *Government at Risk*, Brixi and Schick(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

가. 연구 목적과 배경

□ 2008년 9월 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동시에 경험중이며, 이러한 재정악화는 재정부문의 세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지출삭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재정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과거에는 일률적인 예산삭감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일률적인 예산삭감 방식은 부작용을 수반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가능하다면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OECD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축소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검토중임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2000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일부 부처 대상 시행, 20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시행, 2006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시행, 2009년 성과보고서 제출 등으로 재정성과관리체계가 수립되고 운영되어 왔음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하여 일정 부분 세출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사업담당자들이 사업추진 방식에 성과관리요소를 도입하는 문화적인 변화도 있었음

○ 동시에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하부 구조의 개선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고위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한계를

*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npark@kipf.re.kr)

보이고 있음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최근 국제적 동향의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인데,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두 국가의 최근 변화를 점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오바마 행정부하에서는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수행했던 사후적인 성과관리보다는 선별적인 접근법으로 사업운영과정의 상시관리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준비중임

○ 캐나다는 2006년부터 그동안 약화되었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나. 미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 부시 행정부하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강하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의회와 합의로 제정된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에 의거한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운영중이었으나, 부시 행정부하에서 성과정보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개혁 시도

○ 부시 행정부하에서 미국 예산당국(OMB: Office of Management & Budget)은 새로운 평가방식인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를 도입하였음

- 재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고자 시도
- 5년을 주기로 약 1/5의 예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하여 예산편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에 활용

- PART의 운영 결과는 미국 예산당국에서는 활용되었지만, 예산확정의 최종 단계인 의회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한 견제와 입법부가 궁극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

○ PART 운영 결과가 입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서, 부시 행정부의 말기에는 PART를 통한 예산편성에의 반영보다는 사업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함

- 2007년 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에서 PIO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OMB에서는 이들을 통하여 재정사업의 개선 관련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였음
- 부시 행정부의 5대 대통령 경영혁신과제 중 하나인 "예산과 성과의 연계(Budget & Performance Integration)"를 2007년부터는 "성과개선과제(Performance Improvement Initiative)"로 바꿈으로서, 정책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더불어 부시행정부에서는 PART 평가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음
  - expectmore.gov에 접근성을 높여 공개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예산과 성과의 연계보다는 재정사업의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부시 행정부하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0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

- 본 고의 내용은 미국 OMB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OMB 내부 안에 근거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 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서의 새로운 제도 추진 필요
  - PART는 불행하게도 부시 행정부의 수단으로 정치적인 낙인이 붙여짐으로 인

해 민주당 정부에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컸음

- 부시 행정부의 경험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사후적인 성과정보에 근거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OMB 내부의 반성이 있었음
  - 부시 행정부하에서는 성과정보의 공급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였으며, 성과정보의 수요 창출에는 실패하였다는 내부의 반성이 있었음

○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① 포괄적인 접근법에서 선별적인 접근법으로의 전환과 ② 사후적인 성과정보 생산에서 주요 성과목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성과관리총괄담당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을 백악관 내에 임명하여 정부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하나로 성과관리총괄담당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을 백악관 내에 임명하는 것을 내세웠음
- 각 부처에 3~8개 정도의 중요하게 추진할 성과목표(HPPGs: 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s)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0년도에 1차 제출이 완료된 상태임
-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각 부처가 제출한 중점성과목표(HPPGs)에 대한 성과계획을 제출받고, 분기별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회의를 성과관리총괄담당관의 주재하에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중점성과목표(HPP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성과대시보드(Performance Dashboard)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임

○ 오바마 행정부의 현재 내부 계획은, 부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과관리제도와 예산관리국(OMB)에서 직접 개입하는 성과관리제도의 두 가지 과정으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 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에 의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각 부처가 작성하여 부처 자체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시보드(Performance Dashboard)를 만들어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예산관리국(OMB)이 직접 개입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되는데, 한 가지는 각 부처의 HPPGs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부처에 공통적인 요소로서 부처 경영에 관한 목표를 관리하는 것임

○ 미국의 예산관리국(OMB)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중점성과목표(HPPGs)에 대한 성과대시보드(performance dashboard)를 개발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임

- 매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각 부처에서 자체 점검회의를 하고, 예산관리국(OMB)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과목표를 성과관리총괄담당관 주재 분기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사 결정
- 의사결정 결과로, 실행계획의 변경, 인사 조치, 대통령 직권명령, 예산변경에 대한 권고, 입법안 도출, 심층평가 수행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성과관리총괄담당관 주재 분기 회의는 성과관리총괄담당관(CPO) 및 각 부처의 차관(deputy secretary)으로 구성

○ 각 부처에 공통적인 경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영대시보드(Management Dashboard)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활용할 계획임

- 경영대시보드에는 각 경영분야별로 중요한 관리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력할 계획이며, 분야는 조달, 투명성, 인사관리, 경영 효율성, 감사원(GAO)에서 지정한 고위험사업(High Risk Program)으로 나누어짐
- 현재 미국의 각 부처에는 성과관리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정보화담당관(Chief Information Officer), 재무담당관(Chief Finance Officer), 인사담당관(Chief Human Capital Officer)이 각 경영분야별로 책임 담당
- 경영대시보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통상적인 경영관련 문제는 각 부처의 경영분야별 담당관 연석회의(Council Reviews)에서 다루고, 만약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관리국(OMB)에서 해당 쟁점을 성과관리총괄담당관(CPO) 주재 분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다. 캐나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된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2006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지출 삭감과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는 1990년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재정삭감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위기극복 과정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력 축소와 정부의 평가 및 성과관리 분야을 축소하였음

- 1995년 정부지출 전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정부지출 대폭 감소
- 그 이후 성공적인 재정적자의 대폭 축소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재정흑자가 계속됨에 따라, 예산사업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음
- 내각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의 도입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약화되었음

○ 최근 정부 예산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스캔들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와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6년부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졌음

- Federal Accountability Act 2006의 제정을 통해 모든 이전재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의무화됨
- 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를 각 정부 조직마다 수립하여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다시 확보
- 정부 전체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 정부 내의 평가기능 및 역량 재강화
-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를 통하여 각 정부 조직의 경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 캐나다의 재정성과관리 강화의 출발점은 2007년 6월에 승인된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EMS) Renewal임

○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Renewal은 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MRRS) Policy로도 불리며, 각 정부 조직이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공통적인 표준화된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임

- 위계질서가 있는 성과목표관리체계(일종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를 개발하여 모든 정부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도
- 내부 의사결정과 외부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구조를 설정
- 예산 투입과 사업의 성과정보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도
- 기존 예산사업을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에 근거하여 기존 조직 구조도 개편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음

○ MRRS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할 상위의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가 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략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포함
- 각 부처는 Program Activity Architecture(PAA)를 개발해야 하는데, PAA는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 ⇨ 프로그램(Program Activities) ⇨ 하부 활동(Sub-Activities) ⇨ 하부의 하부 활동(Sub-Sub Activities)으로 위계구조를 가짐
  - 의회에 보고되는 정보는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수준의 정보임
-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프로그램명, 기대 효과, 성과지표, 예산액 및 실제 지출액, 결과 달성 목표치 및 실제 달성치, 사업운영 조직 및 책임성 확보 관련 정보

□ 캐나다에서는 재정성과관리의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사업평가 역량 강화 및 평가 기준의 개발이 이루어졌음

○ 캐나다에서는 사업평가가 지난 35년 이상 존재하여 왔으며, 1977년 처음으로 사업평가를 도입한 선도적인 국가임

○ 그러나 1990년 후반부터 각 부처의 평가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축소로 인해 평가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는 사업부처에서 보통 수행되며 사업부처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평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매년 200~250개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며, 포괄범위로 보면 전 정부 재정사업의 10~15% 정도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며, 평가는 대부분 각 부처의 내부 평가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수행됨
-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평가는 대부분 사업운영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재원배분에 활용되는 경우는 점차 증가되는 추세임
- 사업평가 결과는 대부분 부처의 웹사이트에 공개됨
- 평가 결과는 재무위원회 (TBS: Treasury Board Secretary)에 제출되고, 예산편성과 전략적 리뷰(Strategic Reviews)에 활용됨

○ 캐나다에서 사업평가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의식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

- 사업평가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와 사업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음
- 국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인식됨
- 사업갱신과 재무위원회(TBS)에 의한 전략적 리뷰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로서, 증거에 근거한 지출관리(evidence-based expenditure management)를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됨
- 현재 캐나다에서는 정부예산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은 사업평가를 실시할 것이 재무위원회의 규정으로 요구되고 있음
- Federal Accountability Act는 모든 이전재원에 대해 각 부처가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재무위원회는 평가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쟁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의 적정성(relevance)
  -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가?

•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 연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가?

– 사업의 성과(Performance)
•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부처에서 수행되는 사업평가와 별도로 재무위원회(TBS)에서 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Strategic Reviews)를 수행하고 있음

○ 연방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모든 예산사업을 4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행

– 평가는 각 부처의 점검팀과 재무위원회의 고위 담당자도 참여하여 이루어짐

○ 각 부처의 성과목표체계(PAA)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성과가 미약한 5%의 재정사업을 선별하여 다른 재정사업의 예산으로 전환

– 계획 대비 실제 성과, 계획 대비 실제 지출, 사업 자체의 적절성, 사업의 중복성, 사업 수단의 적절성, 투자 대비 효과, 사업 운영과정의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

– 효과도 낮고 정책적 우선순위도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권고액, 예산삭감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대처 방안, 예산삭감 추진 전략 등을 제시

○ 전략적 리뷰의 운영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봄에 시작해서 각 부처는 2개월 이내에 예산당국에 1차 보고서 제출

– 재무위원회는 부처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부처의 리뷰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서면 의견서 제출

– 부처와 재무위원회가 합의한 리뷰 보고서에는 각 부처 장관이 서명하고, 재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위원장인 Cabinet Committee on Priorities and Planning에 제출

– 매년 겨울 예산편성 과정에 상기 권고사항을 반영

○ 전략적 리뷰의 운영 결과

– 3회의 리뷰를 수행
• 2007년, 2008년, 2009년 수행

- 2007년에는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직접사업 총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4 billion에 대한 리뷰 수행
- 2008년에는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직접사업 총예산의 27%에 해당하는 $25 billion에 대한 리뷰 수행

– 현재까지 56개의 공공기관이 리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배분된 예산의 크기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2010년 회계연도 예산: $349million
- 2010년- 2011년 회계연도 예산: $449million
- 2011년- 2012년 회계연도 예산: $586million

– 2008년에는 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한 평가에 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형태의 다부처가 참여하는 리뷰(functional horizontal reviews)를 확대할 예정임

□ 재정성과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시스템의 적절한 수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관리하는 경영책임성관리제도(MAF: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를 도입하여, 재정사업 자체의 성과관리뿐 아니라 조직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시스템의 수립과 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유인 제공

○ 재무위원회는 모든 부처의 경영과 관련된 19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리더십과 조직 문화
– 성과관리시스템 수립
– 경영시스템 수립
– 재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의 질
– 사업평가의 수준과 활용 정도
– 의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의 수준
– 조직변화 관리
– 위험요소 관리 등

○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표현됨

– 우수(Strong), 보통(Acceptable), 개선 여지 있음(Opportunity for improvement), 주

의 필요(Attention required)로 구분됨

○ MAF 평가 결과는 성과급에 반영

– 평균적으로 기본급이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15% 정도가 성과급으로 구성됨

– 평가 결과에 따라 상 · 중 · 하 수준의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

○ MAF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며, MAF를 통해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적절한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설정, 성과정보 개발, 사업평가 수행 등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라.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정치적 영향이 심한 환경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용이하지 않음

–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제도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정치적 아젠다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함

○ 입법부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중요

– 입법부가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으면, 행정부만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큼

– 특히 입법부는 결과 중심의 정보가 아니라 세부적인 예산내용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효과적임

–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사후적인 평가에만 치중될 경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각 부처의 고위 의사결정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적인 평가뿐 아니라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운영과정에 대한 성과

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설정하여,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내부적 의사결정과 외부적 의사결정을 의한 정보 구조를 일치화시키는 노력 필요

– 우리나라도 최근에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성과목표체계의 일치화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기존 조직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절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이상적인 접근법은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한 성과체계와 목표프로그램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임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는 생산되는 정보 수준이 중요하므로, 각 부처 자체의 평가 기능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임

– 부처 예산의 일정 부분과 인력을 평가 수행과 평가역량 강화 부문에 투입하여야 함

○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일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세출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

– 우리나라도 일정 비율을 정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입법부와 국민에게 정부의 전체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요약하여 보고하는 문건을 생산함으로써, 행정부 외부 고객과의 의사소통 원활화 시도는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판단됨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위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하부구조 개발과 성과정보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고위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담당 부서 실무자 수준에서의 관심에서 그치고 있음

– 제대로 된 하부구조 개발과 성과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고위 의사결정자의 개입이 필수적임

–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 경영과제(President Management Agenda), 오바마 행정부의 경영대시보드(Management Dashboard), 그리고 캐나다의 경영책임성관리제도(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는 고위 의사결정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영과제를 가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고, 고위 의사결정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됨

4.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가. 검토 배경

□ Economist紙는 지난 2월 11일자 "Not so risk-free, Which countries have the biggest problem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debt sustainability)을 비교한 바 있음

○ Economist紙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교대상 23개 OECD국가 중에서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국가채무 건전성이 열악한 반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From shakiest to safest
Countries ranked* by sustainability of debt position

	% of GDP, 2010, forecast			
	Primary budget balance, cyclically adjusted+	Net debt+	GDP growth less cost of finance ‡, %	Sovereign debt, years to maturity§
Greece	-4.6	94.6	-3.2	7.7
Ireland	-7.0	38.0	-5.1	6.8
Britain	-6.7	59.0	-1.5	13.7
Japan	-5.9	104.6	0.1	5.4
Portugal	-2.7	62.6	-2.3	6.5
Spain	-4.3	41.6	-3.0	6.7
France	-3.8	60.7	-0.7	6.9
United States	-7.0	65.2	1.4	4.8
Poland	-5.3	32.4	-0.7	5.2
Italy	2.2	100.8	-1.0	7.2
Hungary	4.2	62.1	-3.5	3.3
Belgium	1.3	85.4	-0.6	5.6
Netherlands	-1.4	36.5	-0.6	5.4
Austria	-0.9	42.9	-0.6	7.0
Germany	-1.2	54.7	-0.5	5.8
Czech Republic	-1.9	5.3	0.0	6.4
Norway	-7.8	-143.6	2.4	4.9
Canada	-2.7	32.6	2.0	5.2
Denmark	-1.4	1.6	0.1	7.9
Australia	-0.7	-1.3	0.2	5.0
Switzerland	0.4	11.0	0.5	6.7
FinLand	-0.9	-46.4	0.9	4.3
Sweden	-0.3	-13.1	1.5	6.4

*Based on the sum of the countries' rank for the first three debt measures
+General government #Forecast average nominal GDP growth for 2010-11 less latest yield on government bonds of average maturity §weighted average

Sources: Bloomberg: EIU;OECD; *The Economist*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hspark@kipf.re.kr)

□ 그런데 동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나라를 비교대상에 포함시키고 보다 공식적이고 최신 데이터를 사용한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이 필요

○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국가에서 누락되었음

○ 일부 지표의 경우 측정이 다소 자의적임

○ 몇 가지 지표의 순위를 단순합산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

나. 종합순위에 의한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

□ Economist紙는 국가간 국가채무 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 3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부여한 후 지표별 순위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산출

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udget balance, GDP 대비 비율로 측정) : 국가채무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 및 기 보유한 금융자산 및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재정수지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될수록 국가채무 건전성도 악화됨

② 순채무(net debt, GDP 대비 비율로 측정) : 총채무(gross debt)에서 정부보유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채무 규모

– 순채무가 클수록 국가채무 건전성이 악화됨

③ 성장률 - 금리 격차(GDP growth less cost of finance, 단위는 %) :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수준을 차감하여 측정

– 경제성장률이 국채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지 않는 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여 국가채무 건전성이 악화됨

○ 이 외에 Economist紙는 최종순위 산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국채 평균만기(sovereign debt, years to maturity)도 국가채무 건전성 관련 지표로 제시하였는데, 국채의 평균만기가 짧을수록 借換에 따른 리스크가 커짐

□ 국가채무 건전성 관련 지표들의 측정

○ 본 연구에서는 Economist紙의 23개 비교대상 국가에 우리나라, 아이슬랜드, 룩셈부

르크, 뉴질랜드, 슬로박 등 5개 국가를 추가하여 멕시코 및 터키를 제외한 28개 OECD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지표 측정에 대한 자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OECD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만 활용함

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 Economist紙는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2009년 11월)의 Annex Table 30. General government underlying primary balances에 수록된 2010년 전망치를 활용하였으나, 그리스의 경우에는 -2.3%를 -4.6%로 수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2010년 6월)의 Annex Table 30. General government underlying primary balances에 수록된 최신 2010년 전망치로 업데이트
- 다만, 우리나라와 슬로박 두 국가의 경우에는 OECD에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경기적 요인과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키지 않은 재정수지 자체를 사용.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가 실제 재정수지에 비해 1.1~9.0% 정도 개선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자체를 사용하더라도 국가간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에서 유리해지지는 않음

② 순채무 비율

- Economist紙는 OECD Economic Outlook 86 database(2009년 11월)의 Annex Table 33. General government net financial liabilities에 수록된 2010년 전망치를 활용하였으며, 그리스의 경우에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와는 달리 동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2010년 6월)의 Annex Table 33. General government net financial liabilities에 수록된 최신 2010년 전망치로 업데이트

③ 성장률 - 금리 격차

- Economist紙는 Bloomberg, EIU, OECD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2010년 및 2011년 평균)에서 가장 최신의 국채 평균만기에 적용되는 국채금리를 차감하여 계산
- 본 연구에서는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2010년 6월)의 Annex Table

2. Nominal GDP 및 Annex Table 35. Long-term interest rates에 각각 수록된 경상성장률 전망치(2010년 및 2011년 평균)에서 장기국채금리 전망치(2010년 및 2011년 평균)를 차감하여 계산

④ 국채 평균만기

- Economist紙는 Bloomberg, EIU, OECD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중평균치를 계산
- 본 연구에서는 「OECD Central Government Debt : Statistical Yearbook 1999-2008」(2009년 발간)에 수록된 Total debt의 Average term to maturity(2007년 기준)를 활용

□ 국가채무 건전성 관련 지표별 국가순위 및 종합순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건전성은 28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 우리나라의 2010년 재정수지(전망)는 GDP 대비 1.0% 흑자로 28개 OECD국가 중에서 5번째로 양호

- 이러한 결과는 다른 OECD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수지 기준이며,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상의 통합재정수지는 0.2%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2.7% 적자임
- 한편, 경기적 요인과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통합재정수지를 추정해 보면 약 0.7% 적자인데, 동 수치를 적용하면 5위에서 9위로 순위가 다소 하락

○ 순채무 비율 : 우리나라의 2010년 순채무 비율은 -29.7%, 즉 GDP 대비 29.7%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어 28개 OECD국가 중에서 4번째로 양호

○ 성장률-금리 격차 : 우리나라의 2010년 및 2011년 평균 성장률-금리 격차도 1.7%로 28개 OECD국가 중에서 3번째로 양호

○ 이들 3개 지표별 국가순위를 합산하여 산출한 최종순위는 1위

- 그러나 종합순위 산출에서는 제외된 2007년 국채 평균만기는 우리나라가 4.2년에 불과하여 28개 OECD국가 중에서 25번째를 차지
- 국채 평균만기를 포함시켜 재산출한 우리나라의 최종순위는 6위

〈표 1-Ⅱ-11〉 지표별 국가순위 및 종합순위 산출결과

국가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		순위		순채무 비율(%)		순위		성장률-금리 격차 (%)		순위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한국	n.a.	1.0	n.a.	5	n.a.	-29.7	n.a.	4	n.a.	1.7	n.a.	3
스웨덴	-0.3	1.7	5	4	-13.1	-19.6	3	5	1.5	1.2	3	5
핀란드	-0.9	-0.4	7	8	-46.4	-57.0	2	2	0.9	0.2	5	8
호주	-0.7	-1.8	6	13	-1.3	0.2	4	7	0.2	1.5	7	4
스위스	-7.8	-4.0	23	21	-143.6	-153.4	1	1	2.4	1.8	1	2
룩셈부르크	n.a.	-2.2	n.a.	15	n.a.	-40.5	n.a.	3	n.a.	0.4	n.a.	7
캐나다	-2.7	-1.4	13	12	32.6	30.3	9	13	2.0	2.0	2	1
노르웨이	0.4	0.3	4	7	11.0	6.2	7	10	0.5	-0.3	6	10
덴마크	-1.4	-0.5	10	9	1.6	0.5	5	8	0.1	-0.6	8	14
뉴질랜드	n.a.	-3.1	n.a.	19	n.a.	-3.3	n.a.	6	n.a.	-0.4	n.a.	12
폴란드	-5.3	-4.8	18	23	32.4	27.9	8	12	-0.7	1.0	15	6
체코	-1.9	-3.0	12	18	5.3	4.8	6	9	0.0	-0.6	10	15
아이슬랜드	n.a.	-2.6	n.a.	16	n.a.	45.0	n.a.	18	n.a.	0.1	n.a.	9
오스트리아	-0.9	-1.1	7	10	42.9	40.9	13	16	-0.6	-1.0	12	18
벨기에	1.3	1.9	3	2	85.4	83.3	20	25	-0.6	-0.9	12	17
헝가리	4.2	2.1	1	1	62.1	60.1	17	22	-3.5	-2.7	22	24
슬로박	n.a.	-6.4	n.a.	27	n.a.	18.4	n.a.	11	n.a.	-0.3	n.a.	11
네덜란드	-1.4	-2.0	10	14	36.5	34.4	10	14	-0.6	-1.4	12	22
독일	-1.2	-1.2	9	11	54.7	52.7	14	19	-0.5	-1.4	11	21
이탈리아	2.2	1.8	2	3	100.8	104.1	22	27	-1.0	-2.3	17	23
그리스	-4.6	1.0	17	6	94.6	97.8	21	26	-3.2	-9.6	21	28
프랑스	-3.8	-3.2	15	20	60.7	57.2	16	21	-0.7	-1.3	15	20
아일랜드	-7.0	-4.7	21	22	38.0	39.9	11	15	-5.1	-5.3	23	27
일본	-2.7	-2.8	13	17	62.6	64.3	18	23	-2.3	-3.1	19	25
영국	-6.7	-5.7	20	26	59.0	53.5	15	20	-1.5	-1.0	18	19
미국	-7.0	-7.1	21	28	65.2	66.6	19	24	1.4	-0.5	4	13
포르투갈	-5.9	-5.0	19	24	104.6	114.9	23	28	0.1	-0.6	8	16
스페인	-4.3	-5.2	16	25	41.6	44.3	12	17	-3.0	-3.9	20	26

국가	3개 항목 순위합계		최종순위		국채 평균만기(년)		순위		4개 항목 순위합계		순위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Econo-mist	조세연
한국	n.a.	12	n.a.	1	n.a.	4.2	n.a.	25	n.a.	37	n.a.	6
스웨덴	11	14	1	2	6.4	4.7	11	22	22	36	1	5
핀란드	14	18	2	3	4.3	3.8	22	27	36	45	4	7
호주	17	24	3	4	5.0	9.1	19	2	36	26	4	1
스위스	25	24	7	4	4.9	4.0	20	26	45	50	9	10
룩셈부르크	n.a.	25	n.a.	6	n.a.	8.6	n.a.	4	n.a.	29	n.a.	2
캐나다	24	26	6	7	5.2	7.0	17	8	41	34	8	4
노르웨이	17	27	3	8	6.7	7.1	8	6	25	33	2	3
덴마크	23	31	5	9	7.9	5.8	2	18	25	49	2	9
뉴질랜드	n.a.	37	n.a.	10	n.a.	4.8	n.a.	21	n.a.	58	n.a.	13
폴란드	41	41	14	11	5.2	5.3	17	19	58	60	17	15
체코	28	42	8	12	6.4	6.4	11	15	39	57	7	11
아이슬랜드	n.a.	43	n.a.	13	n.a.	3.2	n.a.	28	n.a.	71	n.a.	22
오스트리아	32	44	9	14	7.0	9.1	5	2	37	46	6	8
벨기에	35	44	12	14	5.6	6.6	14	13	49	57	13	11
헝가리	40	47	13	16	3.3	4.6	23	24	63	71	21	22
슬로박	n.a.	49	n.a.	17	n.a.	5.1	n.a.	20	n.a.	69	n.a.	21
네덜란드	32	50	9	18	5.4	7.0	15	8	47	58	11	13
독일	34	51	11	19	5.8	6.5	13	14	47	65	11	17
이탈리아	41	53	14	20	7.2	6.9	4	10	45	63	9	16
그리스	59	60	23	21	7.7	8.1	3	5	62	65	19	17
프랑스	46	61	17	22	6.9	7.1	6	6	52	67	14	20
아일랜드	55	64	22	23	6.8	6.7	7	12	62	76	19	24
일본	50	65	19	24	6.5	6.0	10	16	60	81	18	26
영국	53	65	21	24	13.7	14.5	1	1	54	66	15	19
미국	44	65	16	24	4.8	4.7	21	22	65	87	22	28
포르투갈	50	68	19	27	5.4	6.0	15	16	65	84	22	27
스페인	48	68	18	27	6.7	6.8	8	11	56	79	16	25

다. IFS 및 FS gap에 의한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

□ IFS(Index for Fiscal Sustainability)란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IMF가 2003년에 개발한 지수

○ Croce and Juan-Ramon(2003) "Assessing Fiscal Sustainability : A Cross-Country Comparison" IMF Working Paper WP/03/145 참조

○ IFS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IFS_t = (\beta_t - \lambda_t) = \left[\frac{(1+r_t)}{(1+g_t)} - \frac{(ps_t - ps^*)}{(b_{t-1} - b^*)} \right]$$

여기서, r(국채금리), g(경상성장률), ps(=기초재정수지/GDP), b(=국가채무/GDP)를 의미하고 *는 각각의 목표치를 의미

○ 국가채무/GDP 비율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경우($b > b^*$)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IFS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함

IFS의 도출

- 국가채무 동학(Debt Dynamics) $b_t = \beta_t \cdot b_{t-1} - ps_t$
  단, $\beta_t = (1+r_t)/(1+g_t)$
- 국가채무비율 목표 달성시 기초재정수지 $ps^* = (\beta^* - 1) \cdot b^*$
- 국가채무비율 목표 미달시 기초재정수지의 조정 $ps_t = ps^* + \lambda_t \cdot (b_{t-1} - b^*)$

→ 3개의 식으로부터 $b_t = (\beta_t - \lambda_t) \cdot b_{t-1} - (\beta^* - \lambda_t - 1) \cdot b^*$을 도출.

→ $b_{t-1} > b^*$일 때 b_t가 b^*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beta_t - \lambda_t| < 1$이 충족되어야 함

즉, $IFS_t = (\beta_t - \lambda_t) = \left[\frac{(1+r_t)}{(1+g_t)} - \frac{(ps_t - ps^*)}{(b_{t-1} - b^*)} \right]$의 절대값 < 1

□ 본 연구에서는 EU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목표로 설정하여 IFS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가 28개 OECD국가 중에서 5번째로 양호

○ EU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및 성장 및 안정협약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 b^* = 60%

○ EU회원국은 재정적자도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60%의 국가채무비율에 연 5%의 금리를 적용하면 GDP 대비 3%의 이자지출이 발생하므로 기초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 → $ps^*=0\%$

〈표 1-Ⅱ-12〉 IFS 추정결과 및 국가순위

국가	성장률 (2010 및 2011 평균)	금리 (2010 및 2011 평균)	경기조정 기초재정 수지 (2010)	국가채무 (2010)	IFS $\left[\frac{(1+r_t)}{(1+g_t)}-\frac{(ps_t-ps^*)}{(b_{t-1}-b^*)}\right]$		
	g	r	ps	b	추정결과	절대값	순위
한국	7.4	5.7	1.0	36.2	0.84	0.84	5
스웨덴	5.0	3.8	1.7	54.6	1.12	1.12	12
핀란드	4.1	4.0	-0.4	61.0	1.36	1.36	17
호주	7.7	6.1	-1.8	23.4	0.77	0.77	3
스위스	5.9	4.0	-4.0	54.6	-0.01	0.01	1
룩셈부르크	4.6	4.2	-2.2	23.6	0.87	0.87	7
캐나다	6.2	4.2	-1.4	81.7	0.79	0.79	4
노르웨이	2.6	2.8	0.3	41.6	1.09	1.09	11
덴마크	3.6	4.1	-0.5	55.0	1.01	1.01	9
뉴질랜드	5.8	6.2	-3.1	40.3	0.90	0.90	8
폴란드	6.4	5.4	-4.8	61.9	3.34	3.34	25
체코	4.0	4.5	-3.0	48.4	0.86	0.86	6
아이슬랜드	6.3	6.2	-2.6	128.1	1.03	1.03	10
오스트리아	3.0	4.0	-1.1	74.0	1.32	1.32	15
벨기에	3.2	4.0	1.9	103.6	1.16	1.16	13
헝가리	4.6	7.3	2.1	87.0	1.40	1.40	18
슬로박	4.4	4.7	-6.4	44.7	0.64	0.64	2
네덜란드	2.5	4.0	-2.0	75.1	1.55	1.55	22
독일	2.4	3.8	-1.2	80.9	1.48	1.48	21
이탈리아	2.2	4.6	1.8	132.0	1.70	1.70	23
그리스	-2.6	7.1	1.0	129.1	-5.06	5.06	27
프랑스	2.8	4.1	-3.2	93.8	1.44	1.44	19
아일랜드	0.0	5.3	-4.7	82.9	6.59	6.59	28
일본	1.9	4.9	-2.8	95.0	2.15	2.15	24
영국	3.7	4.7	-5.7	82.3	1.47	1.47	20
미국	4.2	4.7	-7.1	89.6	1.33	1.33	16
포르투갈	1.2	1.9	-5.0	199.2	1.32	1.32	14
스페인	0.5	4.4	-5.2	72.8	3.94	3.94	26

□ FS gap이란 국가채무비율 안정화(Fiscal Sustainability)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와 실제 기초재정수지와의 격차를 의미

○ Aristovnik and Bercic(2007) "Fiscal Sustainability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및 Aristovnik(2008)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Mediterranean Region : a comparison between the EU and non-EU member states" 참조

○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p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ps^* = \frac{(r-g)}{(1+g)} \cdot b$$

여기서, r(국채금리), g(경상성장률), b(=국가채무/GDP)를 의미

□ 본 연구에서 28개 OECD국가들에 대해 FS gap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실제 재정수지가 필요 기초재정수지보다 무려 1.59%p나 양호하여 스웨덴에 이어 2위를 차지

○ 한편, 경기적 요인과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통합재정수지(0.7% 적자)를 기준으로 하면 2위에서 5위로 순위가 다소 하락

〈표 1-Ⅱ-13〉 FS gap 추정결과 및 국가순위

국가	필요 기초재정수지 (ps^*, %)	실제 기초재정수지 (ps, %)	FS gap (%p)	순위
한국	-0.6	1.0	1.58	2
스웨덴	-0.6	1.7	2.39	1
핀란드	-0.1	-0.4	-0.32	7
호주	-0.3	-1.8	-1.46	10
스위스	-0.9	-4.0	-3.08	15
룩셈부르크	-0.1	-2.2	-2.13	12
캐나다	-1.5	-1.4	0.11	5
노르웨이	0.1	0.3	0.23	4
덴마크	0.3	-0.5	-0.84	8
뉴질랜드	0.1	-3.1	-3.22	17
폴란드	-0.6	-4.8	-4.17	19
체코	0.3	-3.0	-3.22	18
아이슬랜드	-0.1	-2.6	-2.49	14
오스트리아	0.7	-1.1	-1.81	11
벨기에	0.9	1.9	1.04	3
헝가리	2.2	2.1	-0.15	6
슬로박	0.1	-6.4	-6.58	24
네덜란드	1.1	-2.0	-3.09	16
독일	1.1	-1.2	-2.35	13
이탈리아	3.0	1.8	-1.22	9
그리스	12.8	1.0	-11.82	28
프랑스	1.2	-3.2	-4.43	20
아일랜드	4.4	-4.7	-9.17	27
일본	2.9	-2.8	-5.68	21
영국	0.8	-5.7	-6.50	23
미국	0.4	-7.1	-7.48	25
포르투갈	1.2	-5.0	-6.25	22
스페인	2.8	-5.2	-7.99	26

라. 정책적 시사점

□ 이상과 같은 OECD국가들의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더불어 선진국들에 비해 국가채무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줌

○ 우리나라의 총금융부채는 GDP 대비 36.2%로 28개 OECD국가 중에서 3번째로 작음

– 이러한 결과는 다른 OECD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총금융부채 기준이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상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36.1%임

○ 종합순위 방법에서는 28개 OECD국가 중에서 1위(국채 평균만기를 포함시킬 경우 6위), IFS 기준으로는 5위, FS gap 기준으로는 2위(경기적 요인과 순이자지출을 제외시킨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는 5위)

□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순채무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가채무의 절대수준을 낮게 유지할 뿐 아니라, 채무증가 속도에 맞춰 국가 보유자산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국채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 국채발행 원활화 및 국채 수요기반 확충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국채발행 이자율 하락 유도

– 5년물 국고채 이자율(%) 추이 : ('05) 4.52 → ('06) 4.96 → ('07) 5.28 → ('08) 5.36 → ('09) 4.64→ ('10.6월) 4.41

○ 국채 평균만기가 길어지도록 유도

– 장기물(10년 · 20년) 국채발행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보유국채의 평균만기를 늘릴 필요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년) 추이 : ('05) 4.17 → ('06) 4.55→ ('07) 4.68 → ('08) 4.85 → ('09) 4.96→ ('10.6월) 5.17

〈표 1-Ⅱ-14〉 장기국채 발행 및 거래량 추이

(단위: 조원)

	'06	'07	'08	'09	'10 상반기
발행량 (조원) (전체 채권 대비 비중, %)	20.8 (34.3)	18.5 (38.3)	17.8 (34.2)	23.9 (28.2)	18.9 (39.5)
거래량 (전체 국고채 대비 비중, %)	86.5 (9.3)	82.5 (9.4)	83.6 (9.0)	120.1 (8.1)	120.5 (13.8)

□ 또한, 국가채무 건전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4가지 지표 이외에 대외채무 비중, 민간채무, 경상수지 등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대외채무 비중 : 대외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위기에 취약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은 대외채무비율이 높아 국가채무 리스크가 큼

– 일본은 국가채무 규모는 매우 크지만, 국내채무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 내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표 1-Ⅱ-15〉 주요국의 국가채무(2009년말) 비교

(단위: GDP 대비 %)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국가채무	115.1	76.8	96.7	115.8	77.6	64.0	73.2	53.2	77.3	68.2	217.6	32.0
■ 대내	21.6	15.0	36.2	62.0	28.1	16.5	34.5	23.8	57.3	49.8	204.3	28.7
■ 대외	93.5	61.8	60.5	53.8	49.5	47.5	38.7	29.4	20.0	18.4	13.3	3.3

자료: IMF, 각국 중앙은행, LG경제연구소('10.6.23)

○ 민간채무비율 : 민간채무 규모가 커지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정부부문으로 전이되고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 상존

–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국가는 국가채무뿐아니라, 민간채무 규모도 커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우리나라 등은 국가채무 규모는 작지만 민간채무 규모가 커서 잠재적인 국가채무 리스크 상존

〈표 1-Ⅱ-16〉 주요국의 민간채무(2009년말) 비교

(단위: GDP 대비 %)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미국	덴마크	일본	한국
민간채무	153.9	357.4	341.5	198.9	409.0	334.5	223.7	311.6	172.0	330.7	326.1	376.0
■ 개인부문	60.0	105.0	54.6	45.2	87.7	120.7	61.4	87.8	94.9	148.3	81.8	84.2
■ 비금융기업부문	93.9	252.4	286.9	153.7	321.3	213.8	162.3	223.8	77.1	182.4	244.3	291.8

자료: Eurostat, 각국 중앙은행, LG경제연구소('10.6.23)

○ 경상수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자와 더불어 해당 국가가 잠재적인 성장 능력 이상으로 수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을 저해

– 이는 경직적인 환율제도나 포퓰리즘적 정책 성향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환율이나 물가, 임금 등의 가격조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GS국가들과 미국, 영국 등은 재정수지 외에 경상수지도 만성적인 적자상태여서 국가채무 리스크가 더욱 상승

– 일본은 재정수지는 적자상태지만,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등은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양호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건전성도 양호

– 또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절대규모는 2,742억달러에 달하며, 금액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

〈표 1-Ⅱ-17〉 주요국의 경상수지('00~'09년 평균) 비교

(단위: GDP 대비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일본	한국
-9.3	-9.2	-6.1	-2.3	-1.7	-4.4	-4.7	-2.2	0.0	3.8	6.5	10.4	3.3	1.8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87 database(2010년 6월)

〈표 1-Ⅱ-18〉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억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24,543	6.	한 국	2,742
2.	일 본	10,502	7.	홍 콩	2,568
3.	러 시 아	4,612	8.	스 위 스	2,555
4.	대 만	3,624	9.	브 라 질	2,531
5.	인 도	2,757	10.	싱가포르	2,000

□ 또한 향후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신성장 동력 확충 등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

5. 독일의 통일비용과 재정대응*

□ 독일 통일 당시의 대략적 상황

○ 구소련 고르바쵸프의 개혁과 맞물려 1989년 5월 헝가리 정부가 자국 내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공식 허용

○ 8월 말까지 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경유한 동독인들의 서독행이 급증하게 되고, 9월에는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

[그림 1-Ⅱ-12] 1957~2004년 동독과 서독간의 인구이동 (Hunt(2006)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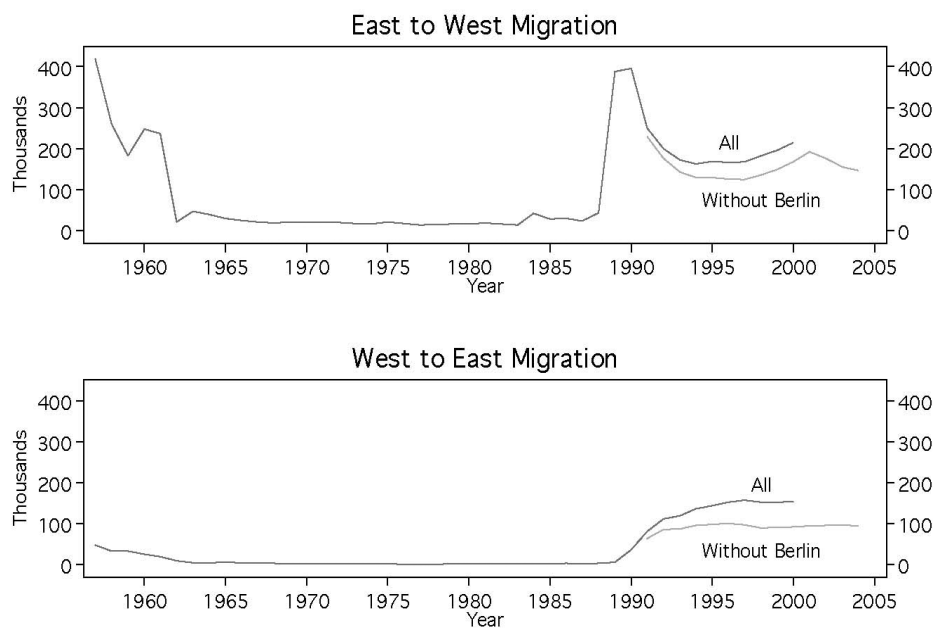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 1989년 11월 9일 밤, 군중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 그 후, 동독정부는 실질적인 국민 지배력 상실

○ 1989-1990년 시기 동독 인구의 약 5% 가량이 서독으로 이주

○ 1990년 3월 자유선거에서 동독은 서독의 Christian Democrat party와 관련된 정당이

*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hhong@kipf.re.kr)

승리하고 이를 통해 통일이 가속화

○ 1990년 7월 1일 MESU(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13]이 탄생하여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게 되고, 정치적 통합은 그 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이루어지게 됨

□ 통일 비용에 관한 논의

○ 독일의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어디까지를 통일비용으로 간주할 것인가에는 논란이 있음

– 일반적으로 처음 통합 당시 필요한 비용과 통합 이후 낙후된 구동독 지역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일비용으로 간주

– 통일비용과 관련, 그 액수가 통일 전 및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것 이외에 합의된 정확한 추정치는 없음

– 구동독지역으로의 순재정지출액의 경우만 보아도, 1991~1995년까지의 추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rat)은 6,070억DM, 연방재무부/연방은행은 7,790억DM, 독일경제연구소(IW)는 8,880억DM으로 각각 상이한 추정액을 제시

○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으로의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 통일 초기에 구동독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재건하고, 그로부터 투자의 선순환효과를 기대했던 독일정부의 예상이 빗나감

– 초기의 낙관적 전망[14]과는 달리,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으로의 재원 이전은 원래의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액수

• Heilemann & Rappen(1997)에 의하면, 1997년까지 구동독지역에서의 연방정부 세입(약 2,500억DM)을 제외한 순지원 금액은 약 1.4조DM

•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동독지역에 1조 4천억유로를 지출 (정용길, 2008)

13) 혹은 GEMSU(German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라고 불리기도 함

14) 1조~2조DM의 초기 투자와 3~5년간의 통합기간으로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에 충분하다고 예상

• 고명덕(2009)에 따르면, 통일 이후 1991~2003 서독의 동독에 대한 총공공이전 지출은 총 1.3조유로에 달하며, 이는 당초 예상의 3배가 넘는 규모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동독지역으로의 지원 액수가 통일 초기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그림 1-Ⅱ-13] 신연방주들로의 총재정지원 (Jansen(2004) 재인용)

(단위: 10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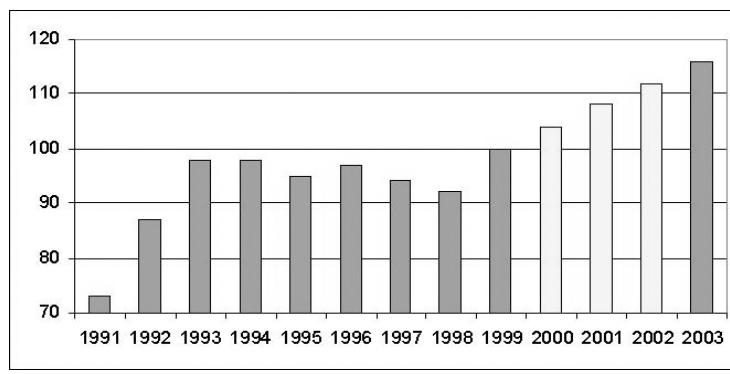

– 지원 액수를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약간의 시기적 변화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매년 서독GDP의 4~6%에 이르는 액수가 구동독지역의 지원에 사용된 것이고, 통일 초기 동독GDP의 50%가 넘는 액수가 지원

[그림 1-Ⅱ-14] 구동독으로의 순이전: 1991~2003 (Hunt(200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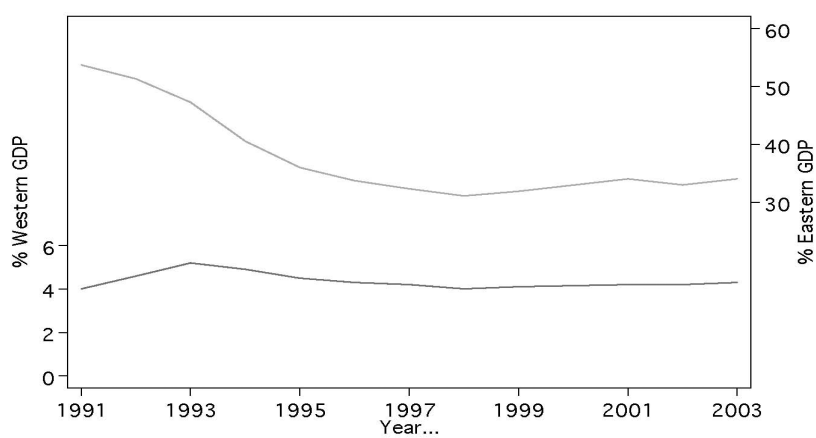

Source: Estimates by Ragnitz at IW Halle research institute
Notes: 2000 data are missing; 2003 flood aid excluded

• 개인적 부담으로 보면, 서독지역은 개인당 매년 3,000DM을 부담하여, 동독지역에 개인당 12,600DM을 지원한 꼴(Heilemann & Rappen, 1997)

– 통일 초기 독일정부의 예상에서 벗어난 또 다른 요인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

•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계획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급속한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며 붕괴하는 모습을 보임

• 이로 인해, 실업급여 등의 소비성 사회보장적 이전지출 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

• 통일비용추정치의 내역을 보면, 약 50%가량이 비생산적인 사회보장성 지출에 사용되었고, 인프라 확충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의 생산적 투자는 각각 12.5%와 7%에 불과

〈표 1-Ⅱ-19〉 독일 통일 비용 내역(1991~2003 추정치)

(단위: 10억유로, %)

구 분	내 용	금 액	비 중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 · 철로 · 수로 개선, 자치단체 교통, 주택, 도시건설 개선 등 지원	160	12.5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지출	지역 경제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보전, 투자보조, 이자보조, 전철 등 근거리 교통 보조	90	7.0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보조, 육아보조, 교육보조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독일통일기금(1991~94) 판매세보조 주재정균형조정 연방보조지급금	295	23.0
기타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105	8.2
총이전지출(A)		1,280	100.0
구동독수입(B, 세금 및 사회부담금 수입)		300	23.4
순이전지출(A-B)		980	76.6

자료: 고명덕(2009)에서 재인용

□ 독일 통일과 재정

○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

– 1980년대를 거치며 서독은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상황은 호

전되는 모습을 보임

- 1981년 570억DM(GDP의 3.8%)에 이르렀던 적자가, 통일 직전인 1989년에는 28억DM(GDP의 0.1%)의 흑자로 전환

– 1990년의 통일 이후, 재정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적자가 지속

- 1992년 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재정 부담 가중. 추후에 원금 상환에 대한 우려로, 결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비용 확보를 위해 조세 인상이 불가피

〈표 1-Ⅱ-20〉 일반 정부의 재정 상황

(단위: GDP 대비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Revenue	45.9	40.4	45.7	46.8	47.1	47.5
Expenditure	45.8	42.3	48.9	49.3	50.3	50.3
Fiscal Balance	0.1	−1.9	−3.2	−2.6	−3.2	−2.8

자료: Corker et al.(1995)에서 재인용

○ 통일비용의 재원은 주로 세 가지 방식-재정지출의 절감, 차입, 세금/부담금 인상으로 조달

– 통일 초기, Kohl수상의 연합정권은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을 증가시키는 대신 한시적인 '독일통일기금'을 신설

- 이 기금의 대부분은 외부 차입으로 조달

– 따라서, 통일 초기는 주로 공채발행으로 필요 재원을 충당. 통일 이후, 재정 소요규모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재정적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결국 '통일연대세/통일세' 등을 포함한 조세정책을 통한 재원 조달을 추가

- 차입의 비율은 1991년 거의 2/3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1/5 수준으로 감소. 반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분, 그리고 재정지출감축 부분은 동 기간에 2/5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증가

– 전반적으로 보면, 연방정부의 구동독지역 지원액은 연평균 약 1,500억DM으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약 40%가량은 차입으로, 약 10%가량은 지출감축, 약 25%가량은 세금 인상, 그리고 나머지 25%가량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충당(Heilemann &

Reinicke, 1995)

[그림 1-Ⅱ-15] West-East Transfers and their Financing
(Heilemann & Rappen (199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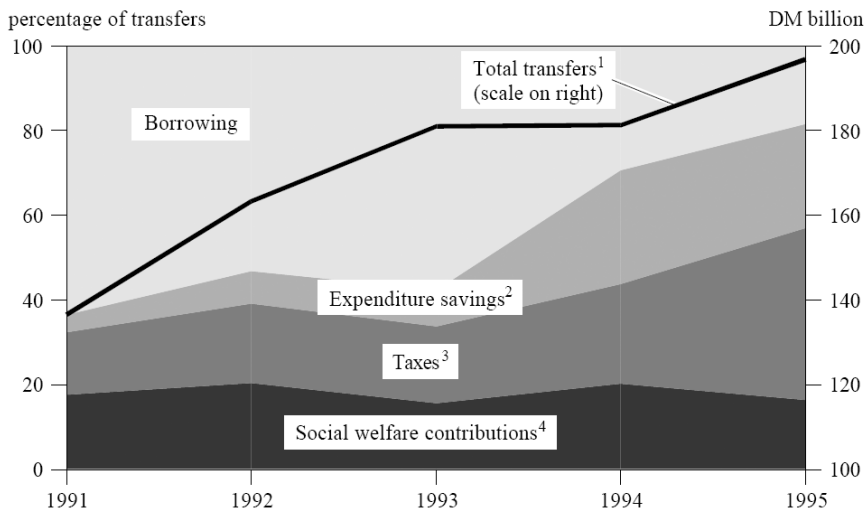

○ 차입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정부부문의 GDP 비중이 1989년의 45.3%에서 1994년에는 51.6%까지 상승

- 정부부문의 부채/GDP 비율도 1989년의 41.3%에서 1994년에는 거의 60%에 육박
-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증가하여, 1994년에는 이자지출이 전체 지출의 11%에 이르게 됨(투자지출은 7.5%에 불과)
- 이러한 재정 부담으로, 1993년 3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여야 대표가 모여 연대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재정건실화 법률'(Föderales Konsolidierungs Programm)을 제정.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도 크게 감소[15]

□ 독일통일기금(German Unity Fund; Fonds Deutsche Einheit)

○ 1990년 5월, 연방정부와 11개 주정부 대표들이 모여, 199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기금 마련

15) 예산지출항목의 75% 이상에 걸쳐 지출 감소가 일어나, 1994년에는 약 269억DM, 1996년에는 340억DM의 재정지출 절감이 이루어짐(정용길, 2008)

– 이 기금은, 구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을 기존의 기본법에 규정된 재정조정제도(Finanzausgleich)[16]에서 분리시켜, 국가조약을 규범화한 국가조약법(Staats VG)에 근거를 두게 함

– 설립 당시, 연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공채 발행을 통해 총 1,150억DM($700억)의 기금을 설립하여 구동독의 신연방 5개 주를 지원하기로 합의

• 연방정부가 기존의 서베를린과 구서독 국경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200억DM($121.7억)을 조달 계획

• 나머지 대부분인 950억DM($578.3억)은 국공채 발행을 통한 차입

– 비용의 증가로 인해, 추후 기금의 크기는 1,607억DM으로 증가

〈표 1-Ⅱ-21〉 독일통일기금 재원조달 및 지출

(단위: 10억마르크)

	재원 조달				구 동독지역 지원		
	외부 차입			연방예산 지원	당초 계획	기금 증액	지출 총액
	채권발행	누적채무	원리금 상환				
1990	20	20	–	2	22		22
1991	31	51	2.0	4	35		35
1992	24	75	5.1	4	28	5.9	33.9
1993	15	90	7.5	5	20	5.9	25.9
1994	5	95	9.0	5	10	5.9	15.9
1995	–	–	9.5	–	–	–	–

자료: 정용길(2008), 전상진 외(2007)에서 재구성

–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과 동베를린은 주민 수에 비례하여 특별지원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음[17]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은 연방과 지방이 균등하게 부담

– 연방 : 란트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 : 30 : 20의 비율로 부담

16) 재정조정제도도 통일조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수입의 란트 간 배분에 있어 구동독지역의 란트를 우대하는 과도적 체제를 유지. 이 과도적 체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연방긴축프로그램으로 소멸

17) 구체적인 배당내용은 1990년 8월 31에 체결된 '통일조약'의 제7조 5항과 6항에 조문화되어 있음

□ 연대협약(Solidaritätsbeitrag)

○ 제 1차 연대협약(1995-2004)

– 통일 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1993년 3월, Kohl 수상과 주요 당 당수들, 그리고 16개 주정부의 수반들이 전국민적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연대협약을 체결

– 연방정부와 16개 주가 함께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

– 기업들은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확대하고, 노조와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

– 199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인 연대부과금, 일명 통일세(Vereinigungssteuer)를 재도입

– 추가로 소득세의 공제 기준 조정과 개인소유재산세의 면세점 조정을 통해 추가재원 마련

○ 제 2차 연대협약(2005-2019)

– 2001년 6월 23일, 슈뢰더 연방수상, 재무부 장관, 그리고 각주의 주지사들이 3일간의 회의 끝에 5.5%의 연대세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연대협약을 체결

– 통일세는 원래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1991년 7월에 1년간의 한시적 성격으로 시작하였으나, 재정부담의 증가로 1995년 재도입된 이래, 1998년 한 번의 세율 인하 이후 현재까지 시행중[18]

〈표 1-Ⅱ-22〉 통일 후 주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내역

○ 통일연대부과금
  – 1991. 7. 1 ~ 1992. 6. 30 :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7.5%
  – 1995. 1 : 소득세액 · 법인세액 7.5% 재도입
  – 1998. 1 : 소득세액 · 법인세액 5.5%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
○ 부가가치세 : 14% → 15%
○ 사회보험료
  – 실업보험료 : 2.5% → 6.5%
  – 연금보험료 : 17.7% → 19.2%

자료: 전상진 외(2007) 재인용

18) 한시세로 도입한 통일세(통일연대세)가 영구세가 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중(2009년 11월 1차 심의에서는 위헌 판결)

〈참고문헌〉

고명덕,「독일 경제통합 실태 평가와 시사점」,『정책연구』통권16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p. 1~32

신우철,「독일통일 10년, 그 비용과 수익의 총체적 평가」,『통일문제연구』제40호, 2003

전상진 · 강지원 · 원진실,「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한 · 독 사회과학논총』제17권 제3호, 2007

정용길,「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유럽연구』제26권 3호, 2008

Corker, R. R.A. Feldman, K. Habermeier, H. Vittas, and T. van der Willigen, "United Germany: The First Fiver Years - Performance and Policy Issues," *Occasional Paper* #125, IMF, 1995

Heilemann, U. and W.H. Reinicke, "Together Again: The Fiscal Cost of German Unity," *The Brookings Review*, 1995, pp. 42~45

Heilemann, U. and H. Rappen, "The Seven Year Itch? German Unity from a Fiscal Viewpoint," *AICGS Research Report* No.6, Johns Hopkins University, 1997

Hunt, J., "The Economics of German Reunification" in S.N. Durlauf and L.E. Blume (eds.)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Palgrave macmillan, 2006

Jansen, H., "Transfers to Germany's Easter Länder: a Necessary Price for Convergence or a Permant Drag?," *ECFIN Country Focus*, Vol. 1., European Commission, 2004

Jarausch, K.H, V. Gransow, A. Brown and B. Cooper, *Uniting Germany: Documents and Debates*, 1944-93, Berghahn Books, 1994

Kuechler, M., "The Road to German Unity: Mass Sentiment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56, No.1, 1992, pp. 53~76

Seliger, B., "The Costs of German Unification: A Reconsideration after 20 Years,"『평화학연구』제9권 4호, 2008, pp. 177~202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년 7월 7일 발표)

□ 2010년 1사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5% 이상을 기록, 이는 2010년 4월 전망치보다 개선된 수치

○ 선진국은 작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개도국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

○ 또한 민간수요 증가, 생산지표, 교역량 증가율, 소비자 신뢰도 향상, 고용증가 등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 민간과 기업의 낮은 신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 증가 등 향후 경제에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음

□ 금융시장 불안이 증가함에도 불구, 세계경제 회복은 지속될 전망

○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적음

– 유로존은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아야 함

○ 다른 지역에 대한 전염효과는 제한적이고, 개도국에 자본유입을 저해하는 효과도 일시적임

– 그러나 금융여건이 더욱 악화되면 금융 및 무역 채널을 통해 국가간 전염효과가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2010년 선진국의 성장률은 2.5%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5%p 상향 조정된 수치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이는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1사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

○ 2011년에는 선진국 성장률은 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국가부채 및 실업률, 은행대출에 대한 제한 등 위험요소들이 남아 있음

○ 2011년 개도국은 6.5% 성장률로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물가상승 압력은 적지만 경기하락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음

○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였음

○ 실물경제에 대한 전염효과가 낮고 위험요소가 감소하면서 물가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나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는 상태

– 2010년과 2011년 물가상승률은 1.25~1.5%에 머무를 전망

○ 개도국의 경우, 2010년 물가상승률은 6.25%, 2011년에는 5%로 감소할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증가

○ 국가부도 위험 증가로 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전염효과가 나타나면 금융기관의 대출여건이 경직되어 시장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상대환율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게 됨

○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고 2011년 경제성장률을 1.5%까지 낮추는 시나리오도 존재

– 특히 선진국의 과도한 조기 재정건전화 정책 실시 및 금융시장 규제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경제성장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음

–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또 다른 위험요소 중 하나

□ 성장친화적인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 목표 설정 및 법제화, 연금 및 의료개혁, 재량지출 삭감, 조세구조 개선, 재정기구 강화 등이 필요

○ 재정적자 감축 시기 및 방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른데, 특히 경기회복 속도 및 재정신뢰성 손실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함

○ 대부분의 선진국은 2011년 이후 더이상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지 않고 GDP 대비 1.25%p만큼 재정적자를 감축할 전망

□ 글로벌 수요 재정립과 금융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시장의 경우, 은행합병, 자본재구성, 구조조정, 규제개혁, 투명성 제고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규제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함

○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국내수요 진작에 힘쓰고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함

○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회복 및 금융개혁을 통해 수요의 재정립(demand rebalancing)이 필요

○ 상품·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상승 및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함

나. Brookings Institute, "The Role of Expenditure Reform in Fiscal Consolidationsm" Barry Bosworth, IMF seminar paper (2010년 7월)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는 4~5%p 악화되었음

○ 개도국으로 분류된 10개의 G20 국가의 경우 재정수지가 위기 전인 2007년 0.7% 흑자였으나 위기 후 2010년엔 3.1% 적자로 돌아섬

○ 선진국으로 분류된 9개 G20 국가의 재정수지는 위기 전 2007년에는 1.7% 적자였는데, 2010년에는 7.3% 적자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개도국에서는 지출이 3%p 증가하였고, 선진국에서는 5%p 증가

〈표 1-Ⅲ-1〉 재정수지, 위기 전(2007)과 위기 후(2010) 비교

	2007			2010			balance change
	수입	지출	재정수지	수입	지출	재정수지	
개발도상국	27.0	26.6	0.4	26.5	29.6	-3.1	-3.5
G20	26.4	25.7	0.7	26.0	29.1	-3.1	-3.8
아시아	20.9	21.7	-0.8	20.5	24.6	-4.1	-3.3
라틴아메리카	29.0	28.7	0.4	29.0	30.9	-1.9	-2.2
동유럽	40.0	36.9	3.1	38.5	40.8	-2.2	-5.3
선진국	37.5	38.6	-1.1	36.7	43.4	-6.7	-5.7
G20	36.5	38.3	-1.7	35.7	43.0	-7.3	-5.6
유럽	44.3	44.6	-0.3	43.5	49.6	-6.1	-5.8
미국	33.9	36.5	-2.6	32.9	41.4	-8.5	-5.8
일본	31.1	33.6	-2.5	30.7	40.1	-9.4	-6.9

자료: IMF and author's calculation; 데이터는 22개 개도국, 32개 선진국, G20의 모든 국가 포함; Data are weighted by GDP(PPP)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소득탄력적이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더 큼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국가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지출도 증가

○ 그러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소득과 지출의 상관관계가 없음

[그림 1-Ⅲ-1] 정부지출 대 1인당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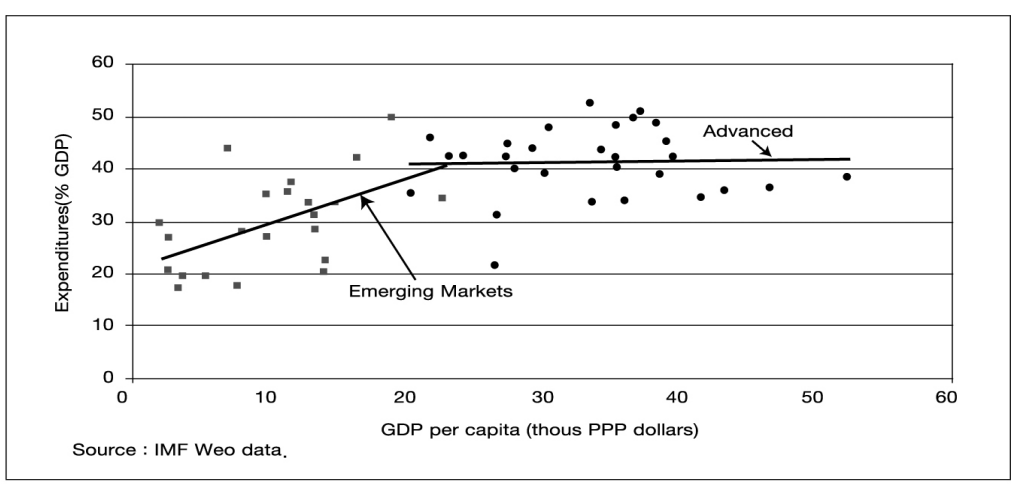

□ 유럽의 일반정부 지출은 GDP 대비 46%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10%p나 높음

○ 이는 유럽의 연금, 실업, 장애, 복지 등 사회보장 경비가 높기 때문

〈표 1-Ⅲ-2〉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2007)

(단위: GDP 대비 %)

	EU-15	EU-4	USA	Japan
일반 공공서비스	6.3	6.4	5.1	4.7
국방	1.5	1.6	4.3	0.9
치안	1.7	1.8	2.2	1.4
경제	3.7	3.2	3.7	3.8
환경	0.7	0.8	0.0	1.2
주거	1.0	1.1	0.7	0.6
의료	6.7	6.9	7.7	7.2
여가	1.1	1.0	0.3	0.1
교육	5.1	5.1	6.3	3.9
사회보장	18.0	18.9	7.1	12.4
일반정부	45.9	46.7	37.4	36.3
사회보장 제외	27.8	27.8	30.3	23.9
자본형성	2.5	2.2	2.5	3.1

자료: OECD National Account and author's calculation

– 그러나 미국의 의료지출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경비만을 포함했기 때문이며, 민간보험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GDP 대비 6%만큼 사회보장 경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여타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사회보장 경비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GDP의 상당규모를 정부부문(국방비 지출)에 사용

□ 초기 정부지출의 크기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정부지출 변화에는 음(-)의 상관관계 존재

○ 초기 정부지출이 작은 경우(예: 한국), 2000년과 2007년 사이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

○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초기 정부지출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지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정부지출 규모가 감소

– 재정건전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사회보장 경비 감소에 있음

[그림 1-Ⅲ-2] 정부지출 변화분 대비 초기 정부지출 수준(200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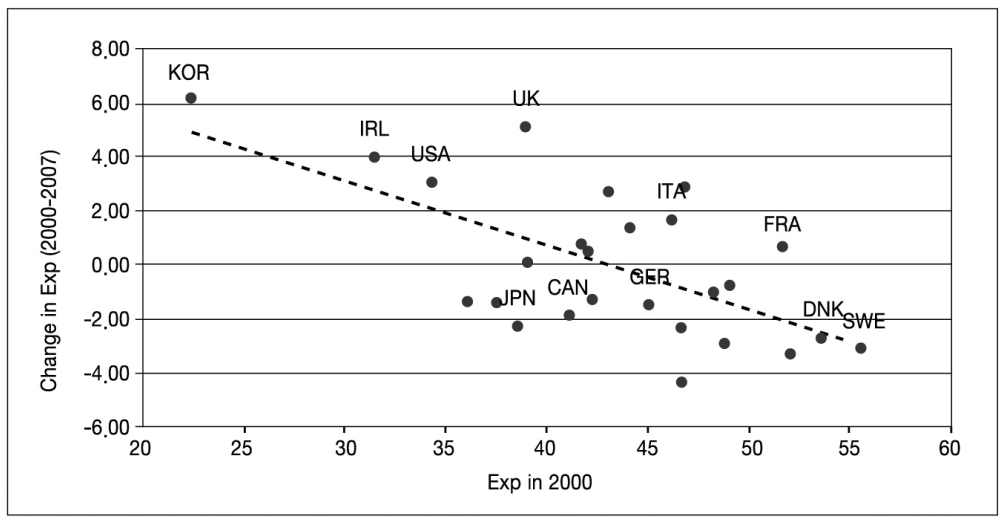

Source: OECD National Accounts; General gevernment for 26 OECD countries

□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 증가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 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는 수급조건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국가가 혜택 및 서비스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많지 않음

○ 2030년까지 의료와 연금 지출을 살펴보면 개도국에서는 의료와 연금비용 증가율이 비교적 낮음(GDP 대비 1%p 증가)

–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규모가 작기 때문

– 그러나 향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동유럽 국가는 예외적으로 의료 및 연금비용 증가율이 큼

○ 선진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금과 의료보험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 및 의료비용이 높고, 향후 20년간 의료비용 증가율은 매우 높으나 연금비용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이는 현재와 같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면 재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프로그램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

–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의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인 메디케어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의료비용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는 근로자의 퇴직을 앞당겨 연금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근로 여부와 관련된 실업보험, 가족수당, 장애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킬 전망

〈표 1-Ⅲ-3〉 연금 및 의료에 대한 비용 전망(2010~2030)

	2010		2010-30 변화분	
	연금	의료	연금	의료
개도국	4.0	2.6	1.1	1.0
G20	3.8	2.7	1.2	1.1
아시아	1.9	1.7	0.3	0.7
남미	4.8	3.6	1.2	1.4
동유럽	10.0	3.9	3.1	1.5
선진국	7.2	6.7	1.1	3.6
G20	7.2	7.1	0.9	3.9
유럽	10.0	7.0	1.3	3.0
미국	4.9	6.7	1.1	4.7
일본	10.3	6.9	-0.2	2.9

자료: IMF and author's calculation; 데이터는 18개 개도국, 26개 선진국, G20의 모든 국가 포함; Data are weighted by GDP (PPP)

□ 과거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국가들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 재정적자의 규모와 지출규모 감소에 기울이는 노력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음

○ 재정적자 감축 타겟 설정이나 지출규모 제한이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법으로 작동하였음

○ 스웨덴은 1990~91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다년도 지출한도 설정,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 금융위기의 여파로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실업급여 제공 등으로 인해 1991년에서 1993년 사이 재정지출이 GDP 대비 10% 증가, GDP의 70%
- 1998년까지 GDP 대비 2% 재정흑자라는 재정목표 설정
-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 사회보장 이전지출 감축을 통한 비용 감축
  - 1996년 향후 3년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27개의 프로그램에 시행
  -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상쇄시키거나, 남은 2년간 비용절감을 통해 상쇄
  - 연금혜택의 가격 인덱스를 전체 예산에 연동시켜, 전체 재정적자에 연동하는 인덱스 설정
- 1999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제도를 전체 예산에서 분리하고, 미래세대 혜택에 대한 부분적인 재원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재조정 제도 도입
- 그 결과 1998년 정부지출은 GDP 대비 58%, 2007년 51%까지 감소
  - 스웨덴은 초기 정부지출이 과장되었기(inflated) 때문에 재정건전화 과정이 수월했음

○ 캐나다의 경우 재정여건이 악화된 1994년부터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건전화 달성

- 캐나다는 1970년대 중반 GDP의 20%에 불과했던 공공부채가 1990년대 초반 70%까지 오르며 고질적인 재정적자, 성장둔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특히 1991년 경기침체가 끝나자 정부 각 부처가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리뷰 및 재편성에 들어감
  - 중앙정부 지출 감소
  - 연금제도를 일반 예산에서 분리하되, 부분 재원조달 및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제도 운영 뒷받침
  - 2년 단위의 계획수립을 통해 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재조정 문제 해결
- 그 결과 정부지출이 1993년 52%, 1997년 44%, 2000년 41%, 2007년 39%까지 감소함(2007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25% 수준)
  - 또한 캐나다의 실질환율 감소 및 무역수지 흑자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유리한

여건 조성

○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재정개혁 및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1980년 레이건 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부채가 GDP 대비 50%까지 증가

– 미국 의회에서 예산과정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함

– 먼저 1985년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일명 Gramm-Rudman-Hollings(GRH) Act)를 통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 매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재량지출 삭감(sequestration)

– 그러나 GRH가 잘 작동하지 않자 1990년 의회에서는 Budget Enforcement Act(BEA) 시행, 재량지출 한도 설정 및 삭감조치 강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도입

–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였으나 얼마만큼이 BEA 덕분인지는 알 수 없음

• 1990년대 중반에는 냉전시대 종료로 국방비 지출 감소, 이자율 감소로 인한 이자지출 감소, 경기확장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등 다른 재정적자 감소 요인이 공존했기 때문

○ 개발도상국은 정부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재정수입 증대도 재정건전화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 가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이 악화되었지만 위기 전 재정상황과 위기과정 동안의 경기부양책 등 여건이 다르므로 위기 후 재정 출구정책도 달라야 함

○ 위기 전 재정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면 됨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독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범주에 속함

○ 그러나 위기 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금융위기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재정적자가 대부분 구조적), 재정 출구전략이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됨

–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EU국가들이 이 범주에 속함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재정적자 목표 및 재정준칙 설정: 유로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에 유효

– 그러나 이미 유로존 회원국이 된 국가들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음

– 또한 1980년대 미국과 같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경우에도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음

○ 지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지출한도 설정(스웨덴)

○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제로 베이스 예산과 비슷(캐나다)

○ PAYGO 원칙(미국)

○ 의무지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및 구조조정 시행

– 연금 구조조정, 퇴직연령 상향조정, 퇴직연령을 평균기대수명에 연동, 연금 혜택 재검토

□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 세 가지 공통점 발견

○ 신뢰성 있고 투명한 준칙

– 또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함 (캐나다)

○ 강제시행(enforcement) 기재 마련

– 지출통제를 하는 경우 개별 부처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더욱 강력한 책임성이 명시됨

– 재정정책 커미티를 구성하여 다년도 재정수지 회복 목표, 매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등을 설정 · 관리하도록 함(199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견고해야 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목표 설정보다는 지출통제가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법으로 제시

– 스웨덴의 경우, 한 해의 비용증가를 다른 해의 비용감소로 상쇄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 운용

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 Area Fiscal Policies and the Crisis, occasional paper series NO 109, Chp. 6 (APRIL 2010)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 악화

○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금리상승, 성장률 저하 등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 이는 유로존의 Stability and Growth Pact(SGP)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EU에 제도적 장치 필요

□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 시기에 출구전략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은행 부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

○ 경기부양 중단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

○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단행

□ 시의적절하고(timely) 신뢰성 있는(credible) 재정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함

○ SGP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이 EMU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됨

○ 경기부양책 중단이 시의적절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이 공신력 있을 때 소비자 자신감이 유지됨

○ 재정적자의 증가는 중장기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는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제 혹은 금융위기 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여전히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

□ 재정 출구전략과 재정건전화 정책은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리스본 조약과 SGP에서 제공하는 체제를 따라야 함

○ 현재 혹은 미래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에 따라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함

– 초과재정적자는 1년 내에 감축되어야 하며, 매년 GDP 대비 0.5%씩 구조적 조정을 해야 함

– 늦어도 2011년부터 재정건전화 단계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연간 GDP 대비 0.5%씩 감소시켜야 함

○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된 국가에서는 연간 조정비율이 GDP 대비 1%까지 증가

○ 재정건전화는 주로 지출개혁을 통해 시행

– 유럽국가들은 이미 조세부담이 높고,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가격경쟁력과 노동, 투자, 혁신의 인센티브를 낮추기 때문

– 또한 인구고령화, 정부부채 증가에서 비롯된 이자비용 상승은 지출억제를 시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 재정건전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단순히 초과재정적자를 낮추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함

– GDP 대비 3%라는 재정적자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마진을 두어야 함

– 재정건전화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균형 혹은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

–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전망, 경기회복속도, 과거 재정운영 성과, 향후 재정위험요소, 다른 거시경제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향후 EMU 운영과 장기 성장 및 안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위기 이후 EU의 재정규율 제도에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음

○ 재정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도적 인센티브가 약함

– 리스본 조약이 지정한 재정적자(GDP 대비 3%) 및 부채(60%) 목표치가 가장 근본적이고 투명한 정량적 지표임

- 또한 국가별로 중기목표(MTOs)에서 타겟을 정함
-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왔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중기재정 목표를 뛰어넘는 건전한 재정여건을 확립할 필요
- 금융위기 후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부양정책 공조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가에 일조하였음
- 재정적자 문제는 유럽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견제기제(peer pressure)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

○ 양질의 정보 부족으로 각국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현재 경제상태와 이것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갭(output gap)과 조세탄력성, 거시변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정량적 평가는 좀 더 보수적이어야 하며 경상수지, 경쟁력, 가계 및 기업부채, 구조적 실업률, 자산가격 추세 등 다른 보조변수들을 활용해야 함
- 또한 회원국들은 적시에, 믿을 만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독립적인 재정정책 운영회(fiscal policy council)를 설립하여 재정상황을 감독, 예측, 평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계산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라. 삼성경제연구소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06.08)

□ 한국정부는 2008년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흑자(11.9조억원)에서 2009년 적자(17.6조억원)로 돌아서고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증가(15.6조억원 → 43.2조억원)

○ 국가채무는 309조원(GDP 대비 30.1%)에서 359.6조원(GDP 대비 33.8%)으로 증가

- 2010년 국가채무는 407.2조원으로 GDP 대비 36.1%까지 증가 전망

□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국가채무 관리가 필

요함

○ 국채이자 등 의무적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녹색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 재량적 지출도 줄이기 어려움

○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소요가 증대될 전망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함

○ 재정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쳐 확장재정정책이 지속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국가신인도를 저해하여,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명확한 신호 전달과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설정이 필요

○ 정부는 총량적 기준(재정수지, 국가채무, 정부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함

○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식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함

○ 정부가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한 준칙이 효과적

□ 또한 출구전략의 부작용(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지표에 연동하는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중장기 재정목표를 감안한 출구전략을 모색

○ 출구전략 시기를 경제지표에 맞추는 경우 출구전략의 내용과 계획을 시장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격이 되어 명확한 신호를 전달

○ 한국의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적절한 재정준칙의 기준 마련

마. 삼성경제연구소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 (2010.7.21)

□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7.6%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재정정책을 실시한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2.6%로 OECD 평균인 53.8%보다 21.2%p 낮은 양호한 상태

□ 국채 문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았듯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국가간 상대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국가채무의 적정규모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전제하에서 경제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국가채무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채무의 편익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는 점임

○ 국가채무의 적정규모는 국가별 특성과 재정지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 국가채무의 편익은 단기적인 총수요 확대와 성장률 제고, 잠재성장률 확충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있음

○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 정부는 가계 소비를 평활화하여 단기적으로 가계소비 진작, SOC에 투자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면 채권시장 규모를 확장시키고 국채가격을 안정시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국가채무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민간투자 구축을 통한 성장 억제,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 재정규율 약화 등이 있음

○ 국채 증가는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성장률을 억제하고 총생산 감소

○ 국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해외자본이 유출,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긴축재정을 펴는 경우 향후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러한 국채의 비용·편익을 고려해 추정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62%이며 향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 52% 수준임

○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33.8%로 적정 국가채무비율인 62%보다 약 30%p 낮은 수준

○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증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수요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적정 채무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채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채규모의 여유 있는 관리 필요

–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부터는 적정 채무비율이 실질 채무비율을 초과함

– 2050년에는 적정 채무비율이 52%로 낮아지는 데 반해 실질 채무비율은 11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악화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가 우려됨

□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준칙과 규율을 통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며, 적정 채무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장기적으로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채무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잠재성장률 및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재정준칙으로 설정하고, 엄격한 재정운용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함

○ 아울러 보유자산을 늘리고 장기물 국채발행 비중을 확대하며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해야 함

바. LG경영경제연구원, 7월 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더 지켜봐야(2010.8.4)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의 향방을 가늠할 국가로 EU 5위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주목받고 있음

○ 스페인 실물 경제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남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을 거쳐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 부상

○ 또한, 스페인 재정위기 이면에는 민간부채 문제와 경제의 경쟁력 약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

□ 스페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확장재정정책 시행,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저축은행 부실을 들 수 있음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

○ 이로 인하여 부동산 건설시장의 급격한 침체와 금융기관 부실화 동반

○ 결과적으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지난 1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흑자(1.9%)의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1.2%로 하락, 정부부채비율은 2007년 36.2%에서 2009년 53.2%로 상승

□ 스페인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긴축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태

○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스페인 정부는 재정개혁안(Spain Stability Program)을 지난 5월 27일 논란 속에 의회 통과

– 재정개혁안의 골자는 ▲2010~2011 회계연도 정부지출 150억유로 추가 감축 ▲임금 동결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금 인상 ▲연금 인상 계획 취소 ▲소득세 공제 폐지 등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11.2%)을 2013년까지 EU와 합의한 3%로 축소

○ 현재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2%로 양호한 편이나(유로존 평균 78.7%) 향후 상환능력을 고려한 '세입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152%로 유럽연합 성장안정협약에서 정한 기준선(135%)을 초과

○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기업의 차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2000년 54.2%에서 2009년 194%로 상승, PIGS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며 가계부채 규모 역시 2009년 3분기 106%로 유로존 평균(95%) 초과

○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였던 2007년 이전에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재정 불균형 구조 속에서, 현재 연정상태로 집권중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 약화도 어려움을 가중

□ 저축은행 부실화에 따른 단기 금융권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스페인 경제안정을 위한 선결 과제

○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45개 비상장 저축은행들에 대한 인수합병과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

– 주택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스페인 은행 전체 부실여신 비율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침체로 2006년 0.7%에서 2009년 6.4%로 급등

–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29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은행구조조정기금 102억유로를 투입, 저축은행의 수를 39개에서 12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하고,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동태적 대손충당금(Dynamic Provisioning[19]) 적립기준을 강화

○ 하지만 민간대출 규모가 2009년 9월 5,992억유로에 달하는 저축은행들의 재무상태를 볼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지속으로 부실여신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며, 따라서 정부의 단기적인 적자보전성 공적자금 지원 정책만으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하지만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전망

19)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은행업계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경기호황기에 높은 대손충당금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완충자본을 경기침체기에 활용하는 제도

○ 최근 국제금융기구들의 안정화기금 조성, 단기 유동성 지원, 국채차환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 제고 불가능

- 성공적인 국채발행, 만기 도래한 국채상환, 유럽중앙은행, IMF 등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7,500억유로(EU 전체 GDP의 6%)를 조성
-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1,541억유로(GDP의 10.5%)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이를 주로 민간의 대외차입으로 보전한 결과, 민간의 외채비중이 83%로 그리스(46%)의 약 2배
- 건설 붐 및 관광업 등 서비스부문에 의존한 내수형 성장을 해 온 탓에 약화된 제조업 경쟁력을 단기간에 회복하긴 어려울 전망
- 물가연동임금체계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등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실업률(20%)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26%)이 남유럽 국가 최고수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외국이민자 비중이 40%에 달하여 노동생산성 저하

○ 주택경기와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남유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것

- 기업성과 개선 및 가계소득수준 향상 등 민간부채를 줄일 수 있는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부채 부도발 금융·재정 복합위기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Fiscal Policy and Macroeconomic Stability: Automatic Stabilizers Work, Always and Everywhere, Working Paper No. 10/111 (May 1, 2010)
2. Equity and Fiscal Policy: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Taxation and Social Spending in Central America, Working Paper No. 10/112 (May 1, 2010)
3. Fiscal Policy and the Current Account, Working Paper No. 10/121 (May 1, 2010)
4. Fiscal Stimulus and Credibility in Emerg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10/123 (May 1, 2010)
5. Tax Revenue Downturns: Anatomy and Links to Imports, Working Paper No. 10/138 (June 1, 2010)
6. How Did Emerging Markets Cope in the Crisis?, IMF policy paper (June 15, 2010)
7. Budget Consolidation: Short-Term Pain and Long-Term Gain, Working Paper No. 10/163 (July 1, 2010)
8. Public Debt and Growth, Working Paper No. 10/174 (July 1, 2010)
9. Does Procyclical Fiscal Policy Reinforce Incentives to Dollarize Sovereign Debt?, Working Paper No. 10/168 (July 1, 2010)
1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Restoring Confidence without Harming Recovery (July 7, 2010)
11. Monetary Policy and Bank Risk Taking, Staff Position Notes No. 2010/09 (July 27, 2010)
12. Fiscal Deficits, Public Debt, and Sovereign Bond Yields, Working Paper No. 10/184 (August 1, 2010)

□ OECD

1.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s in the OEC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61 (May 2010)
2. Fiscal Policy Reaction to the Cycle in the OEC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63 (May 2010)
3. Assessing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on Structural Unemployment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67 (May 2010)
4. The OECD's New Global Model,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68 (May 2010)
5. OECD Economic Outlook No. 87 (May 2010)
6. European Energy Policy and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79 (June 2010)
7. Are Global Imbalances Sustainable?,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95 (July 2010)
8. The Korean financial system,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96 (July 2010)
9.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 798 (July 2010)
10.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2010, Volumes II, Detailed Tables, OECD Publishing (July 2010)

□ World Bank

1. Universal minimum old age pension: impact on poverty and fiscal cost in 18 Latin American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292 (May 2010)
2. Fiscal adjustment and growth in Sub-Saharan Africa: overview and lessons from the current downtur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306 (May 2010)
3. Fiscal compet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311 (May 2010)
4. Global Monitoring Report 2010: The MDGs after the Crisis (May 2010)
5. Subnational debt finance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B Brief No. 54507 (May

2010)

6. Crisis preparedness and debt management in low income countries: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policy framework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372 (Jul 2010)
7. Sovereign debt distress and corporate spillover impac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380 (Jul 2010)
8. "Finding the tipping point - when sovereign debt turns ba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5391 (Jul 2010)
9. Debt management: now the difficult part, WB Brief No. 55829 (Jul 2010)

□ ADB

1. ADB Annual Report (Apr 2010)
2. Rebalancing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ADB WP No. 224 (July 2010)
3. Fiscal Policy Issues in Korea after the Current Crisis, ADB WP No. 225 (July 2010)
4. Impact of Global Rece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Linkages, ADB WP No. 227 (July 2010)
5. Rebalancing the US Economy in a Postcrisis World, ADB WP No. 236 (Aug 2010)

□ EU

1. ECB statistics: an overview (Apr 2010)
2. Financial factors in economic fluctuations, ECB WP (May 2010)
3.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in EU countries, ECB WP (May 2010)
4. Fiscal policy and growth: do financial crises make a difference?, ECB WP (June 2010)
5. Financial Stability Review (June 2010)
6. Monetary policy and capital regulation in the US and Europe, ECB WP (July 2010)
7. Wages, labor or prices: how do firms react to shocks?, ECB WP (July 2010)
8. Inflation and inflation uncertainty in the euro area, ECB WP (July 2010)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 연구 제3권 제2호 (2010. 05)

1.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 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박기백
2.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보장의 효과 분석/박상원
3.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개편의 재원 재분배효과 분석/최병호, 이근재, 정종필
4. 노동패널을 이용한 주관적 동등화 지수 추정/김진, 송헌재
5.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임병인
6.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성/현진권
7. 재정이전과 위험분산/송명화, 김일태, 김봉진

정책세미나: '재정출구전략의 모색' 정책토론회 (2010. 06. 21)

1. 재정출구전략의 모색/이영

정책세미나: 기부금 세제 개선 공청회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지원세제 개선방안/유경문, 이선성, 박기백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2010년 하계학술대회 (2010년 7월)

1.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2. 학과별 분과회의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1호 (2010년 5월)

1. 대도시지역 소득 유출효과와 세출 외부효과 분석/오병기
2. 지방재정분석의 순위결정요인 분석과 자치단체 유형화/하능식
3. 재정관리와 분권 관점에서의 지방재정법 변천과정 분석과 자치재정을 위한 개편과제

/이재원

4. 폴라니(K. Polanyi)의 논의 틀이 지방분권에서 갖는 함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중심으로/우명동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8권 2호 (2010년 6월)

1. 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김광수
2. Kaldor 유형의 거시동학모형: 기업부채와 자본축적의 동태적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이상헌, 고민창
3. CO_2 배출량을 감안한 화력발전소의 생산성 변화분석/권오상, 박호정
4.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작성방법 연구/최성관
5. 다중구조변화와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아시아경제 확률수렴성 연구: 패널정상성과 패널공적분을 이용하여/김지욱
6. 경제환경의 변화가 주식시장 변동체계의 장기적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김태호, 황성혜
7. 통화정책 및 실물 · 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손종칠
8.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윤성호, 주만수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성명재 (2010년 4월호)
2. 매입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 감면규모 추정/정재호, 김종면, 이은경 (2010년 5월호)
3.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정책과제/홍범교 (2010년 6월호)
4. 일본의 사업분류와 예산삭감/원종학 (2010년 7월호)

세미나 자료

1.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 선진화/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5월)
2.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5월)
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한국조세연구원 외 (2010년 6월)
4.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성명재 외 (2010년 7월)
5.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전병목 (2010년 8월)

기타연구자료

1. 주요국의 공공기관 Ⅰ (2010년 5월)
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1호 (2010년 5월)
3. KIPF 재정동향 제2호 (2010년 6월)
4.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형수 (2010년 6월)
5.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이영 외 (2010년 6월)
6. 주요국의 공공기관 Ⅱ (2010년 6월)
7. KIPF 공공기관 동향 (2010년 7월)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국가재정제도 - 원리와 실제 (2010년 5월)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2010년 6월)
3.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2010년 7월)
4.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가이드라인 (2010년 7월)
5. 200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0년 7월)
6.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Ⅰ(기획재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 (2010년 7월)
7.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Ⅱ(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가족) (2010년 7월)

8.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법제사법, 정무,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2010년 7월)
9.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 (2010년 7월)
10.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Ⅰ (2010년 7월)
11. 2009회계연도 결산중점분석Ⅱ (2010년 7월)
12.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10년 7월)

경제분석 보고서

1.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제2호 (2010년 5월)
2.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0년 5월)
3.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제3호 (2010년 6월)
4.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년 6월)
5.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6호 (2010년 6월)
6.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제4호 (2010년 7월)
7. 2009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 (2010년 7월)
8. 경기선행지수의 향후 경기에 관한 시서점 (2010년 7월)
9.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2010년 7월)
10.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 제5호 (2010년 8월)

기타보고서

1.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10년 6월)
2. 재정법령집 2010 (2010년 6월)

포럼/간담회

1. 2009년도 성과보고서 평가 (2010년 5월)
2. 지출전망 포럼 (2010년 5월)
3.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2010년 5월)
4.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2010년 6월)

5. PF(Project Financing) 위기의 영향 (2010년 7월)
6. 국가정보화사업 평가포럼 (2010년 7월)
7. 최근의 미국경제 주요 현안과 전망 (2010년 7월)
8. 부동산 시장전망과 정책대응 (2010년 8월)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click 경제교육 2010. May (2010년 5월)
2. KDI 경제동향 2010. 5 (2010년 5월)
3.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 외 (2010년 5월)
4. 국도77호선(화양~적금) 건설사업/노승범 (2010년 5월)
5. KDI 경제전망, 2010 상반기 (2010년 5월)
6. Economic Bulletin, May 2010 (2010년 5월)
7.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 (2010년 5월)
8. click 경제교육 2010. June (2010년 5월)
9. 나라경제 2010. 6 (2010년 5월)
10. KDI 경제동향 2010. 6 (2010년 6월)
11.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김두얼 (2010년 6월)
12. Economic Bulletin, June 2010 (2010년 6월)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1권〉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2010년 6월)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제2권〉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2010년 6월)
15. 나라경제 2010. 7 (2010년 6월)
16.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최경수 (2010년 6월)
17.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6월 (2010년 6월)
18. click 경제교육 2010. July (2010년 6월)
19. KDI 경제동향 2010. 7 (2010년 7월)

20. Economic Bulletin, July 2010 (2010년 7월)
21. 나라경제 2010. 8 (2010년 7월)
22. click 경제교육 2010. August (2010년 7월)
23.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7월 (2010년 7월)
24. KDI 경제동향 2010. 8 (2010년 8월)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2010년 5월)
2.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2010 (2010년 6월)
3. 국제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도전과 국제협력 (2010년 6월)
4.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0년 6월)
5.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2010년 5월)
6. 201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 (2010년 6월)
7.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010년 6월)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해외경제정보 제2010-24호: 영국 장기국채(Gilt채) 시장의 특징과 향후 전망/구미경제팀 (2010. 06. 08)
2. 해외경제정보 제2010-25호: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종합분석팀 (2010. 06. 09)
3. 해외경제정보 제2010-26호: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아주경제팀 (2010. 06. 30)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박현수 외, CEO 인포메이션 제748호 (2010.03.24)
2.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신창목, SERI 경제포커스 제286호 (2010.03.30)
3. 최근 고용 현황 진단 및 평가/손민중, SERI 경제포커스 제289호 (2010.04.20)

4. 환율 1,100원의 의의와 경제적 파장/정영식 외, CEO 인포메이션 제753 (2010.04.28)
5.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황인성 외, 연구보고서 (2010.05.13)
6.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의 명과 암/구본관 외, CEO 인포메이션 제758호 (2010.06.02)
7. 재정건전성 회복과 출구전략/이동원, SERI 경제포커스 제296호 (2010.06.08)
8.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의 향방/이종규 외, 연구보고서 (2010.06.10)
9. 한국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비교/정대선, 정영식, SERI 경제포커스 제301호 (2010.07.13)
10.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문외솔 외, CEO 인포메이션 제765호 (2010.07.21)
11. 위안화 평가절상 전망과 시사점/엄정명, SERI 경제포커스 제303호 (2010.07.27)
12. 한국 대외 채권 · 채무의 불균형 구조 및 시사점/정영식, 정대선, SERI 경제포커스 제304호 (2010.08.03)

세미나

1. 2010 한중국제경제포럼
2. 신흥국 부상의 시장기회와 한중일 3국의 정책대응 (2010년 6월)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Weekly 포커스: 변동금리 위주 대출로 통화정책 영향 확대/최문박 (2010년 4월)
2. LGERI 리포트: 2010~2015 글로벌 경제환경 전망 (2010년 4월)
3. LGERI 리포트: 2010년 국내 경제 전망 (2010년 4월)
4. Weekly 포커스: LED조명 : 더딘 시장, 커지는 잠재력/김치헌 (2010년 5월)
5. 시중자금의 단기화, 아직 부작용 크지 않다/정성태 (2010년 5월)
6. Japan Insight 41호 : 일본기업, 신흥국 공략으로 탈 갈라파고스 모색 (2010년 5월)
7. LGERI 리포트: 그리스 구제금융에도 꺼지지 않는 남유럽 위기의 불씨/강중구, 유승경, 이창선 (2010년 5월)
8. LGERI 리포트: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기업간 경쟁 더욱 치열/이한득 (2010년 5월)
9. Weekly 포커스: 남유럽 재정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 비교/윤상하, 배민근 (2010년 5

월)

10. LGERI 리포트: 차별적인 경쟁력, 맞춤화와 개방형 혁신으로/조준일 (2010년 6월)
11. LGERI 리포트: 유로화 약세의 의미와 영향/배민근 (2010년 6월)
12. LGERI 리포트: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이근태, 강중구 (2010년 6월)
13. Weekly 포커스: 경기 중립적 정책금리 수준/정성태 (2010년 6월)
14. China Insight 29호 : 올해 하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정부 및 업계 시각 外 (2010년 6월)
15. LGERI 리포트: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윤상하 (2010년 7월)
16. LGERI 리포트: 2010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 (2010년 7월)
17. LGERI 리포트: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이창선, 최문박 (2010년 7월)
18. Japan Insight 42호 : 일본기업, 유로화 약세 충격을 인프라 수출로 극복 모색 (2010년 7월)
19. Weekly 포커스: 7월 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더 지켜봐야/홍석빈 (2010년 8월)
20. LGERI 리포트: 중국경제가 급락한다? 리스크 있지만 경착륙은 없다/이철용 (2010년 8월)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보고서

1. 자본규제 논의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태규, KERI Insight (2010. 07. 15)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대규모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과 진행 그리고 교훈/장성수 (2010년 5월)
2. 경직일로의 한국 노동시장과 고용보호 개선 방안/박동운 (2010년 5월)
3.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민경국 (2010년 6월)
4.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배진영 (2010년 7월)

정책모니터

1. 국공립 의료기관을 민영화해야/전용덕 (2010년 5월)
2.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대한 평가-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중심으로/윤창현 (2010년 6월)
3. 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정기화 (2010년 7월)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제669회]소비트렌드를 통해 본 한국의 경기 회복 전망/김난도 (2010년 5월)
2. [제674회]최근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과 대책/진동수 (2010년 6월)
3. [제675회]지식경제 한국의 과제와 기업의 역할/최경환 (2010년 7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박영준 외(2010년 4월)
2.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이동은 외 (2010년 5월)
3.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가능성/박복영 외 (2010년 6월)
4. 제3차 한 · 일 · 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정형곤 외 (2010년 6월)
5.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허인 외 (2010년 6월)
6. 2010년 하반기 국제거시금융환경 전망 (2010년 7월)
7. 2010년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2010년 7월)
8. 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윤덕룡 외 (2010년 7월)
9. 2010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2010년 7월)
10. EU의 은행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 및 향후 전망/오태현 (2010년 7월)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서병호 외 (2010월 4월)
2.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장민 외 (2010월 4월)
3. 가격경직성과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정용승 (2010월 4월)

4.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김동환 외 (2010년 5월)
5.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서병호 (2010년 5월)
6.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채희율 (2010년 5월)
7.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김정한 외 (2010년 6월)
8. 우리나라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이윤석 외 (2010년 6월)
9. 재정정책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패널분석/박완규 외 (2010년 6월)
10.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의 비대칭성과 투자 쏠림현상/강경훈 외 (2010년 6월)
11.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화유동성 확보방안/김정식 (2010년 7월)
12.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이종욱 (2010년 7월)
13. 국내 투자은행(IB)의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김진호 (2010년 7월)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논의와 전망/김병덕 외 (2010년 7월)
15.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강종만 외 (2010년 7월)
16. 차이나머니의 해외투자 향방과 시사점/김경엽 (2010년 7월)
17. 최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박영석 (2010년 8월)
18.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 방안/손상호 외 (2010년 8월)

세미나

1. GDP 추계방법 변경을 감안한 거시경제 모형 개발 (2010년 5월)
2. 금융산업 및 은행 M&A 전망 (2010년 5월)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의 타당성과 문제점 (2010년 5월)
4. 민간 CB 발전방안 (2010년 5월)
5. An Overview of Financial Reform Proposals (2010년 5월)
6.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 심포지엄 (2010년 5월)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공청회 (2010년 6월)
8.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감독과제 (2010년 7월)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Ⅰ. 주요국 동향
Ⅱ. 미 국 (FY2010: 2009.10~2010.9)
Ⅲ. 일 본 (FY2010: 2010.4~2011.3)
Ⅳ. 영 국 (FY2010-11: 2010.4~2011.3)
Ⅴ. 독 일 (FY2010: 2010.1~2010.12)
Ⅵ.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Ⅶ. 호 주 (FY2010-11: 2010.7~2011.6)

Ⅰ 주요국 동향*

□ 2010년 하반기 혹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이상 6개국은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미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 5% 삭감, 각 연방기관의 비용절감, 비용증가시 성과관리 등 재정안정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

○ 영국은 새로운 연립정권이 발표한 긴급예산안에서 책임성(responsibility) 있는 재정운영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

○ 일본은 중장기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해 향후 3년간 국채발행 및 세출증가를 억제하기로 함

–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소비세 인상 방안도 검토

○ 독일은 2016년까지 800억유로를 삭감하는 중장기적 긴축재정안 발표

○ 호주는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재정흑자로의 빠른 전환"을 FY2010 예산안의 기조로 삼고 FY2012까지 재정흑자 회복을 목표로 함

○ 캐나다는 비교적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으로서 장기적으로 재정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정기발행하기로 함

□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재정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 증대

○ 특히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어, 신성장전략 제시 등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 간구

– 성장전략산업 육성, 산업구조비전 제시

– 외국인투자 유인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eklee@kipf.re.kr)

–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육성

○ 영국 역시 긴급예산안의 한 기치로 자유(freedom)를 내세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제공

○ 호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훈련 강화, 기간시설 확대, 보건 및 의료개혁 등을 제시

○ 미국은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업감소에 치중

○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경기가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경제성장보다는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강력한 재정건전화 방침을 수립

– 경제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재정긴축을 통한 물가 및 임금상승률 억제, 주변국의 재정긴축 동참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 재정건전화를 통한 간접적 경제성장 가능

○ 캐나다 역시 재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을 강조

□ 또한 필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되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혁 시행

○ 미국은 실업수당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 발효

○ 일본은 세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확보 추구

– 연금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의 지속성 확립

○ 영국은 긴급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보호 등 공정성 확보(fairness)를 중심 기조 중 하나로 설정

– 개인공제한도 상향조정, 국가기초연금 연동제 시행

○ 독일은 사회보장을 오히려 축소

– 생활보호대상자 연금,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 축소

○ 캐나다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특별한 지원도, 지출감축도 시행하지 않음

○ 호주는 근로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단행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제도 및 보건의료제도 개혁 시행

Ⅱ 미국 (FY2010: 2009.10~2010.9)

1. 세제개편

□ 2010 실업수당 연장법(Unemployment Compensation Extension Act of 2010, H.R.4213) 발효

○ '10.7월 오바마 대통령은 임시 실업수당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 이 법으로 6월 초 프로그램 만료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었던 약 3백만명의 실업자가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이 법안은 주정부 보조금 및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등을 포함하여 당초 2천억달러로 제출되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 보수세력의 반대로 340억달러로 축소 승인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FY2011 예산안 업데이트(Mid-Session Review, MSR) 발표

□ '10.7월 정부는 올 2월 제출한 예산안을 업데이트하여 의회 제출

○ 매년 7월 16일까지 대통령은 예산안을 업데이트하여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초 작성한 예산안을 업데이트한 문서인 MSR는 재정수입 및 지출, 예산권한, 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갱신하여 제시

□ FY2011 MSR는 2월 대통령 예산안 발표 이후부터 지난 7월 2일까지 제정한 법률 등을 반영하여 재정전망을 업데이트

○ (재정수입) '10.9월 끝나는 FY2010 재정수입은 2월 전망보다 330억달러 감소한 2조 1,320억달러(GDP 대비 14.5%)로 전망

FY2011 재정수입은 2월 전망보다 1,410억달러 적은 2조 4,260억달러(GDP 대비 15.8%)에 이를 전망

- FY2011의 재정수입 감소는 2010년 현재까지의 실제 조세징수 규모 및 조세모형 수정 등 기술적 요인과 이번 MSR에 포함된 정부정책안*의 재추계에 기인

* 신규 기업투자에 대한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지원 등과 같은 세금감면 입법이 2월 예산안에서 가정한 것보다 향후 다수 일어날 것을 가정

○ (재정지출) FY2010 재정지출은 예산안보다 1,180억달러 감소한 3조 6,030억달러(GDP 대비 24.6%)*로 전망

FY2011의 재정지출은 3조 8,420달러(GDP의 25.1%)가 될 전망으로 예산안과 큰 변동 없음

* FY2010 지출감소는 실업과 예금보험, 비안보 재량지출 프로그램의 지출 추계가 낮아진 것에 기인

○ (재정수지) FY2010에는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예산안보다 840억달러 감소한 1조 4,710억달러* 전망

FY2011 재정적자는 FY2010보다 감소한 1조 4,160억달러(GDP 대비 9.2%)로 전망되었지만, 예산안보다는 1,500억달러 증가

* FY2010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가 될 전망으로 이는 2월 예산안보다 0.6%p 낮아진 수치이며, FY2009 적자(GDP 대비 9.9%)와 비슷한 수준

〈표 2-Ⅱ-1〉 FY2011 MSR 재정전망

(단위: 10억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월 MSR											
재정수입	2,132	2,426	2,814	3,102	3,441	3,597	3,853	4,083	4,301	4,523	4,725
재정지출	3,603	3,842	3,725	3,838	4,139	4,359	4,610	4,804	5,051	5,345	5,626
재정적자(a)	1,471	1,416	911	736	698	762	758	721	749	822	900
GDP 대비 %	10.0	9.2	5.6	4.3	3.8	4.0	3.8	3.4	3.4	3.6	3.8
2월 예산안											
재정적자(b)	1,556	1,267	828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GDP 대비 %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재정적자 변화분											
변화분(a-b)	-84	150	83	9	-8	10	-20	-57	-36	-86	-103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2
Mid-Session Review for Fiscal Year 2011, OMB, 2010.7

2) FY2012 예산편성 지침 각 연방기관에 하달

□ 지난 6월 FY2012 예산안 작성을 위한 관리예산처(OMB)의 예산편성 지침이 각 연방기관에 하달

○ 내년 2월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준비과정에서 사용될 이번 지침은 FY2011 예산안에서 제시된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방침을 지속하는 등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초점

○ 각 연방기관은 전 회계연도 대비 총재량지출 5% 감액, 비효율적인 재정사업 삭감방안, 정부조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

□ FY2012 예산편성 지침 주요 내용

○ 비안보 기관의 FY2012 예산요구액은 각 기관의 FY2011 예산안 총재량지출에서 5%를

삭감하여 제출

○ 각 연방기관은 FY2011 예산안 수준 이하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재정사업 종료, 비용 절감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최소 5개를 선정하여 예산요구서에 포함시켜야 함

○ FY2011 예산안과 비교하여 비용이 증가된 항목은 사업의 성과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

○ IT 투자를 통한 정부 효율성 제고 및 연방정부 조달 정책 개선방안 포함을 제시

나. 추경

□ (FY2010 추경) '7.29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및 국내 재정수요 등에 배정하기 위한 추경 발효

○ 지난 3월말 하원에서 통과된 FY2010 추경안은 5월 상원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7.1일 상원안에 대한 하원의 수정*이 있었으나 7.22일 상원은 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실패

* 하원안은 교직유지기금, 청년 일자리, 국경보안 등을 포함하여 주요 국내 사안에 228억달러를 추가하여 편성

○ 7.27일 하원이 상원의 5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FY2010 추경은 상원안대로 확정

– 추경규모는 총 588억달러로 재량지출 454억달러, 법정지출 134억달러로 편성

○ FY2010 추경의 주요 내용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군대에 371억달러 지원

–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재해복구 활동에 51억달러 지원

– 아이티 구호활동 지원에 29억달러 배정

다. 결산

□ '10.10월 FY2010 결산 발표 예정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 절차 수립 법안을 의회에 제출

□ 5.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 새롭고 신속한 방안을 수립하는 신속재원폐지 절차 수립 법안(Reduce Unnecessary Spending Act of 2010)을 의회에 제출

○ 신속재원폐지 절차하에서는 대통령이 지출법안 통과 직후 종합 지출폐지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이후 의회는 동 폐지제안을 일괄적으로 수정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가부투표(up-or-down vote) 방식으로 심의

□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신속재원폐지 권한은 재정사업의 낭비적인 요인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FY2010, FY2011 예산에 대해 약 200억 달러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조치를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동 법안에 대해 의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 난항이 예상

○ '98년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1974년 지출 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의 Part C 개별조항거부권(line-item veto)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 동 법안은 올 2월 발표된 FY2011 예산안에서 제시한 방안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행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

2)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 근절

□ 7.7일 OMB는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를 발표

○ '09.3월 오바마 대통령은 계약 관행의 개선을 통한 연방기관의 예산절감을 지시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FY2010에 수의계약이나 실비정산식 계약(cost-reimbursement contract)에 지출되는 비용의 10% 감소를 목표로 설정

- FY2010 2분기 동안 신규 수의계약에 지급된 지출액이 FY2009 동일 기간에 비해 10% 감소
- 단일 입찰업체가 참여하는 계약 역시 FY2009 동일기간 대비 2% 감소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정책이슈

1) 의회예산처(C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나 장기 재정전망은 불투명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일인당 의료비 지출의 빠른 증가는 미래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상승시킬 전망

○ 최근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주요 보건 · 의료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지출 전망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주요 법정 보건 ·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은 현재 GDP의 약 5%에서 FY2035에는 약 10%로 증가하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 지출은 현재 GDP의 5% 미만에서 FY2030에는 약 6%로 증가하며 이후 대략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CBO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낙관적 시나리오) 큰 폭의 세입증가와 주요 보건 ·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 이자지

출을 제외한 지출의 감소로 보건 ·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의 상승을 상당수 상쇄

*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GDP 대비): (FY2010) 62% → (FY2020) 66% → (FY2035) 79%

** 이자지출(GDP 대비): (FY2010) 1.4% → (FY2020) 3.1% → (FY2035) 3.9%

○ (비관적 시나리오) 세입증가 요인에 대한 제약과 복지지출의 상승요인 등을 상정하여 추정

*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GDP 대비): (FY2020) 87% → (FY2025) 109% → (FY2035) 185%

** 이자지출(GDP 대비): (FY2020) 3.8% → (FY2035) 8.7%

〈표 2-Ⅱ-2〉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FY2010	FY2020	FY2035
낙관적 시나리오			
재정수입	14.9	20.7	23.3
재정지출	24.3	23.5	27.6
기초재정수지	-8.0	0.3	-0.4
재정수지	-9.4	-2.7	-4.3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62	66	79
비관적 시나리오			
재정수입	14.9	19.3	19.3
재정지출	24.3	25.9	35.2
기초재정수지	-8.0	-2.9	-7.2
재정수지	-9.4	-6.6	-15.9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62	87	185

자료: The Long-Term Budget Outlook, CBO, 2010.6

2) 미 정부 포털(USA.gov) 모바일 앱스토어 개장

□ 미 연방정부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스토어를 미국 정부 포털(USA.gov) 사이트에 개장

○ 앱스토어에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스마트폰용 웹페이지도 소개되어 있음

○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제공되며, 현재 아이폰, 블랙베리, 안드로이드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운영체제에 따라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

○ 현재는 20개에 가까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추가 예정

○ 주요 애플리케이션

- 연방교통안전국(TSA)의 "My TSA"는 자주 문의되는 항공 정보(공항검색대 대기시간 포함) 등을 제공
- 환경보호청(EPA)의 "UV Index"는 자외선 지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 제공
- Recalls.gov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도로교통안전국(NHTSA), 식약청(FDA),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장난감, 식품 등에 대한 리콜정보를 제공

Ⅲ 일본 (FY2010: 2010.4~2011.3)

1. 세제개편

□ 2010년 3사분기 세제개편 없음

□ 세제전문가위원회의 "80년대 이후의 국내외 세제"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80년대 이후 주요 조세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진행되면서 연결납세 중심의 세금체계에서 소득 · 소비 · 자산 등의 균형 있는 세금체계로 변화함

○ 하지만, 최근 다음의 두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채무잔액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세금의 재분배 기능 역시 쇠퇴

– (세입측면) 소득세 등 거듭되는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

– (세출측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보장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세수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채발행이 아닌 국민분담이라는 세제개혁의 방향을 제시

○ 소득이나 자산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회복

○ 미래의 인구구조를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의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 재정동향 1호(p.129)의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을 보충

○ 소규모 택지 등 상속세 과세특례 법안은 비지속적 사업 및 거주 택지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 재산세의 경우, 정기적금 권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액이 실제 수령액과 괴리가 있어 세제개편을 검토

〈표 2-Ⅲ-1〉 2010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1호 보충)

구 분	주요 내용
개인소득세	- 비과세 계좌에서 소액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에 비과세 조치 - 생명보험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각 보험료 공제의 합계 적용 한도를 현행 10만엔에서 12만엔으로 인상
재산세	- 소규모 택지 등 상속세 과세특례 검토 - 정기적금에 관한 권리 평가 방법 등을 검토

자료: 재무성, 「平成- 22年度税制改正の大綱」

2. 예산, 결산, 추경

가. FY2010 예산안 (FY2010: 2010.4~2011.3)

□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에는 2011~2013년의 중장기 세출예산 안이 포함됨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2013년에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에 준하여 항구적 세출삭감을 실시,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규모(이를 「세출의 큰 범위」라 함, 71조엔)를 실질적으로 웃돌지 않도록 함

〈표 2-Ⅲ-2〉 2011~2013년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단위: 조엔)

	세출의 큰 범위		
	2011년 헤세이 23년	2012년 헤세이 24년	2013년 헤세이 25년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 (2010년 70.9조엔)	71	71	71
경제위기대응안 · 지역활성화예비비 (2010년 1.0조엔)	1.0	1.0	1.0

자료: 재무성, 財政運営戦略, 2010.6.22

○ 이 중, 2011년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 · 지역 활성화 예비비」 1조엔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경기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지방의 세출에 대해서도 국가 전반의 세출 기조와 맞추어, 지방재원 총액을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세출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올해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의 규모가 상기 「세출의 큰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다른 부문의 세출삭감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나. FY2010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FY2009 결산 (FY2009: 2009.4~2010.3)

□ 일본 정부가 6월 29일 발표한 결산개요에 따르면 FY2009년에 세입 잉여금과 세출 불용액에서 약 2.2조엔 가량의 흑자를 보였고 여기에 지방교부금의 재원증가분을 제외하면 세입 · 세출 결산상 순잉여금은 총 1.6조엔 수준

□ (세입결산) FY2009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약 452억엔 정도의 흑자를 예상

○ 이는 법인세 및 소비세의 수입에서 각각 1.2조엔, 4,300억엔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채권발행액은 당초 예산액을 넘어 약 1.5조엔의 적자를 보였지만 법인세 및 소비세의 수입에 근거한 조세 및 인지수입에서의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아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

□ (세출결산) FY2009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역시 약 2.2조엔 수준의 흑자를 보임

○ 정부의 FY2009년 사용금액이 당초 세출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 2.2조엔에 달하는 불용액이 생김

○ 세출의 불용액에서 부채비 비중이 약 37%(8천억엔)로 가장 컸으며, 예비비 비중도 약 9%(약 1,900억엔)로 높은 편에 속함

〈표 2-Ⅲ-3〉 FY2009 일반회계 결산

(단위: 억엔)

구분(세입)	세입 잉여금	구분(세출)	세출 불용액
조세 및 인지수입	18,720	세출 미사용 금액	21,522
법인세	11,214	부채비	8,066
소비세	4,265	예비비	1,873
소득세	1,498	도시재생지역 재생정비사업비	792
		정액급부금 지급 사업조성비용	488
기타수입	△3,268		
일본은행 납부금	△3,206		
토지 매각금	△933		
반납금	1,057		
채권발행	△15,000		
건설채권	0		
특례채권	△15,000		
계	452		21,522
합계		22,004 (A)	
지방교부금 특정 재원 증가		5,757 (B)	
재정법 제6조의 순잉여금		(A − B) 16,246	

자료: 재무성, 平成21年度決算概要

□ 일본 정부는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기타특별회계 및 정부관계기관의 "분기별 예산사용 현황"을 발표

○ 예산사용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지 상황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작성한 월별 보고를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표 2-Ⅲ-4〉 FY2009 세입 · 세출 예산사용 현황

(단위: 억엔, %)

구분		세 입			세 출		
		세입 예산액	국가 수납액	예산 대비비율	금년 사용가능 금액	국가 지출액	예산 대비비율
1분기	일반회계	1,024,735	96,893	9.4	1,069,843	278,227	26.0
	특별회계	3,839,766	1,125,642	29.3	3,809,003	1,244,315	32.6
2분기	일반회계	1,024,735	239,275	23.3	1,069,843	214,179	20.0
	특별회계	3,839,766	793,251	20.6	3,809,211	844,446	22.1
3분기	일반회계	1,024,735	264,314	25.7	1,069,843	221,644	20.7
	특별회계	3,839,766	810,065	21.0	3,809,394	719,403	18.8
4분기	일반회계	1,025,581	300,535	29.3	1,070,689	257,978	24.0
	특별회계	3,816,732	1,009,110	26.4	3,785,664	640,806	16.9
합계	일반회계	1,025,581	901,057	87.8	1,070,689	972,030	90.7
	특별회계	3,816,732	3,738,070	97.9	3,785,664	3,448,971	91.1

자료: 재무성, 予算使用の状況 재정리

□ (세입결산) 일반회계 항목에서 2009년 세입예산액의 87.8%, 특별회계 항목에서는 예산액의 97.9%를 수납함

○ 일반회계의 국가 수납액은 90조엔으로 4분기 수납이 30조엔으로 가장 큼

○ 특별회계에서의 국가 수납액은 약 374조엔으로 예산액인 382조엔과 거의 일치

□ (세출결산) 일반회계에서는 사용가능금액의 90.7%를 사용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91.1%를 사용한 것으로 발표

○ 일반회계의 국가지출은 1분기에 약 28조엔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지출금액(97조엔)의 약 26%를 차지함

○ 특별회계의 국가지출액은 345조엔으로 제1분기 지출규모가 124조엔으로 가장 큰 규모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안

□ 간 나타오 총리는 6월 17일, 참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힘

○ 일본의 소비세는 현재 5%이며 이 가운데 1%포인트의 세수는 지방에 배분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나머지 4%포인트의 세수는 기초연금과 노인 의료, 노인 요양 등 3개 사회보장 분야에만 투입하도록 1999년 예산총칙에서 규정

– 일본은 소비세율을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이후 계속 이 수준을 고수하고 있음

○ 간 총리는 현재 소비세를 기초연금, 노인 의료, 노인 요양 등 3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10조엔 정도가 부족한데다, 사회보장비는 해마다 자연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소비세 역풍'을 맞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연내 소비세 인상안 비준을 포기한다고 밝힘

– 민주당은 작년 8 · 30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은 4년간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일본 국민들은 등을 돌림

□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타개를 위해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을 포함, 재정 전반에 걸쳐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 IMF는 현지 실사를 토대로 작성한 연례 일본경제 리뷰에서 일본이 심각한 공공부채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주축으로 한 여러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

○ 리뷰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 ~ 2012년 3월)를 시작으로 소비세율을 15%까지 높이면 GDP 대비 4~5%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더불어, 소비세 인상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함께 단행될 경우 내수경기 진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발표

○ 소비세율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발표

– 재정개혁 시행시, 개혁으로 인한 성장타격이 향후 3~5년 연평균 GDP의 0.33%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산

2)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전략'을 발표 (6월 22일)

□ 일본 정부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고 있는 재정운영전략을 발표

○ 현재 일본의 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크게 웃도는 상태가 지속되어, 과거 20년간 일본의 국채잔고는 약 470조엔 증가

– 일본은 버블 붕괴 후, 거듭되는 감세정책과 오랜 경기침체로 약 210조엔의 세수입이 줄었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짐

– 또한, 20년 동안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의 확대 및 고령화사회 진전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로 국채잔고가 크게 증가

– 이러한 채무누적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

○ 재정운영전략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중기 재정전략으로 구성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시켜, 2021년 이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목표 설정

○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화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등의 이유로 그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유의사항을 밝힘

○ 정부는 신성장전략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세출 증가 등 신중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수행해야 함

○ 재정운영은 항상 객관적인 경제분석 및 경제·재정 전망을 통해, 현재 및 중장기의 경제운영과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필요

○ 공적채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회계간의 자금이전, 적자증가 등 안이한 재정운영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

□ (재정건전화 목표) 내년부터 3년 동안 세출 및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설정

○ 수지(플로우) 목표

– 중앙·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는 2015년도까지 GDP 대비 적자폭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함

– 2021년도 이후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감

○ 잔고(스톡) 목표

– 2021년 이후, 국가·지방의 GDP 대비 장기채무 수준을 현 181%에서 안정적으로 감축시킴

○ 진척 상황의 공표 및 검증

– 현재 및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매년 예산 결정 후, 각종 최신 재정지표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진척 상황 등을 검증하여 공표

– 국내외 경제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또는 재정운영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의 달성 시기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기본원칙)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아래 다섯 가지로 정함

〈표 2-Ⅲ-5〉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 용
재원확보 원칙 (「PAYGO 원칙」)	-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의 도입시에는 소요되는 재정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원칙으로 함
재정적자 감축 원칙	- 위의 수지 목표를 위해 국채 발행액 감축, 기초재정수지 개선, 국채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조치 등을 통해 매년 재정상황이 개선되도록 예산 편성
구조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 연금, 의료 및 개호(노인들만을 위한 보험제도)의 급부 등 사회보장 경비와 같은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세입 · 세출 모두를 고려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세출 재검토의 원칙	-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의 필요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쓸데없는 세출을 철저히 배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자료: 국가전략실, 財政運営戦略

□ 중기 재정전략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

○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이념이나 경비의 성격에 유의하면서 중기 재정전략과 정합적인 개산요구 범위를 각 각료별로 설정

○ 또한, 각 각료는 신성장 전략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근거로 해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도록 예산을 편성

○ 요구 후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각 각료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다시 검토하여 세출삭감에 임하는 것으로 함

□ 중기 재정전략의 개정방법

○ 2011년 하반기 무렵, 당면한 경제전망이나 중장기 경제 ·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략 개정을 실시하여 2012~2014년(헤세이 24~26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중기 재정전략을 설정함

○ 이후 매년 중반기 무렵, 다음 연도 이후 3년간의 새로운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할 예정

○ 매년 책정한 중기 재정전략에 따라 다음 연도의 개산요구 및 예산편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중기 재정운영방침)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 및 사회보장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중기 재정전략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세입 · 세출 모두에 걸친 세 가지 운영방침을 제시

○ 국채 발행액 억제

–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의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0년 예산수준인 약 44조엔을 웃돌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부채 감축을 위해 그 이후의 신규 국채 발행액도 억제할 계획

○ 세입면에서의 운영방침

–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할 것임

– 조세특별조치는 2010년 세제개정의 방침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임

–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새로운 세제상의 조치는 거기에 알맞은 새 재원을 확보하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출면에서의 운영방침

– 2. 가. FY2010 예산안 참고

□ 이 외에도 고령화의 진전으로 증대될 재원부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재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정운영전략에서 엿볼 수 있음

○ 신정권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국민의 부담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입장

○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경제성장과 연결하는 방안과 제도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발행이 아닌 다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 더불어, 국민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국민에게 과다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2020년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구조비전 2010」 발표 (6월3일)

□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경제와 산업 재생을 위한 성장전략인 '산업구조비전' 발표

○ 사회기반시설(SOC) 수출, 문화산업, 의료 · 노인복지 · 자녀서비스, 환경 · 에너지, 로봇 등 5개의 성장전략 산업에서 9개의 전략으로 구성

○ 향후 10년간, 150조엔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25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5개 신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 40%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5~30%까지 끌어내린다는 내용을 포함

〈표 2-Ⅲ-6〉 다섯 가지 전략분야에서의 경제적 효과

(단위: 조엔, 만명)

	2020년		2007년 증감	
	생산액	고용	생산액	고용
5개 전략분야	약 179.3	865.81	+83.2	+257.9
1. 인프라 및 시스템 수출 (원자력, 물, 철도 등)	약 13.4 (해외분 포함 +19.7)	약 28.5	+12.3 (해외분 포함 +18.2)	+18.7
2. 환경 · 에너지 문제 해결 산업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자동차 등)	약 30.6	약 66.1	+23.7	+36.2
3. 의료 · 간호 · 건강 · 육아 서비스	약 30.5	약 325.2	+12.9	+113.4
4. 문화산업 강국 (패션, 콘텐츠, 음식, 관광 등)	약 56.6	약 326.1	+6.9	+26.4
5. 첨단 분야 (로봇 · 우주 등)	약 48.2	약 119.9	+27.4	+63.2
상기의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 효과			+65.8	
	합계		+149.0	+257.9

주: 상기의 생산액(시장 규모)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국내 또는 해외의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금액
자료: 경제산업성, 産業構造ビジョン, 2010. 6

□ (목표) 정부 · 민간에 걸쳐 이루어질 4개의 변화를 통해, 다섯 분야에서 향후 150조엔 이상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

○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잠재적 가능성을 비즈니스로 연결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 구축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지원

○ 적극적인 세계화와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 강화로 고용 창출

○ 국가간의 부가가치 획득 경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로의 전환

□ 산업구조비전 2010의 9가지 주요 정책에서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표 2-Ⅲ-7〉 산업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정책	내 용
1. 아시아 거점화를 위한 종합전략	– 해외 고부가가치 사업 유치를 위한 유인 제공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양성 – 교통 · 물류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확충
2. 국제적인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 국제수준(25~30%)을 목표로 법인실효세율을 인하 – 각국 동향에 입각한 연구개발 투자에 지원 강화
3. 수익 창출 역량 강화, 산업 구조조정, 변화의 활성화	– 경쟁 정책(기업 합병 심사의 투명성 확보, 중장기 · 글로벌 시장에 친화적인 기업결합 심사 변화) – 고용인력 관계(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 기업 관련 법률 제정(M&A 등 구조조정 절차 간소화, 주식매입청구권 남용 방지) – 금융(산업 혁신기구의 활용, 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지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외부임원, 독립이사의 도입 등) – 기업회생 지원(리스크 머니 공급, 경영 지원과 일직선상의 투자 확대, 글로벌 벤처 인재 육성, 바이오 벤처 지원 등)
4. 부가가치 획득에 이바지 국제 전략	– 국제 표준화(10대 전략 분야의 특정 아시아의 인증 능력 향상 지원) – 유통전략 (① 아시아 경제와의 통합 강화, ② 아시아의 내수 창조, ③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 – CO_2 관련 새로운 메커니즘(저탄소 기술의 해외 공헌을 반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발견)
5. 제조현장의 강화 유지	– 국내투자지원(저탄소 형식 고용창출 산업 입지 추진 사업 등) – 현장인재 육성(OB 인력 등을 활용한 “지역 제조 기술 전승자 양성 학원”을 설립. 산학 연계에 의한 혁신 창출 프로그램)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준비, 진출, 계약체결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 – 기업 이상의 성능 측정 및 평가 거점화(전지, 로봇, 기능성 화학, 첨단 나노 측정 등) – 기업 및 산업 집적적 발전(공장 · 아파트 건설지원. 경계 부처를 초월한 광역적인 산업 집적 지원) – 중소기업의 인수 및 사업 통합 지원

〈표 2-Ⅲ-7〉의 계속

정책	내 용
6.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개발의 추진	–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 활용(GDP 대비 1%를 목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와 보급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중점화) – 산학관이 결집한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 구축 – 연구개발 성과의 해외 실증 보급(민관협력에 의한 해외기술 시연 실시) – 다양한 기술 · 인적자원의 확보 – 특허 제도의 검토 및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재권 활용 지원
7. 산업전반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IT	– 클라우드 컴퓨팅의 추진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표준화 및 검증의 고도화
8. 산업구조 전환에 맞는 인재 능력 향상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육성 –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이동 촉진 – 현장인재 육성 – 노인의 "세컨드 라이프"의 지원 – 정규 · 비정규직의 중간형태 검토 – "일본의 직업능력평가제도(NVQ)" 도입
9. 성장을 창출하는 산업금융 기업회계	– 리스크 머니 공급주체의 다양화(해외투자, 공적연금, 우정기금, 중소기구, 산업혁신기구, 개인금융 자산의 활용) –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중개기능 향상(전문 사채시장 창설 등) –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를 위한 정책금융 –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회계 디자인

2) 2020년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신성장 전략」 발표(6월 18일)

□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종결을 당면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

○ 일본 경제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과 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불필요한 규제 · 제도로 인해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환경 · 에너지 분야, 고용 · 인재 분야, 금융 등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여 일본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궤도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

○ 고령자, 여성, 젊은이 등의 취업, 기업이 운용하기 쉬운 환경 구축, 인적자본의 형성, 이노베이션(innovation) 촉진 등을 정책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식

○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종결을 거시경제 운영상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수요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

□ (주요 내용) 신성장전략을 통해 환경, 의료,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법인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을 활성화시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대 실질 성장(명목 성장 3%대)을 달성하겠다고 밝힘

○ 하토야마 총리는 경제정책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지난해 12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침으로 신성장전략을 발표

○ 이번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은 이전 발표된 전략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7개의 전략에서 21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

〈표 2-Ⅲ-8〉 새로운 수요와 고용창출 목표

분야	수요창출	고용창출
환경	50조엔	140만명
건강	50조엔	284만명
아시아	12조엔	19만명
관광	11조엔	56만명

자료: 경제산업성, 新成長戦略「元気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6

□ 현재 상황 및 2020년 목표

○ 일본은 과거 10년간 실질 성장률 1%의 성장부진 현상 →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 달성

○ 20년간의 디플레이션 추세가 지속(최근 2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0%) → 2011년에는 안정적인 물가상승 실현

○ 5%의 실업률 → 3%대의 실업률

□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표 2-Ⅲ-9〉 7대 전략 및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7대 전략분야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1.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 · 에너지대국)	– "조정가격매입제도" 도입 – 환경미래도시 – 산림임업 재생 계획
2. 생활혁신	– 의료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선정제도 – 국제의료 교류(외국인 환자 유치)
3. 아시아	– 패키지 형식의 인프라 해외 진출 – 법인실효세율 인하와 아시아 거점화 – 글로벌 인재 육성과 고급인력 유치 – 지적재산권 표준화 전략 – 아시아 · 태평양 자유무역지역(FTAAP) 구축
4. 관광 · 지역 활성화	– 종합특구제도 – 방일 외국인 3,000만명 프로젝트, 휴가취득 분산화 – 중고주택 리폼시장 두 배로 확산 – 공공시설의 민간 개방 및 민간자금 활용사업
5. 과학기술 · 정보통신	– 선도대학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 정보통신 기술의 이윤과 활용의 측정 – R&D 투자 활성화
6. 고용 · 인재양성	– 유치원과 보육원 일체화 – "경력기간"제도 개인지원제도 – 새로운 공공 구축
7. 금융	– 종합거래소 창설 추진

자료: 경제산업성, 新成長戦略「元気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6

다. 기타 정책이슈

□ 일본 재정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 증가

○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일본의 2009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7.6%로 재정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는 PIIGS국가들의 58~12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

○ 국가채무가 GDP의 2배 이상임에도 단기적으로는 자국민 중심의 국채보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및 저금리 등의 이유로 재정위기가 표면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일본은 2009년에 국가채무의 93.8%를 자국민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보험, 연금기금 등 일본 금융기관의 보유율이 66.9%임

- 일본의 '08년, '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각각 3.2%, 2.8%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비율 또한, 약 3% 내외의 흑자를 보임
- 일본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은 낮음(국가채무가 늘어났음에도 지급하는 이자는 감소)

○ 하지만 고령화 등 재정부담이 증가할 경우, 일본의 재정위기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존재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계속되는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증가
-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일본 재정의 버팀목이던 가계저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90년대 초 15% → '08년 2%대로 하락)
- 이는 금융기관의 국채매입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금리인상 압박으로 연결되어 앞으로 국채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

□ 지난 6월 29일, 국가전략실에서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

○ (도입의 필요성) 현재 일본의 연금제도는 제조업의 정규직, 농림・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과거 전형적인 직업만을 염두하고 만들어졌기에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한 현 시점에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

- 또한, 국민연금 미납 및 미가입 문제는 노후에 낮은 수준의 연금 혹은 연금 없는 은퇴로 이어질 우려

○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표 2-Ⅲ-10〉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원칙	내 용
1. 연금 일원화의 원칙	- 전 국민이 동일한 하나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기
2. 최저 보장의 원칙	- 최소 연금을 보장
3. 부담과 급부의 명확화 원칙	- 부담과 급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함
4. 지속 가능의 원칙	- 향후 누구에게나 부담이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5. 확실한 연금기록의 원칙	- 연금기록의 확실한 관리 및 가입자 본인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6. 제로 미납자의 원칙	- 연금 보험료 확실히 징수하여 무단 연금 수령자를 없앰
7. 국민적 토론의 원칙	- 국민적인 면담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

자료: 국가전략실, 新たな年金制度の基本的考え方について(中間まとめ), 2010.6

□ 2010년 7월에 시행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여 일본 경제개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증가

○ 7·11 시행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

○ 앞으로 야당이 참의원에서 제지를 하면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짐

- 아사히 신문은 "여소야대로 참의원 운영이 어려워져 민주당 정권은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고 보도
- 마이니치 신문은 "민주당의 패배로 자민당을 포함한 야권이 참의원의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식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이 같은 정국 변화는 집권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은 물론 환율·채권 등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세율 인상·재정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 증가
- 엔화 약세·금리 인상 가능성
- S&P는 선거결과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힘

Ⅳ 영국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 재정법 2010 (Finance Act 2010 c.13) 승인(2010. 4. 8)

○ 일반전화세(landline duty) 신설 규정 제외 등 법안 내용 일부 수정

□ 재정법안 2010 의회 제출(2010. 6. 28)

○ 긴급예산안(June Budget)의 주요 조세정책을 입안

– 이번 재정법안 이외의 개편내용은 가을까지 추가 법안 마련

○ 세율 인하 조치

– FY2011-12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 인하

– 고소득자 연금공제 제한 폐지, 재정법 2010 해당규정 철회

○ 세율 인상안

–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세율 인상(6월 23일 이후 발효)

: 37,400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10%p 인상한 28% 세율 적용

: 개인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소득자는 현행 18%를 적용

: 기업가공제(Entrepreneurs' relief) 적용대상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 VAT를 2011년 1월 4일부터 현행 17.5%에서 20%로 인상

– 보험료세(Insurance Premium Tax) 인상

: 2011년 1월 4일부터 표준세율(standard rate)을 5%에서 6%로 인상, 고세율(higher rate)은 17.5%에서 20%로 인상

2. 예산 및 결산

가. FY2010-11 예산

1)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2010 의회 제출(2010. 6. 21)

□ FY2010-11 본세출예산안은 순자원요구액 총 4,951억파운드, 순현금소요액 총 4,648억 파운드로 편성

○ 이 중 순자원요구액 4,947억파운드, 순현금소요액 4,645억파운드 의결 요청

○ FY2009-10 잠정치에 비해 순자원요구액은 117억파운드 증가, 순현금소요액은 387억 파운드 감소

○ 5월 24일 발표한 62억파운드 지출삭감을 반영하여 계획

2) 긴급예산안(June Budget) 2010 발표(2010. 6. 22)

* 6월 28일 하원 예산안 심의(Budget debate) 종료

□ 긴급예산안 발표에 앞서 Pre-Budget forecast 발표(OBR*, 2010. 6. 14)

*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공공재정 및 경제전망과 재정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공공부문 재정수지, 노령, 공공서비스연금, 민자유치 등에 대한 분석 포함). 5월 11일 연정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5월 17일 설립됨. 현재까지 긴급예산안을 위한 사전 예산전망(pre-Budget forecast), 긴급예산안 경제 · 재정전망 수행

○ 연립정부 정책효과는 배제하고 이전 노동당 정부 정책효과를 포함한 전망치 제시

〈표 2-Ⅳ-1〉 예산안 2010 정책효과만 포함한 경제 · 재정전망

(단위: GDP %)

	FY2008-09	FY2009-10	전 망				
		추정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공공부문 순차입	6.7	11.1	10.5	8.3	6.6	5.0	3.9
경기조정 순차입	6.4	8.8	8.0	6.1	4.7	3.5	2.8
공공부문 순부채	44.0	53.5	62.2	68.2	71.8	73.7	74.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실질 GDP 성장률	0.5	-4.9	1.3	2.6	2.8	2.8	2.6

자료: OBR, Pre-Budget forecast, June 2010

○ OBR는 전망의 불확실성을 강조

- 2011년 GDP 성장률이 1.5~3.25%일 확률 약 40%
- FY2014-15에 공공부문 순차입이 GDP 4% 이하로 감소할 확률 50%

□ 긴급예산안은 3월 예산안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과 적자감소 전망

○ GDP 성장은 2010년(1.2%)부터 증가하여 2013년 2.9%, 2014~15년 2.7%로 전망

- 지난 3월 예산안에서는 GDP 성장률을 2011년부터 3% 이상으로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09-10 GDP의 11.0%에서 FY2015-16에 1.1%까지 감소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는 FY2013-14에 GDP의 70.3%까지 증가하였다가 FY2015-16 67.4%로 감소 예측

〈표 2-Ⅳ-2〉 예산안 2010과 긴급예산안 재정전망

(단위: GDP %)

		FY 2008-09	FY 2009-10 추정	전 망					
				FY 2010-11	FY 2011-12	FY 2012-13	FY 2013-14	FY 2014-15	FY 2015-16
경상 재정수지	Budget 2010	-3.4	-8.3	-8.4	-6.6	-5.2	-3.9	-2.8	
	June Budget	-3.5	-7.5	-7.5	-5.7	-4.0	-2.3	-0.9	0.0
	증감	-0.1	0.8	0.9	0.9	1.2	1.6	1.9	
순차입	Budget 2010	6.7	11.8	11.1	8.5	6.8	5.2	4.0	
	June Budget	6.7	11.0	10.1	7.5	5.5	3.5	2.1	1.1
	증감	0.0	-0.8	-1.0	-1.0	-1.3	-1.7	-1.9	
순부채	Budget 2010	43.8	54.1	63.6	69.5	73.0	74.5	74.9	
	June Budget	44.0	53.5	61.9	67.2	69.8	70.3	69.4	67.4
	증감	0.2	-0.6	-1.7	-2.3	-3.2	-4.2	-5.5	
일반정부 기준 순차입	Budget 2010	6.7	12.2	11.2	8.6	6.9	5.3	4.2	
	June Budget	6.8	11.3	10.1	7.6	5.6	3.6	2.2	1.2
	증감	0.1	-0.9	-1.1	-1.0	-1.3	-1.7	-2.0	
일반정부 기준 순부채	Budget 2010	55.5	71.4	80.5	86.0	88.7	89.2	88.7	
	June Budget	55.8	71.2	78.9	83.6	85.5	84.9	83.1	80.4
	증감	0.3	-0.2	-1.6	-2.4	-3.2	-4.3	-5.6	

자료: HM Treasury(2010), June Budget

□ (긴급예산안 기조)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포괄적인 5개년 재정계획 수립

○ FY2014-15에 4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Responsibility)

- FY2011-12에 지출삭감 150억파운드, 세금인상 62억파운드, FY2014-15에 지출삭감 320억파운드, 세금인상 80억파운드 확보 계획
- 지출감축 일환으로 11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개혁 시행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
  : 2011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의 급여인상 물가연동 기

준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전환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상에 대해 2년간 임금 동결

○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Freedom)

–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FY2011-12부터 4년간 매년 1%씩 인하

: 소규모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FY2011-12부터 20%로 인하(현행 21%)

– 기업금융보증 규모 확대와 새로운 성장자본기금 창출

: 2011.3.31까지 소규모기업 대출 7억파운드 추가 지원

– FY2011-12부터 1%p 인상되는 국민보험기여금(NICs)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주의 NICs 부담 면제 기준 소득 인상

: 기준 주(weekly) 소득의 물가연동 부분을 초과하여 주 21파운드 상향조정

○ 취약계층 보호 등 공정성 확보(Fairness)

– 2011년 4월, 기본세율 납세자들의 65세 이하 개인인적공제 한도를 1,000파운드 인상

– 고세율 납세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인상(10%p)하고, 기업가공제 총한도를 현행 20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확대

– 은행의 저위험투자 자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2011. 1. 1부터 은행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과세하는 은행세(Bank levy) 도입

– 자녀세액공제 인상의 재원확충을 위해 3년간 자녀수당(Child Benefit) 동결

– 2011년 4월부터 국가기초연금은 소득, 가격, 2.5% 중 최대치에 연동

□ 62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긴축안(savings package)을 포함, 지출규모 축소와 세입규모 확대

○ FY2010-11 총세입은 약 5,477억파운드(GDP의 37.2%)로 3월 예산안보다 약 70억파운드 증가

○ FY2010-11 총관리지출은 3월 예산안보다 약 72억파운드 감소한 6,968억파운드

– 이 중 부처별 지출한도는 약 134억파운드 감소, 연간관리지출은 약 62억파운드 증가

〈표 2-Ⅳ-3〉 긴급예산안 세입 · 세출 전망

(단위: 10억파운드)

	FY2008-09	FY2009-10 추정	전 망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FY2015-16
경상세입	533.8	514.6	547.7	584.2	621.9	661.9	700.1	737.0
(GDP %)	37.2	36.6	37.2	38.0	38.4	38.7	38.8	38.7
총관리지출	629.8	669.3	696.8	699.8	711.0	722.0	737.5	757.5
(GDP %)	43.9	47.5	47.3	45.5	43.9	42.2	40.9	39.8
부처별지출한도	350.4	378.0	380.0	370.2	366.7	363.8	362.0	366.5
연간관리지출	279.5	291.2	316.8	329.6	344.4	358.1	375.6	391.0

자료: HM Treasury(2010), June Budget

○ 3월 예산안 이후, 긴급예산안의 정책결정으로 FY2010-11에 약 8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 확보

– 세입 증대 효과의 대부분이 VAT 인상으로 FY2010-11 28억파운드, FY2011-12 이후는 120억파운드 이상 확보 전망

〈표 2-Ⅳ-4〉

(단위: 백만파운드)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총조세정책 효과	+2,830	+6,255	+6,950	+8,515	+8,230
지출정책 효과					
경상지출 증감	+3,465	+6,835	+15,230	+21,700	+29,780
자본지출 증감	+1,780	+2,020	+2,070	+2,120	+2,160
총지출정책	+5,245	+8,855	+17,300	+23,820	+31,940
특정복지정책	+385	+2,010	+4,710	+8,150	+11,040
총정책결정	+8,075	+15,110	+24,250	+32,335	+40,170

자료: HM Treasury(2010), June Budget

3) Spending Review(SR) framework 의회 제출(2010. 6. 8)

□ FY2011-12에서 FY2014-15까지 4년간의 부처별 지출 설정

○ 2010. 10. 20 SR 2010 발표 예정

□ SR 범위

○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사회보장,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 등 주요 연간관리지출(AME) 포함

[그림 2-Ⅳ-1] SR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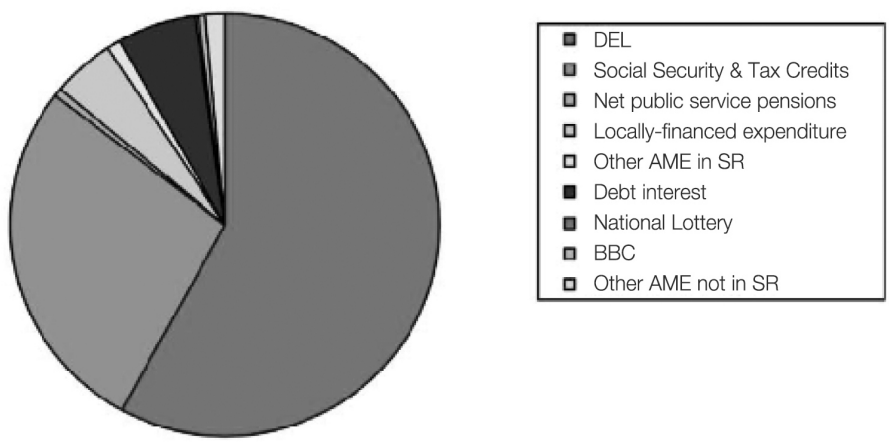

자료: HM Treasury(2010), The Spending Review framework

나. 추경

□ 6월 추경은 편성하지 않았음

○ 본세출예산안 일정이 늦어지면서 편성 필요가 약해짐

○ 2000년 이후 6월 추경이 발표된 회계연도는 FY2001-02, FY2008-09 두 차례에 불과

다. 결산

□ FY2009-10 결산보고서는 Pre-budget 2010(통상 11월)과 함께 발표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연정협약서'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내용(2010. 5. 11)

○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회복 공고화 지속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공유하고 아래 사항을 합의

– 의회 절차를 거쳐 구조적 적자에 대한 감축 가속화, 세금 인상보다 지출삭감을 통한 적자감축

– 공공부문 임금 및 기타 지출억제 예산으로 취약계층 보호

– 노동당이 제안한 jobs tax(ex. 사회보장기여금) 중단

○ 50일 이내 긴급예산안을 마련(6.22 발표)하고 예산관련 전망은 독립적인 예산책임청(OBR)을 설립하여 수행

○ FY2010-11 비일선 서비스 예산 60억파운드 삭감

– 예산삭감분 중 일부는 일자리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및 녹색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프로그램, 에너지효율투자를 위한 green deal 등

○ 아동신탁기금(CTF)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각료 · 고위공무원 임금삭감 발표

○ 각료 보수삭감 발표 (2010. 5. 13)

– 전 정권의 보수보다 5% 삭감, 의회 임기 동안 보수동결 유지

– 올해만 약 30만파운드, 의회 임기중 총 300만파운드의 지출절감 예상

○ 고위공무원 및 NHS 경영자 보너스 삭감(2010. 5. 16)

– 고위공무원 보수관련 FY2010-11 예산을 약 1,500만파운드 삭감

– 성과평가 상위 25%에게 지급되던 보너스를 예외적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발표(2010. 5. 24)

○ 약 62억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하고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장

– 학교, Sure Start, 16~19세 대상 교육지출은 지출삭감에서 제외

– 62억파운드 중 5억파운드는 직업기술교육, 공공주택 등에 재투자 가능

○ 삭감규모 및 대상

– 17억파운드 : 정부조달사업 계획 조정 등 계약의 연기 및 중단

– 11억 5천만파운드 : 정부 컨설팅 및 홍보 비용

– 6억파운드 : 독립 공공기관 비용

– 1억 7천만파운드 : 부동산 비용 삭감

– 1억 2천만파운드 :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

– 9,500만파운드 : IT 지출 삭감

– 5억 2천만파운드 : 기타 후순위 지출

– 추가로 지방교부금 11억 6,500만파운드 절감

〈표 2-Ⅳ-5〉 부처별 삭감규모

(단위: 백만파운드)

부 처	FY2010-11 삭감예산
Education	670
Transport	683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780
CLG Local Government	405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836
Home Office	367
Ministry of Justice	325
Law Officers' Departments	18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55
Energy and Climate Change	85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62
Culture Media and Sport	88
Work and Pensions	535
Chancellor's Departments	451[1)]
Cabinet Office	79
Devolved Administrations	704
합계	6,243

주: 1)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예산삭감 3억 2천만파운드 포함

자료: HM Treasury, Press notice 2010. 5. 24

□ 저효율 사업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2010. 6. 17)

○ VfM(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

– 약 20억파운드의 12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약 85억파운드 규모의 12개 사업은 보류됨

– 20억 파운드 중 약 3억 7천만파운드는 5월 발표한 62억 긴축안에 포함

〈표 2-Ⅳ-6〉 취소 사업

(단위: 백만파운드)

부 처	사 업	총사업비용
Culture Media and Sport	스톤헨지(Stonehenge) 안내센터	25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리더보드(Leader Boards)	16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쉐필드 포즈마스터즈(Sheffield Forgemasters)社	80
Work and Pensions	미래일자리기금 개시(Rollout)**	290
	6개월 채용보조금**	30
	FY2011-12까지 청년일자리보장 사업 연장	450
	2년 구직자 보장(Guarantee)	515
Health	Active Challenge Routes – Walk England	2
	카운티 스포츠 파트너십	6
	노스티스(North Tees)와 하틀풀(Hartlepool) 병원	450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기업성장 계획(Initiativel)**	50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오토쿰푸(Outukumpu)社	13
계		1,927
***62억 긴축안에 포함된 부분*		370

자료: HM Treasury, Press notice 2010. 6. 17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FY2010-11 지출 중 최소 10억파운드 삭감 계획

– 약 90억파운드의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월분(End Year Flexibility) 또는 예비비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밖에 없음

– 각 부처와 총 15억 4천만파운드 삭감 합의(2010. 7. 5)

: 교육부 10억파운드, 기업 · 혁신 · 기술부 2억 6,500만파운드, 지역사회부 2억 2,000만파운드, 내무부 5,500만파운드 삭감 합의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연립정부 출범 이후 별도의 경기부양 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음

○ 긴급예산안의 초점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정적자 감축임

○ 다만, 긴급예산안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하여 저탄소 성장,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의 포괄적 정책기조 제시

– 2010년 가을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

다. 기타 정책이슈

□ 긴급예산안 조세회피방지 정책 발표(2010. 6. 22)

○ 연정 협약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긴급예산안에서 아래 사항을 발표

– 인지세 감면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정책의 추가보완 검토 등 3월 예산안의 조세방지대책 일부를 수용

– 대출 및 파생 계약의 승인취소(derecognition)에 대한 규칙 확대 적용

– Authorised Investment Funds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등

□ 은행세(Bank Levy) 법안 마련을 위한 자문보고서 착수(2010. 7. 13)

○ 적용세율을 2011년 0.4%, 2012년부터 0.7%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

○ 최종안은 2010년 가을 발표, 2010년 말에 발표할 재정법안 2011을 통해 입법화 추진

□ OTS(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설치(2010. 7. 20)

○ 조세감면과 소규모기업 조세간소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 가을 검토결과보고서 발간

Ⅴ 독일 (FY2010: 2010.1~2010.12)

1. 세제개편

□ 독일 정부는 2010년 말까지 EU 차원의 합의 불가시 은행세를 독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

○ 부과세율은 연간수익의 약 5~15%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연간 약 10억유로의 세수입 확대가 기대

○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은행세 입법을 추진할 방침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독일 정부는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2011년도 긴축예산안을 승인(2010년 7월 7일)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지출규모는 2010년 3,195억유로에서 3,074억유로로 3.8% 축소

○ 정부는 2012년에는 지출을 3,010억유로까지 줄인 뒤 2014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1년 -3.8%에서 2012년 -2.1%, 2014년 -0.1%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할 계획

〈표 2-Ⅴ-1〉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 2010~2014

(단위: 십억유로)

	2009	2010 (기존)	2010 (신규)	2011 예산안	Financial plan		
					2012	2013	2014
기존 재정지출 계획				326.0	329.4	332.0	(332.0)
재정지출	292.3	319.5	–	307.4	301.0	301.5	301.1
전년 대비 증가율(%)				–3.8%	–2.1%	+0.2%	–0.1%
2010~2014년 연간변동률							–1.5%
조세수입	227.8	211.9	–	221.8	232.8	241.8	250.3
세외수입	30.2	27.4	–	28.1	28.1	28.1	26.7
신규차입	34.1	80.2	65.2	57.5	40.1	31.6	24.1
재정적자 (GDP 대비 %)		66.6 (2.8%)	53.2 (2.2%)	45.8 (1.9%)	39.0 (1.6%)	32.1 (1.3%)	25.1 (1.0%)

자료: 독일 재무부 (2010)

□ 신규차입의 경우 2010년 652억유로에서 2011년 575억유로로 줄이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41억유로로 감소할 방침

○ 독일 정부는 올해 신규차입을 당초 802억유로로 잡았으나 고용시장 안정으로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망치를 하향 조정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0년 2.2%에서 매년 약 0.3%씩 축소시켜 2014년 1% 수준으로 점차 낮춰갈 계획

□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재정적자를 줄이되 성장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

○ 경제성장을 위하여 교육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7.2% 증가한 116억유로로 유일하게 증액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독일 정부는 2016년까지 800억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발표(2010년 6월 7일)

○ 독일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4개년에 걸친 긴축재정안을 승인

○ 긴축안은 2011~2014년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재정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1년 112억유로 감축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 사회보장 분야의 예산 감축안은 4년간 총 295억유로로 가장 큰 규모의 감축을 단행

○ 생활보호대상자(Hartz IV) 관련 연금보험의 국가지원 삭감

– 생활보호대상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연금보험이 삭감됨에 따라 매년 약 20억유로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

–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폐지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장기실업수당 혜택 축소

–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

–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

○ 반면, 의료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공공 의료보험사에 대해서는 20억유로의 추가 지원 결정

□ 공공부문에서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단 및 축소하고 인력감축과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5억 5,000만유로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왕궁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을 2014년으로

연기

○ 공무원 1만 5,000명 정원감축 및 '11년 연말보너스 동결

– 정부는 공무원 정원감축 및 월급 2.5% 인하를 통해 매년 40억유로를 절감할 예정

○ 2014년까지 내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처의 불필요한 관료직을 10,000~15,000개 축소할 계획

○ 9월 초까지 현재 25만명의 연방군(Bundeswehr)중 4만명을 축소할 예정이며 군대의 무는 계획된 바대로 6개월로 단축

□ 산업부문에서는 원전 및 항공세 신설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

○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세금을 인상할 계획임

– 2011년부터 핵발전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는 매년 23억유로를 내야함

○ 독일 국내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2011년부터 독일 내 공항을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 비행기의 소음도, 연료사용도 등에 따라 항공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10억유로의 세원확보 예상

○ 에너지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중단으로 인해 '11년 10억유로 규모의 지원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며, '12년 이후 약 15억유로의 관련 예산이 축소될 예정

□ 금융부문에서는 토빈세를 신설하고 기타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 독일 정부에 의해 이미 승인된 은행세에 더해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토빈세' 형태의 세제 도입 검토

○ 독일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 부과를 고려

□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긴축정책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

○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히며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역설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09년 하반기에 경제확장 기조가 다소 주춤하다 '10년 상반기부터 다시 견고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음

○ '10년 2분기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0.2%를 기록

○ 2분기 경제성장은 산업생산 확대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독일 경제는 외부적 경제요인과 내부적인 투자활동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음

○ 산업자본재에 대한 해외수요가 견조하여 산업생산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경제회복은 노동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확대 유도

□ 하지만 현재의 경기회복은 경기부양에 의한 효과가 크며 몇몇 주변국들은 과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유로존에 상존하고 있는 부채위기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다. 기타 정책이슈

□ 독일 집권 연정의 크리스티안 볼프(51) 후보가 독일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2010년 6월 30일)

○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의 집권 연정이 내세운 볼프 후보는 대통령 간접선출기구인 연방총회의 3차 투표에서 623표를 얻어 494표를 얻은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요아힘 가우크(70)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

○ 그러나 하원의원과 동수의 16개 주의회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총회에서 집권 연정이 확보한 대의원 수가 과반수를 훨씬 넘긴 644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투표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메르켈 총리와의 연정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독일 정부, EU 구제금융 관련 약 1,440억유로 부담 예정

○ EU 재무장관들은 유로화를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7,500억유로 규모의 EU 구제금융 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 Willhelm 독일 정부 대변인은 구제금융이 필요한 회원국이 구제금융 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EU가 조성해야 하는 4,400억유로 가운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몫을 정산할 경우 독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약 1,440억유로(약 33%)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독일이 주변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재정긴축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동시에 고려되었기 때문

○ 독일 주변국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 독일은 주변국들의 부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국수주의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유로화를 탈퇴하더라도 독일 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임

○ 독일의 재정긴축은 자국 내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 주변국들에 대한 재정긴축 강요는 유로화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수출지향적인 독일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음

Ⅵ 캐나다 (FY2010-11: 2010.4~2011.3)

1. 세제개편

□ 2010년 7월 1일부터 Ontario주와 British Columbia주에서 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20]를 시행, 이로 인해 HST는 13개의 주정부 및 자치구 중 총 5개 주정부로 확대(2010년 6월 30일)

○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부과되는 세율 5%와 기존 Ontario주와 British Columbia주에서 주정부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로 각각 8%와 7%를 부과했던 것을 통합, 통합판매세를 적용하여 13%와 12%를 두개의 주에 각각 징수한 후 연방정부는 PST에 해당하는 몫을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등 3개 주는 1997년에 이미 PST와 GST를 단일화한 HST를 적용했으며, 올 7월부터 Nova Scotia는 HST를 15%로 인상

○ HST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세율구조의 간편화,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 등

- Ontario주와 British Columbia주는 앞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 및 자본투자 확대가 예상됨

20) Harmonized Sales Tax(HST)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화 및 용역세(GST)와 주정부 판매세(PST)를 통합한 세율. GST 세율은 5%로 동일하며, PST는 주정부별로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HST 도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2.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캐나다 FY2010-11 예산안은 2010년 3월 4일 발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2호 참조

□ 캐나다는 세계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GAFSP)을 통해 빈곤국에 올해 2.3억캐나다달러를 원조하며 장기적으로 농업발전, 개발국가 국민의 소득 향상 및 영양상태의 개선을 위해 노력(2010년 4월 22일)

○ GAFSP에 총 3년간 6억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원조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캐나다정부가 동일분야에 지출한 규모의 두 배 수준임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FY2009-10 예산안에 대한 공식 결산은 2010년 가을 발표될 예정

□ 지난 5월 재무부 월간보고서 "The Fiscal Monitor"에서 발표한 FY2009-10 재정적자는 470억캐나다달러로 이 중 190억달러는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의 집행에 따른 결과(2010년 5월 28일)

○ (총세입) 세입은 소득세 등 세수가 감소하면서 127억 캐나다달러(5.5%) 하락한 2,187억캐나다달러로 집계

– 고용둔화 현상 및 세제감면 정책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63억캐나다달러 하락(5.5%)

– 법인세는 환급이 증가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15억캐나다달러 하락(4.9%)

- 비거주자 소득세는 6억캐나다달러 하락(9.3%)
- 소비세는 5억캐나다달러 하락(1.4%) 등

○ (총지출) 프로그램지출은 전년 대비 336억캐나다달러(16.6%) 상승한 2,361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238억캐나다달러(17.6%) 증가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후 혜택, 아동보조금, 고용보험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74억캐나다달러(12%) 증가
- 정부부문간 이전지출은 48억캐나다달러(10.4%) 증가
- 기타 이전지출은 자동차산업 지원 등으로 총 116억캐나다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재정수지) FY2009-10 재정적자는 470억캐나다달러로 전년도 22억캐나다달러에서 크게 상승, 이 중 190억캐나다달러는 CEAP의 2차년도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면서 발생

○ (총부채) 2010년 3월말 기준 캐나다의 부채규모는 5,106억캐나다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9억캐나다달러 상승

〈표 2-Ⅵ-1〉 FY2009-10 캐나다정부 예산(Budgetary Transactions) 결산요약

(단위: 1억캐나다달러)

	2008-09	2009-10
총세입	2,313	2,186
총지출		
프로그램지출	2,025	2,361
공공부채비용	310	295
재정수지	-22	-470
총부채	4,637 (2009년 3월말)	5,106 (2010년 3월말)

자료: The Fiscal Monitor, 2010년 5월

〈표 2-Ⅶ-2〉 캐나다정부 총세입 결산요약

(단위: 1억캐나다달러)

	2008-09	2009-10	전년 대비 증감(%)
조세수입			
소득세			
개인소득세	1,145	1,081	-5.5
법인세	298	283	-4.9
기타소득세	61	55	-9.3
총소득세(A)	1,504	1,421	-5.5
소비세			
재화 및 용역세	251	251	-0.2
에너지세	51	51	0.4
관세	40	35	-14.5
기타소비세	48	49	1.3
총소비세(B)	392	387	-1.4
총조세수입(C=A+B)	1,896	1,808	-4.7
고용보험(D)	167	167	0.0
기타세입(E)	250	212	-15.1
총세입(F=C+D+E)	2,313	2,187	-5.5

자료: The Fiscsal Monitor, 2010년 5월

〈표 2-Ⅶ-3〉 캐나다정부 총지출 결산요약

(단위: 1억캐나다달러)

	2008-09	2009-10	전년 대비 증감(%)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21]	333	346	4.0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162	218	34.7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20	124	3.7
소계(A)	615	688	12.0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보건 및 사회보장프로그램(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228	248	9.1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	106	109	2.7
소계	333	357	7.1
재정이전(Fiscal transfers)	151	164	8.6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29	-27	-9.1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지원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9	19	92.8
소계(B)	464	513	10.4
기타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C)	269	385	43.0
총이전지출(D=A+B+C)	1,349	1,587	17.6
기타프로그램지출(Other program expenses) (E)	677	775	14.4
총프로그램지출(F=D+E)	2,026	2,361	16.6
공공부채비용(Public Debt Charges) (G)	309	295	-4.7
총지출(F+G)	2,335	2,656	13.7

자료: The Fiscal Monitor, 2010년 5월

21) 노후 혜택(Elderly Benefits)은 고령연금(Old Age Security)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포괄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의회예산관실(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은 캐나다의 장기 재정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FSR)를 올해 2월 발표, 앞으로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캐나다의 중·장기 경제 및 재정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룰 예정(2010년 2월 18일)

○ (경제전망)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 이에 따라 캐나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2.1%에서 2020년 1.3%로 하락할 전망이며 향후 50년간 1인당 실질GDP성장률은 평균 0.9%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재정전망) FY2013-14 재정적자는 GDP 대비 1%, 정부부채는 GDP 대비 34%, 총프로그램지출은 FY2013-14 GDP 대비 13.8%에서 FY2050-51 15.4%로 증가할 전망

○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진행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노후혜택 및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지출은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의 고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배우자수당(Spouse Allowance),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은 장기적으로 정부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과 아동관련 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Universal Child Care Benefits)은 지출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노후 혜택은 2013-14년 GDP대비 1%에서 2031-32년 3.3%로 증가할 예정

□ 최근 발표된 Canada's Global Economic Leadership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G7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됐으며 재정건전화, 무역자유화 및 금융부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 (2010년 6월 21일)

○ 캐나다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근 10년간 성장률 중 가장 높았으며 금융위기 중 증가한 실업률의 75% 가량을 회복, 2014년에 이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해소될 전망

○ IMF는 올해 캐나다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5.2%인 G7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

으로 전망했으며, 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

[그림 2-Ⅵ-1] 캐나다 정부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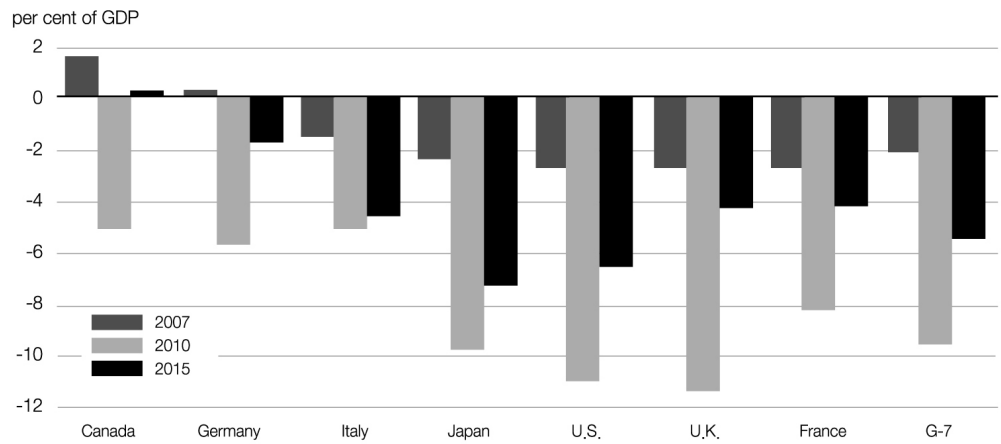

자료: IMF, The Fiscal Monitor, 2010년 5월

○ 또한 IMF는 2015년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30.7%로 예측, 재정건전성이 G7 국가 중 가장 뛰어날 것으로 판단함

– 2007년 대비 순부채비율은 7.6% 증가에 그침

[그림 2-Ⅵ-2] 캐나다정부 순부채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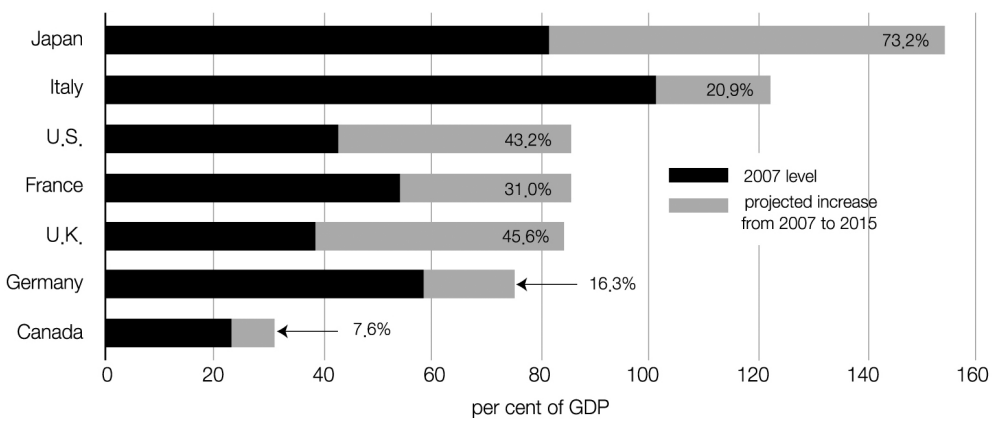

자료: IMF, The Fiscal Monitor, 2010년 5월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캐나다의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의 5차 경기부양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2호 참조

□ CEAP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예측한 2010년 캐나다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6%, 향후 2년간 경제여건이 G7국가 중 가장 뛰어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Ⅵ-3] G7국가의 실질GDP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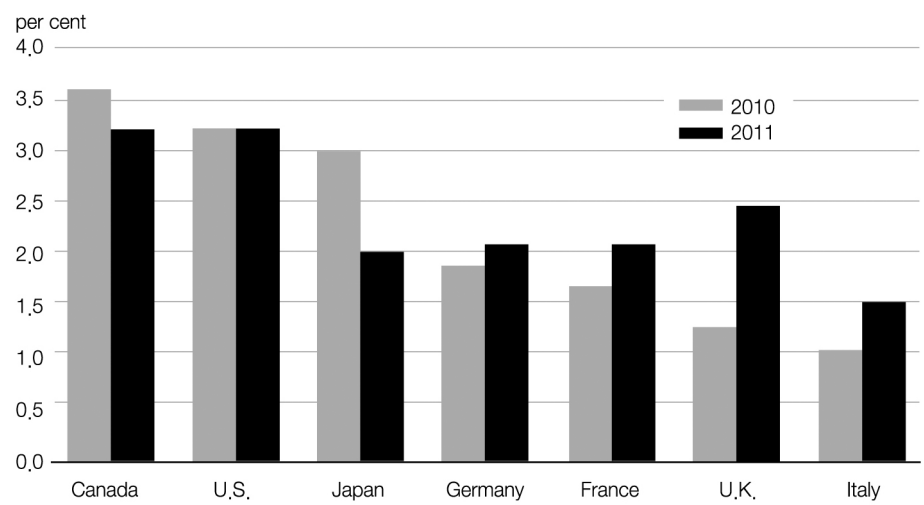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0년 5월

〈표 2-Ⅵ-4〉 캐나다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IMF, OECD보고서)

(단위: %)

경제지표	IMF		OECD	
	2010	2011	2010	2011
GDP성장률 (OECD는 7월 발표)	3.1	3.2	3.6	2.8
CPI	1.8	2.0	1.6	1.7
실업률	7.9	7.5	7.9	7.2
재정수지(GDP 대비)	–	–	–3.4	–2.1

자료: IMF WEO, 2010년 4월 / OECD Economic Outlook No. 87, 2010년 5월 및 WEO Update, 2010년 7월

다. 기타 정책이슈

□ 캐나다 재무부는 개인연금(Private Pension Plan)에 대한 납세자의 자금보호 개선, 자금의 변동폭을 낮추고 연금기금을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발표(2010년 6월 25일)

□ 2010년 6월 26~2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수준으로 감축시키고 정부부채 비율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감소시키기로 합의함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신빙성 있는 정책의 제시, 중기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논의,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수립 등 강조

○ 이 밖에도 보호무역주의 철폐 및 무역투자 진흥, 은행세 도입 및 은행 건전성 규제방안과 관련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국제기구의 구조개혁, 녹색성장을 강조한 기후변화 대책 등이 논의됨

Ⅶ 호주 (FY2010–11: 2010.7~2011.6)

1. 세제개편

가. FY2010–2011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 (2010. 5. 11)

1) 감세정책

□ 소액저축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1,000호주달러 한도)의 50%를 감면

○ 2011년 7월 1일부터 예금, 채권, 사채(debentures), 연금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감면 대상임

○ 정부는 안정적인 예금자금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해외투자자로부터 차입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동 제도로 FY2011-2012에 570만명의 저축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3년간 10억호주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납세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제도 도입으로 세금환급 간소화

○ 공제할 항목이 별로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시행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금환급 절차를 간소화

– 표준공제금액은 2012년 7월 1일부터 500호주달러를, 2013년 7월 1일부터는 1,000호주달러를 공제

○ 간소화된 세금신고로 FY2012-2013에 약 4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FY2013-2014에는 29%로, FY2014-2015에는 28%로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2013부터 2%p 인하한 28%의 세율 적용

○ 동 조치로 인해 향후 4년간 23억호주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자세한 내용은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2) 증세정책

□ 자원초과이윤세(Resource Super Profit Tax) 도입

○ FY2012-2013부터 자원 · 에너지 개발사업의 과세대상 자원이익에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원초과이윤세를 도입

○ 자원초과이윤세의 도입으로 인해 FY2013-2014까지 추가로 120억호주달러 수준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자세한 내용은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tax) 인상

○ 호주 정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2010년 4월 30일부터 담배소비세를 25% 인상

○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50억호주달러의 추가 세수 발생, 이는 의료 및 보건개혁의 재원에 충당

나. FY2010-2011에 적용되는 조세감면(tax relief) 주요 내용(2010. 6. 30)

□ FY2008-2009에 추진된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세번째 단계로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상향 조정(35,001호주달러 → 37,001호주달러)

○ 38%의 소득세율을 37%로 1%p 인하

○ 저소득층의 세액공제금액 확대(1,350호주달러→1,500호주달러)

– 이로 인해 효과적인 면세구간은 16,000호주달러로 인상[22)]

22) 연소득이 16,000호주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6,000호주달러는 세율이 '0'이고, 10,000호주달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은 1,500호주달러가 되나 저소득층 세액공제로 세액이 감면되므로 소득

○ 고령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 폭 확대

– 독신일 경우 연간소득이 30,685호주달러(현행 29,867호주달러), 부부일 경우 1인당 26,680호주달러(현행 25,680호주달러)까지 세금을 면제

〈표 2-Ⅷ-1〉 FY2008-2009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인소득세 변화 추이

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	2008. 7. 1 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09. 7. 1 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10. 7. 1 이후 소득구간(A$)	세율 (%)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LITO(A$)	750		1,200		1,350		1,500
효과적인 면세구간 (A$)	11,000		14,000		15,000		16,000

세를 면제받게 됨

2. 예산, 결산, 추경예산안

가. 예산

▣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재정흑자로의 빠른 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FY2010-2011 예산안 발표(2010. 5. 11)

1)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적시의 통화 및 재정정책 수행의 성공적인 결과로 향후 2년간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FY2010-2011 및 FY2011-2012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25%와 4%로 전망

※ FY2010-2011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FY2009-2010 budget('09.5)) 2.25% → (MYEFO('09.11))[23] 2.75% → (FY2010-2011 budget('10.5)) 3.25%

□ (재정전망) FY2010-2011의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24]는 408억호주달러(GDP 대비 △2.9%)의 적자를 예상

※ FY2010-11 예산수지 전망 변화(GDP 대비 %): (FY2009-2010 budget('09.5)) △4.7% → (MYEFO('09.11)) △3.6% → (FY2010-2011 budget('10.5)) △2.9%

○ (재정수입) FY2010-2011의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준인 3,218억호주달러(GDP 대비 22.9%)로 전망

–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력이 회복되어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2.2% 증가

○ (재정지출) FY2010-2011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준인 3,546억호주달러(GDP 대비 25.2%)로 전망

– FY2008-2009 및 FY2009-2010에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철회로 향후 재정지출의

23) MYEFO(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는 반기 경제재정보고서로 1998년 제정된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매년 11~12월 사이 발간되며, 이는 기수립된 재정전략에 비추어 정부의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재정정보를 제공함

24) 예산수지는 재정수지(순운영수지(수입－지출)－순자본투자액)에서 Future Fund 수익금을 제외한 것임

GDP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

○ 실질지출증가율 제한조치와 경제회복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 폭이 점차 축소되어 FY2012-2013에 예산흑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표 2-Ⅷ-2〉 FY2010-2011 예산안 재정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재정수입[1]	298.9	294.2	321.8	356.4	381.9	407.2
(GDP 대비 비율)	23.7	22.7	22.9	24.0	24.3	24.6
재정지출[1]	324.6	343.1	354.6	364.6	381.0	398.0
(GDP 대비 비율)	25.8	26.5	25.2	24.5	24.3	24.0
재정수지	△29.7	△54.8	△39.6	△12.1	2.0	6.3
(GDP 대비 비율)	△2.4	△4.2	△2.8	△0.8	0.1	0.4
예산수지[2]	△27.1	△57.1	△40.8	△13.0	1.0	5.4
(GDP 대비 비율)	△2.2	△4.4	△2.9	△0.9	0.1	0.3
순채무	△16.1	41.8	78.5	90.5	93.7	90.8
(GDP 대비 비율)	△1.3	3.2	5.6	6.1	6.0	5.5

주: 1) 발생주의 기준
2)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자료: FY2010-2011 Budget

2) 예산기조 및 주요 내용

□ 금년도 예산안은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재정흑자로의 빠른 전환(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자세한 내용은 '1. 세제개편' 참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자세한 내용은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저오염 경제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6억 5,250만호주달러 규모의 재생

에너지기금을 조성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

• 동 기금의 조성으로 기존 청정에너지계획은 51억호주달러 규모로 확대

○ 자원초과이윤세(Resource Super Profits Tax) 도입 및 법인세율의 단계적인 인하 등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자세한 내용은 '1. 세제개편' 및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25] 개혁

–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분담률(Superannuation Guarantee)을 현행 9%에서 2019년 7월 1일까지 12%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주어야 하는 근로자의 나이를 현행 18~70세에서 18~75세로 확대하여 적용

– 2012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연소득 3만 7,000만호주달러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매년 일정액(최대 500호주달러)을 적립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적립액이 5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추가적립을 허용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자세한 내용은 '3. 다. 기타 정책이슈' 참조

나. 수정예산안

□ 총선을 대비하여 예산안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수정예산안(Economic Statements) 발표(2010. 7. 14)

○ (경제전망)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및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임

– FY2010-2011 및 FY2011-2012의 경제성장률은 예산안 발표 시점보다 0.25%p 감소한 3% 및 3.75%로 전망

– 그러나 예산안 발표 이후 교역조건은 더욱 좋아져 FY2010-2011의 명목GDP 증가

25) 동 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인수당(Age pension)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용주는 월 450호주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18~70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9%를 의무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연금펀드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임

율은 0.75%p 상향 조정

○ (재정전망) FY2010-2011 예산안 이후 결정된 정책효과 및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등에 따라 예산안 발표 시점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

– 예산안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자원초과이윤세의 수정으로 정책결정효과는 예산수지를 악화시켰으나 상품가격의 상승 등 거시경제변수효과는 예산수지를 개선

• 예산안 발표 당시의 자원초과이윤세는 FY2013-2014까지 120억호주달러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원초과이윤세를 수정한 광물자원 임대세는 이보다 15억호주달러가 적은 105억호주달러로 전망

• 자세한 내용은 '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참조

〈표 2-Ⅷ-3〉 FY2010-2011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산수지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

	추 정		예 측	
	FY2010-2011	FY2011-2012	FY2012-2013	FY2013-2014
FY2010-2011예산안의 예산수지(a) (GDP 대비)	△40,756 △2.9	△13,045 △0.9	1,016 0.1	5,432 0.3
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의 차이				
정책결정에 의한 변동분(b)	△132	196	△310	△5377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의한 변동분(c)	538	2,808	2,428	4,748
총변동분	405	3,004	2,118	△629
수정예산안의 예산수지(a) (GDP 대비)	△40,351 △2.8	△10,041 △0.7	3,134 0.2	4,803 0.3

주: (a)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b) 정책결정에 의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2차적인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긴급 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 계산
(c) 정책결정에 대한 긴급 예비비 차감분 포함

자료: Economic Statements 2010

다. 결산

□ 『2009-10 Final Budget Outcome』은 2010년 9월말에 발표 예정임

3.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재정규율 강화 - 재정지출 증가율 제한

○ 경제가 추세적인 성장세로 회복하고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긴축재정기조로 운영

– 금번 예산안의 실질지출증가율을 보면 FY2013-2014까지 2% 이내로 계획

〈표 2-Ⅶ-4〉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FY2009–2010	FY2010–2011	FY2011–2012	FY2012–2013	FY2013–2014
실질지출증가율(%)	4.9	0.9	–0.6	1.7	1.9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FY2010–2011 Budget

○ 긴축재정 기조의 수행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하여 예산수지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그림 2-Ⅶ-1] 향후 예산수지 전망(좌) 및 재정건전화 조치로 인한 예산수지 개선효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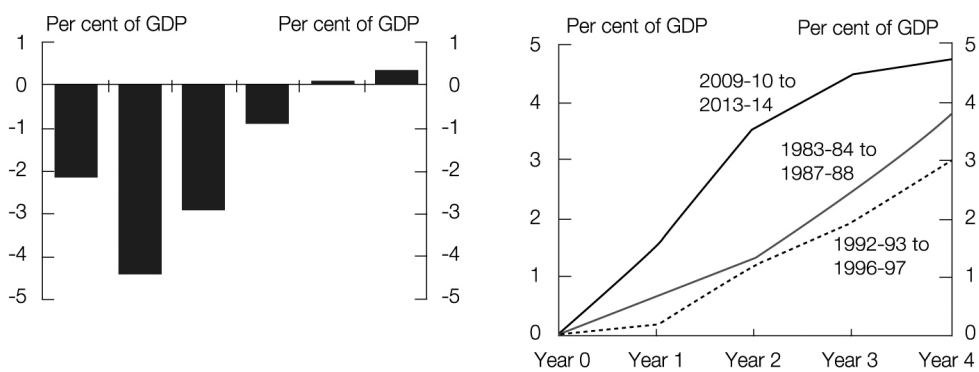

자료: FY2010–2011 Budget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경제성장 가속화

□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초과이윤세(Resource Super Profits Tax) 도입

○ FY2003-2004 이후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부담액에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부과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제기

○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적용되는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생된 수익에 40%의 세율로 세금 부과

– 연방정부의 자원 관련 세금(crude oil excise tax)은 자원초과이윤세로 통합되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지속

○ 자원초과이윤세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은 자원분야에의 환원 및 금번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 재원으로 활용

□ 그러나 자원초과이윤세 도입 발표 후 광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해 기업들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

○ 세금의 명칭을 자원초과이윤세에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로 변경

○ 광물자원임대세는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으로 국한시켜 적용하여 기존 적용대상기업 2,500개에서 320개로 대폭 축소

– 석유자원임대세를 확장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석유·가스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세율도 기존 40%에서 30%로 10%p 세율 인하

–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도 확대하여 수익률의 12.7%(기존보다 7% 추가 인정)까지 광물자원임대세를 과세면세함

○ 수정된 자원세제 개혁에 따라 기존 전망에 비해 15억호주달러 정도 세입이 줄어들 전망으로 동 재원으로 추진될 기타 세제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법인세율 인하폭 수정
- 자원탐사비용 환급(resource exploration rebate) 대신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상각제(asset write off) 도입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FY2013-2014에는 29%로, FY2014-2015에는 28%로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2013부터 2%p 인하한 28%의 세율 적용

○ 그러나 7월 2일 자원세제의 수정으로 FY2013-2014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현행보다 1%p 낮은 29%의 법인세율을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00호주달러 한도까지 당해연도에 일시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상각제를 허용

- 동 조치는 FY2012-2013부터 적용되며 기업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감가상각의 계산을 간소화하여 세무신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지속가능한 성장

□ 자국 노동력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 6,120만호주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훈련(Skills for Sustainable Growth)' 전략을 수행

○ 2억호주달러 규모의 핵심기술투자펀드(Critical Skills Investment Fund)를 조성하고 견습프로그램(Kickstart Apprenticeship)을 시행하여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

- 핵심기술투자펀드는 3만 9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대기업의 경우 50%, 중소기업은 90% 비용 지원)
- 8,000만호주달러 규모의 견습프로그램의 시행으로 22,500여명의 견습생이 훈련을 제공받게 됨
- 또한 기술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견습프로그램 현대화 추진에 2,000만호주달러 투자

○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훈련제도에

2억 4,300만호주달러를 투자

○ 식자능력 및 수리능력(literacy, language and numeracy) 향상 등 기초학습능력 개선을 위해 약 1억 1,000만호주달러를 투자

□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56억호주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향후 10년간 도로, 항만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사업을 지원

○ 호주의 물류운송능력 강화를 위하여 호주철도회사(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의 철도네트워크사업에 10억호주달러를 투자

○ 동 기금의 재원은 자원세제 개혁에 따른 세입으로 충당

다. 기타 정책이슈

1) FY2010-2011 예산안에 포함된 보건 및 의료개혁(2010. 5. 11)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4년간 22억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

○ 일반의 진료시설(GP Super Clinics)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억 5,500만호주달러 지출 계획

- 23개의 일반의 진료시설 신규 설립 및 425개의 기존 시설 서비스 개선

○ 언제라도 이용가능한 응급진료센터 서비스 제고를 위해 4억 1,700만호주달러 배정

○ 간호사 교육훈련 지원 등 간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5억 2,300만호주달러 투자

○ 개인 의료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6,670만호주달러를 투자

2) 호주 조기 총선일 확정 및 선거 전 경제·재정전망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EFO)[26] 발표(2010. 7. 26)

□ 호주 연방정부는 7월 19일에 총독의 승인(writ)을 얻은 조기 총선일(8월 21일)이 결정되

26) PEFO(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는 1998년 제정된 공정예산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의거하여 총선 공고 후 10일 이내에 발간해야 하며 동 보고서의 목적은 선거를 앞두고 최신 경제 및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었음을 선언

□ 선거 전 최신 경제 및 재정전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EFO를 발간, FY2010-2011 예산안(Budgets)과 수정예산안(Economic Statement) 발표 이후 갱신된 정보들을 수록

○ (경제전망) 7월에 발표된 수정예산안과 동일하게 전망

〈표 2-Ⅷ-5〉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 망		예 측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경제성장률	3.0	3.75	3.0	3.0
고용	2.25	2.0	1.5	1.5
실업률	5.0	4.75	5.0	5.0
소비자물가지수	2.75	2.75	2.5	2.5
경상성장률	9.25	5.25	5.25	5.25

주: (a) 경제성장률 및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임.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6월까지 연간 증가율임. 실업률은 기말기준임

자료: PEFO 2010

○ (재정전망) FY2010-2011 예산수지는 추가로 결정된 정책효과 및 FY2009-2010 결산 정보에 따라 적자폭이 약간 증가

- FY2009-2010의 결산(잠정) 결과 예상보다 낮은 개인소득세 및 GST(Good and Service Tax)로 인해 3억호주달러 정도 조세수입 하향 조정
- 자녀양육세제 환급비용 및 도로 인프라에 대한 지출 비용 증가
- 주정부에 대한 GST 지급분 추가감소로 FY2010-2011 9천만호주달러 지출 절감

〈표 2-Ⅷ-6〉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PEFO의 예산수지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

	추 정		예 측	
	FY2010-2011	FY2011-2012	FY2012-2013	FY2013-2014
FY2010-2011예산안의 예산수지(a) (GDP 대비)	△40,756 △2.9	△13,045 △0.9	1,016 0.1	5,432 0.3
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의 차이				
정책결정에 의한 변동분(b)	△132	196	△310	△5377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의한 변동분(c)	538	2,808	2,428	4,748
총변동분	405	3,004	2,118	△629
수정예산안의 예산수지(a) (GDP 대비)	△40,351 △2.8	△10,041 △0.7	3,134 0.2	4,803 0.3
수정예산안과 PEFO와의 차이				
정책결정에 의한 변동분(b)	24	△61	1	△4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의한 변동분(c)	△362	△282	368	△253
총변동분	△337	△343	369	△257
PEFO의 예산수지(a) (GDP 대비)	△40,689 △2.9	△10,384 △0.7	3,503 0.2	4,546 0.3

주: (a)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b) 정책결정에 의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2차적인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긴급 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 계산
(c) 정책결정에 대한 긴급 예비비 차감분 포함

자료: *PEFO 2010*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Ⅰ. 미 국 (2010년 6월 기준)
Ⅱ. 일 본 (2010년 5월 기준)
Ⅲ. 영 국 (2010년 6월 기준)
Ⅳ. 독 일 (2010년 6월 기준)
Ⅴ. 캐나다 (2010년 5월 기준)
Ⅵ. 호 주 (2010년 5월 기준)

Ⅰ 미국 (2010년 6월 기준, FY2010: 2009.10.1~2010.9.30)

1. 세입 및 세출동향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1조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2억달러(7.6%) 감소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수입이 83억달러(0.5%)증가하고, 재정지출 또한 739억달러(2.8%) 감소하면서 올해 재정수지가 개선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1]		FY2009[1]		FY2010[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2]
	6월	누계 (2007.10-2008.6)	6월	누계 (2008.10-2009.6)	6월	누계 (2009.10-2010.6)	변동분	%	
총재정수입	259,912	1,933,904	215,364	1,588,671	251,048	1,596,995	8,324	0.5	2,567,181
예산(on-Budget)	199,010	1,430,953	155,474	1,085,938	195,558	1,115,081	29,143	2.7	1,893,113
예산 외(off-Budget)[3]	60,902	502,951	59,890	502,733	55,490	481,914	-20,819	-4.1	674,068
총재정지출	2,202,577	2,931,222	309,682	2,674,934	319,470	2,601,023	-73,911	-2.8	3,833,860
예산	211,454	1,881,098	308,452	2,320,371	316,411	2,219,588	-100,783	-4.3	3,255,667
예산 외	-2,266	321,479	1,230	354,563	3,059	381,435	26,872	7.6	578,193
재정수지	50,725	-268,674	-94,318	-1,086,263	-68,422	-1,004,028	82,235	-7.6	-1,266,679
예산	-12,443	-450,145	-152,978	-1,234,433	-120,853	-1,104,507	129,926	-10.5	-1,362,554
예산 외	63,168	181,472	58,660	148,170	52,431	100,479	-47,691	-32.2	95,875
총재원조달 규모	-50,725	268,674	94,318	1,086,263	68,422	1,004,028	-82,235	-7.6	1,266,679
채무	6,367	241,232	154,050	1,364,700	140,932	1,083,959	-280,741	-20.6	1,200,671
재무부 operating cash 감소, 증가(-)	-39,414	21,921	-100,720	53,745	-67,685	-14,283	-68,028	-126.6	200,000
기타	-17,678	5,521	40,988	-332,182	-4,824	-65,648	266,534	-80.2	-133,992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2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예산안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6월, 2009.6월, 2010.6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6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3억달러(0.5%) 증가한 1.6조달러

○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법인세 및 기타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재정수입은 증가

– 법인세는 약 310억달러(30.5%), 기타재정수입은 약 360억달러(109.2%) 가량 증가

○ 그러나 2001/2003년 감세법 연장으로 개인소득세가 감소하였고, 사회보험 관련 세입 역시 지난해에 비해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개인소득세 약 301억달러(4.4%),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은 약 265억달러(3.9%) 감소하였고, 이 중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이 총 311억달러(4.8%) 감소

○ 유산세 및 증여세도 FY2009 6월(누계)에 비해 약 34억달러(18.5%) 감소하여 151억 달러 수준

〈표 3-Ⅰ-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1]		FY2009[1]		FY2010[1]		전년 대비 증감(누계기준)	
	6월	누계 (2007.10–2008.6)	6월	누계 (2008.10–2009.6)	6월	누계 (2009.10–2010.6)	변동분	%
개인소득세	108,554	877,763	92,935	685,523	109,005	655,374	–30,149	–4.4
법인세	58,328	236,516	32,529	101,906	51,468	132,959	31,053	30.5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60,902	502,951	59,890	502,733	55,490	481,914	–20,819	–4.1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17,488	151,482	16,601	150,370	15,111	140,053	–10,317	–6.9
실업보험	686	32,233	447	30,249	1,128	34,934	4,685	15.5
기타퇴직연금	322	3,131	369	3,160	373	3,115	–45	–1.4
소비세	5,942	48,333	6,735	46,505	6,725	47,326	821	1.8
유산세 및 증여세	2,298	22,413	983	18,523	1,370	15,098	–3,425	–18.5
관세	2,306	20,181	1,498	16,943	2,156	17,690	747	4.4
기타 재정수입	3,086	38,900	3,378	32,760	8,222	68,530	35,770	109.2
총재정수입	259,912	1,933,904	215,364	1,588,671	251,048	1,596,995	8,324	0.5
예산	199,010	1,430,953	155,474	1,085,938	195,558	1,115,081	29,143	2.7
예산 외	60,902	502,951	59,890	502,733	55,490	481,914	–20,819	–4.1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8.6월, 2009.6월, 2010.6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 6월(누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739억달러(2.8%) 감소한 2.6조달러

○ 상업 및 주택금융(housing credit) 분야 지출이 3,572억달러(129.7%)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

○ 농업, 소득보장 등 대부분 분야에서 대체로 지출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만 각각 24억달러(11.5%), 69억달러(18.9%) 가량 지출이 감소

○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약 490억달러(91.3%), 소득보장 약 860억달러(21.3%), 보건 약 272억달러(11.0%) 등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미래 성장동력의 구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68억달러(535.5%) 가량 지출 증가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8[1]		FY2009[1]		FY2010[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6월	누계 (2007.10-2008.6)	6월	누계 (2008.10-2009.6)	6월	누계 (2009.10-2010.6)	변동분	%
국방	48,126	461,035	55,911	491,775	58,412	520,779	29,004	5.9
외교	2,375	20,094	4,408	28,495	4,580	33,753	5,258	18.5
과학, 우주, 기술 일반	2,206	17,491	2,645	21,494	2,627	22,255	761	3.5
에너지	536	715	551	1,268	1,613	8,058	6,790	535.5
천연자원 및 환경	2,538	22,029	2,936	36,744	4,218	29,817	-6,927	-18.9
농업	-231	19,802	745	10,947	76	20,368	9,421	86.1
상업 및 주택금융	1,338	8,161	49,024	275,510	20,385	-81,736	-357,246	-129.7
교통	7,050	54,818	7,955	58,377	8,818	64,744	6,367	10.9
지역개발	1,778	16,970	2,002	20,685	2,246	18,302	-2,383	-11.5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6,355	69,644	-10,508	53,916	11,244	103,140	49,224	91.3
보건	22,904	210,954	29,139	247,829	31,894	275,024	27,195	11.0
메디케어	19,767	285,886	36,423	315,227	37,595	330,553	15,326	4.9
소득보장	33,758	343,439	40,701	403,306	42,167	489,361	86,055	21.3
사회보장	56,121	461,324	61,245	511,617	63,363	528,789	17,172	3.4
보훈	3,377	62,991	8,342	71,415	8,816	81,345	9,930	13.9
법무행정	4,871	35,095	5,722	40,051	5,483	41,622	1,571	3.9
일반행정	1,890	12,771	2,136	14,203	2,847	14,672	469	3.3
순이자지급	20,224	184,984	16,171	148,830	19,921	165,336	16,506	11.1
상계계정수입	-25,796	-85,627	-5,866	-76,755	-6,833	-65,159	11,596	-15.1
합계	209,188	2,202,577	309,682	2,674,934	319,470	2,601,023	-73,911	-2.8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7.6월, 2008.6월, 2009.6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6.30일 기준 공공채무[27]는 전년 대비 1.7조달러(14.3%) 증가한 13.2조달러 수준

○ 주로 시장성 채권(22.5%) 증가에 기인

– 중기채(시장성)가 지난해 6월(누계기준)에 비해 약 1.5조달러(44.5%), 장기채 1,631억달러(25.3%) 증가

– 단기채는 2,239억달러(11.2%) 감소

○ 정부부문 채무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가한 4.6조달러, 비정부부문 채무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8.6조달러 기록

– 이는 중기채 및 장기채 증가가 주요 원인

27) 공공채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무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표 3-Ⅰ-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달러, %)

구분	'08.3.31			'09.3.31			'10.3.31			전년 대비 증감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장성:	4,676,573	198,522	4,696,426	6,591,740	20,370	6,612,110	8,079,066	23,343	8,102,408	1,487,326	22.6	2,973	14.6	1,490,298	22.5
단기채(T-Bills)	1,055,697	4,760	1,060,457	2,000,458	6,005	2,006,463	1,777,032	5,494	1,782,526	-223,426	-11.2	-511	-8.5	-223,937	-11.2
중기채(T-Notes)	2,542,526	916	2,543,442	3,417,319	422	3,417,740	4,935,131	3,245	4,938,376	1,517,812	44.4	2,823	669.0	1,520,636	44.5
장기채(T-Bonds)	580,995	64	581,059	642,050	1,610	643,660	802,589	4,217	806,806	160,539	25.0	2,607	161.9	163,146	25.3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497,355	113	497,468	531,913	413	532,326	564,314	148	564,462	32,401	6.1	-265	-64.2	32,136	6.0
Federal Financing Bank	0	14,000	14,000	0	11,921	11,921	0	10,239	10,239	0	-	-1,682	-14.1	-1,682	-14.1
비시장성:	608,490	4,187,090	4,795,581	583,173	4,349,993	4,933,165	554,615	4,544,769	5,099,383	-28,558	-4.9	194,776	4.5	166,218	3.4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0.0	0	-	0	0.0
Foreign Series	3,086	0	3,086	5,986	0	5,986	4,036	0	4,036	-1,950	-32.6	0	-	-1,950	-32.6
R.E.A. Series	1	0	1	1	0	1	1	0	1	0	0.0	0	-	0	0.0
State and Local overnment Series	275,203	0	275,203	232,965	0	232,965	204,002	0	204,002	-28,963	-12.4	0	-	-28,963	-12.4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5,003	0	195,003	193,592	0	193,592	189,665	0	189,665	-3,927	-2.0	0	-	-3,927	-2.0
Government Account Series	100,989	4,187,090	4,288,079	119,112	4,349,501	4,468,613	125,612	4,544,276	4,669,888	6,500	5.5	194,775	4.5	201,275	4.5
Hope Bonds	0	0	0	0	492	492	0	492	492	0	-	0	0.0	0	0.0
Other	4,214	0	4,214	1,522	0	1,522	1,304	0	1,304	-218	-14.3	0	-	-218	-14.3
합계	5,285,064	4,206,942	9,492,006	7,174,912	4,370,363	11,545,275	8,633,680	4,568,111	13,201,792	1,458,768	20.3	197,748	4.5	1,656,517	14.3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8.3월, 2009.3월, 2010.3월

Ⅱ 일본 (2010년 5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동향

□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1.5조엔 가량 감소하였음

○ 재정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약 52조엔)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약 1.5조엔, 32.1%) 재정흑자

□ 특별회계 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9.8조엔(누계) 수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지출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

– 재정수입은 약 9조엔(12.3%) 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정지출은 6,630억엔(0.9%)이 감소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2,715	6,623	1,130	4,685	2,493	6,186	1,502	32.1	102,558
재정지출	3,200	10,094	4,301	13,758	3,964	13,706	-52	-0.4	107,069
수지	-485	-3,471	-3,170	-9,073	-1,471	-7,520	1,553	-17.1	-4,511
〈특별회계〉									
재정수입	18,441	85,436	16,858	73,830	18,808	82,847	9,016	12.3	381,673
재정지출	19,868	74,174	15,935	73,711	15,169	73,048	-663	-0.9	378,566
수지	-1,427	11,262	923	119	3,639	9,798	9,679	8,130.1	3,107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5월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5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약 6.2조엔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의 항목별 세입현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채권발행 부문의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임

– 정부채권 발행은 전년 대비 1.4조엔(30.4%) 증가한 5.9조엔 수준

○ 기타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0억엔(92.4%) 가량 큰 폭으로 상승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2010년 5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누계 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	–	–	–	–	–	–	–	37,396
조세	–	–	–	–	–	–	–	–	36,372
소득세	–	–	–	–	–	–	–	–	12,614
법인세	–	–		–	–	–	–	–	5,953
상속세	–	–	–	–	–	–	–	–	1,271
소비세	–	–	–	–	–	–	–	–	9,638
주세	–	–	–	–	–	–	–	–	1,383
담배세	–	–	–	–	–	–	–	–	827
휘발유세	–	–	–	–	–	–	–	–	2,576
석유가스세	–	–	–	–	–	–	–	–	12
항공기연료세	–	–	–	–	–	–	–	–	77
석유석탄세	–	–	–	–	–	–	–	–	480
전원개발촉진세	–	–	–	–	–	–	–	–	330
자동차중량세	–	–	–	–	–	–	–	–	447
관세	–	–	–	–	–	–	–	–	756
톤세	–	–	–	–	–	–	–	–	8
토지세	–	–	–	–	–	–	–	–	0
구세(旧税)	–	–	–	–	–	–	–	–	0
인지수입	–	–	–	–	–	–	–	–	1,024
국영기업수입	1	3	1	2	1	2	0	–7.1	16
정부자산매각수입	37	48	14	18	10	14	–4	–23.4	826
국유재산매각	29	36	7	11	4	6	–5	–44.5	129
회수금 등 수입	8	12	7	7	6	8	1	7.9	698
기타수입	83	159	77	145	202	278	134	92.4	9,758
국유재산이용수입	5	17	4	16	4	15	–1	–6.2	74
납부금	22	44	39	59	29	49	–10	–16.9	632
기타	56	98	34	70	169	214	144	206.8	9,052
정부채권발행(公債金)	2,593	6,414	1,038	4,520	2,280	5,892	1,372	30.4	44,303
전년도 잉여금수입	–	–	–	–	–	–	–	–	–
총계	2,715	6,623	1,130	4,685	2,493	6,186	1,502	32.1	92,299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5월말

□ 2010년 5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약 82.8조엔을 기록

○ 국채정리기금과 연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약 6.3조엔(11.4%), 약 3.8조엔(46.2%)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에너지대책 부문에서 가장 큰 폭(166.2%, 1,940억엔)으로 증가

○ 재정투융자가 약 1.5조엔(47.1%), 식량안정공급이 약 1,120억엔(41.3%)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세입 증가분을 상쇄하지는 못함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2010년 5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445	4,334	85	4,531	145	5,008	476	10.5	53,665
등기	2	22	2	23	3	24	2	7.2	159
지진재보험	4	4	4	4	4	4	0	0.5	73
국채정리기금	12,510	65,140	13,178	55,663	12,969	61,991	6,328	11.4	189,528
재정투융자[1]	2,199	3,429	2,266	3,244	1,585	1,717	-1,527	-47.1	37,085
외국환자금	138	229	20	59	0	31	-28	-47.8	2,696
특정국유재산정비	0	152	2	89	1	69	-20	-22.1	104
에너지대책	166	187	45	117	202	311	194	166.2	2,376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3]	11	31	10	30	–	–	–	–	–
노동보험	1,477	1,795	14	235	18	140	-94	-40.2	8,717
선원보험[3]	2	6	2	6	–	–	–	–	–
연금	792	8,353	620	8,190	3,236	11,976	3,787	46.2	3,044
식량안정공급	185	282	143	271	78	159	-112	-41.3	113
농업공제재보험	3	5	2	5	3	6	1	23.9	11
삼림보험	0	1	0	1	0	1	0	-17.9	450
국유임야사업	77	102	69	88	67	84	-4	-4.1	201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4	1	4	1	4	0	-1.7	302
무역재보험	6	153	6	108	6	56	-51	-47.7	3,627
특허	15	181	24	198	22	198	0	0.1	123
사회자본정비사업	402	945	361	887	465	990	103	11.6	302
자동차안전	3	80	3	76	3	74	-2	-2.3	120
계	18,441	85,436	16,858	73,830	18,808	82,847	9,052	12.3	302,695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5월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0.5월(누계) 기준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520억엔(0.4%) 감소한 13.7조엔 규모

○ 총무성의 세출이 1.4조엔(22.1%)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고 환경성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지출이 140억엔(56.1%) 감소

○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의 세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조엔(30.8%) 900억엔(155.9%) 가량이 크게 증가하여 5.4조엔, 1,400억엔 수준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2010년 5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누계 기준	%	
황실비	0.2	1	0.3	1	0.1	0.4	-0.2	-32.9	7
국회	7	13	5	13	8	14	1	7.3	163
재판소	17	33	17	33	17	35	2	6.2	338
회계검사원	1	2	1	2		2	0.1	7.8	18
내각	2	3	2	3	2	4	0	14.8	110
내각부	26	42	15	40	23	42	2	5.4	602
총무성	351	3,492	603	6,356	575	4,950	-1,406	-22.1	19,897
법무성	33	77	28	78	28	83	5	6.3	758
외무성	15	90	47	148	31	132	-16	-10.7	718
재무성	190	493	144	431	149	532	100	23.3	24,008
문부과학성	216	761	157	698	180	734	36	5.1	6,086
후생노동성	1,299	3,133	2,409	4,122	2,174	5,391	1,270	30.8	27,718
농림수산성	122	267	86	232	66	216	-17	-7.1	2,851
경제산업성	5	52	5	58	30	148	90	155.9	1,225
국토교통성	476	981	363	885	242	719	-166	-18.8	6,595
환경성	5	10	20	25	5	11	-14	-56.1	252
방위성	437	646	399	634	433	694	61	9.6	4,894
재정지출(합계)	3,200	10,094	4,301	13,758	3,964	13,706	-52	-0.4	96,240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5월말

□ 특별회계 2010.5월 지출(누계)은 전년 대비 0.9%(6,630억엔) 감소한 73조엔 수준

○ 재정투융자 부문에서 지출이 약 1.5조엔(49.8%)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국채정리기금이 약 2,780억엔(0.9%) 감소

○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연금지출은 전년 대비 6천억엔(4.4%) 증가하였고, 이외에 에너지대책이 전년 대비 16.3% 증가한 7,920억엔 수준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2010년 5월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8-09		FY2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FY2010 예산액
	5월	누계 (2008.4 ~2008.5)	5월	누계 (2009.4 ~2009.5)	5월	누계 (2010.4 ~2010.5)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5,135	23,703	3,859	24,142	3,877	24,632	490	2.0	53,462
등기	6	11	7	12	6	11	-1	-5.1	164
지진재보험	0	0	0	0	0	0	0	17.9	73
국채정리기금	10,687	32,801	8,406	32,064	8,082	31,786	-278	-0.9	190,054
재정투융자[1]	1,885	3,100	2,189	3,009	1,506	1,511	-1,498	-49.8	36,165
외국환자금	51	112	19	39	12	24	-15	-38.3	2,034
특정국유재산정비	1	4	0	5	0	6	1	26.5	57
에너지대책	133	872	40	681	18	792	111	16.3	2,451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3]	8	11	11	14	-	-	-	-	-
노동보험	419	707	277	614	246	600	-14	-2.3	8,672
선원보험[3]	4	8	4	8	-	-	-	-	-
연금	1,205	12,185	797	12,469	1,149	13,023	554	4.4	78,969
식량안정공급	124	276	80	213	48	266	53	25.1	3,044
농업공제재보험	3	4	2	4	3	3	-1	-14.8	105
삼림보험	0	1	0	0	0	0	0	-20.2	5
국유임야사업	77	101	74	97	68	94	-3	-2.9	485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3	0	2	2	2	0	7.7	16
무역재보험	0	0	1	2	0	1	-2	-73.2	201
특허	4	8	6	8	8	9	1	13.9	120
사회자본정비사업	122	257	162	320	145	281	-40	-12.4	4,885
자동차안전	2	10	2	8	2	6	-2	-19.6	65
계	19,868	74,174	15,935	73,711	15,169	73,048	-663	-0.9	381,027

주: 1) 산업투자와 재정융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2년, 21년, 20년 각 연도 5월말

4. 국가채무 동향

□ 2009년 3월 31일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약 883조엔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 국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약 720조엔을 기록

– 1년 미만의 단기채무 수준이 전년 대비 42.2%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채무는 8.8% (약 48조엔) 증가

– 반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의 경우에는 중기채권으로 인한 채무가 전년 대비 39.6% 줄어, 오히려 약 8.8조엔(6.7%) 감소

○ 재정어음의 경우, 작년 3월말에 비해 2.3% 감소한 약 106조엔 수준

〈표 3-Ⅱ-6〉 중앙정부채무(3월 31일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2007	2008	2009	전년 대비 증감	
	3월	3월	3월	증감액	%
국채	684,328	680,448	720,489	40,041	5.9
정부채권	541,458	545,936	593,972	48,036	8.8
장기(10년 이상)	354,366	354,238	373,155	18,917	5.3
중기(2~5년)	154,574	161,018	177,193	16,175	10.0
단기(1년 미만)	32,519	30,680	43,624	12,945	42.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39,754	131,050	122,225	-8,825	-6.7
장기(10년 이상)	90,881	94,737	100,274	5,537	5.8
중기(2~5년)	48,873	36,313	21,951	-14,362	-39.6
교부채권(Subsidy bond)	577	527	450	-77	-14.6
출자채권 등	2,506	2,211	1,767	-443	-20.1
기타 채권[1)]	32	725	2,075	1,350	186.1
차입금	57,159	57,566	56,406	-1,160	-2.0
장기(1년 초과)	21,845	22,252	21,092	-1,160	-5.2
단기(1년 이하)	35,314	35,314	35,314	0	0.0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7,753	108,483	106,028	-2,455	-2.3
총계	849,240	846,497	882,924	36,427	4.3
정부보증채무	47,021	45,429	46,596	1,167	2.6

주: 1) 기타 채권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함. 2007년 일본국유철도 청산사업단 채권승계 국채, 2008년은 석유채권승계 채권, 2009년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부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19년, 20년, 21년 각 연도 3.31 기준

Ⅲ 영국 (2010년 6월 기준, FY2010: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동향

□ 2010.6.30 기준 공공부문의 순부채규모는 9,269억파운드로, GDP의 63.9%를 기록

○ 2009.6.30 기준 부채규모에 비해 16.2% 증가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제외한 순부채는 8,137억파운드, GDP의 56.1%임

○ 2010년 6월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145억파운드 규모로 전년 6월보다 2억파운드 감소

○ 공공부문 FY2010-11 4~6월까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46억파운드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재정수지	-5.8	-16.9	-11.9	-35.0	-12.6	-34.6	0.4	-1.3
순차입	7.3	20.8	14.7	40.9	14.5	40.3	-0.7	-1.6
순부채	641.4		797.5		926.9		129.4	16.2
GDP 대비 순부채	44.4		57.3		63.9		6.6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7.15)

□ 중앙정부의 FY2010-11 6월까지 재정적자는 390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2억파운드(0.4%) 감소

○ 전년 대비 재정수입 7.8%, 재정지출 5.6% 증가

○ 순투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44억파운드(37.4%) 감소한 74억파운드를 기록

○ 순차입규모도 464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9.0% 감소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재정수입[1]	37.5	116.4	35.6	106.3	37.0	114.6	8.3	7.8
생산물과세(VAT포함)	15.1	45.5	14.0	40.4	15.2	48.0	7.6	18.7
소득세 및 재산세	11.8	39.5	11.4	35.8	11.5	36.7	0.9	2.5
기타과세	1.1	3.3	1.0	3.0	1.1	3.1	0.1	4.1
사회보장기여금	8.2	23.8	7.9	23.1	8.1	23.4	0.4	1.5
이자 및 배당금	0.7	2.4	0.6	2.0	0.5	1.2	-0.7	-37.1
기타 재정수입	0.7	2.0	0.7	2.1	0.7	2.2	0.1	4.3
재정지출	43.6	134.9	47.1	143.7	49.3	151.8	8.1	5.6
이자	2.6	8.3	1.7	7.4	3.8	11.4	4.1	54.8
순사회복지급여	12.1	36.9	13.6	40.7	14.1	42.1	1.4	3.5
기타 재정지출	28.9	89.7	31.7	95.6	31.3	98.2	2.6	2.7
감가상각	-0.5	-1.6	-0.6	-1.7	-0.6	-1.8	-0.1	4.1
재정수지	-6.6	-20.1	-12.1	-39.2	-12.9	-39.0	0.2	-0.4
투자[2]	2.6	7.4	7.5	13.5	3.1	9.2	-4.4	-32.1
less Depreciation	0.5	1.6	0.6	1.7	0.6	1.8	0.1	4.1
순투자	2.1	5.8	6.9	11.8	2.5	7.4	-4.4	-37.4
순차입	8.7	25.9	19.0	51.0	15.3	46.4	-4.6	-9.0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자본형성 + 토지순취득 + 순투자보조금 - 자본자산매각
투자 FY2007-08은 ONS에 항목 없음. '투자 = 순투자 + less Depreciation'으로 산출.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7.15)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년 4~6월까지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전년에 비해 83억파운드(7.8%) 증가한 1,146억 파운드 기록

○ 세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 인하 종료가 주된 역할을 함

– FY2008-09 4~6월 부가가치세 수입보다는 약 11억파운드 감소

○ 이자 및 배당금 수입만 전년 대비 7억파운드(37.1%) 감소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생산물과세	15.1	45.5	14.0	40.4	15.2	48.0	7.6	18.7
부가가치세	8.1	24.2	6.8	19.1	7.6	23.1	4.0	20.7
소득세 및 재산세	11.8	39.5	11.4	35.8	11.5	36.7	0.9	2.5
소득세[1]	10.3	30.3	10.1	28.7	10.1	29.1	0.4	1.3
법인세 등[2]	1.5	9.1	1.3	7.1	1.4	7.6	0.5	7.4
기타 과세(tax)	1.1	3.3	1.0	3.0	1.1	3.1	0.1	4.1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8.2	23.8	7.9	23.1	8.1	23.4	0.4	1.5
이자 및 배당금	0.7	2.4	0.6	2.0	0.5	1.2	-0.7	-37.1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7	2.0	0.7	2.1	0.7	2.2	0.1	4.3
재정수입	37.5	116.4	35.6	106.3	37.0	114.6	8.3	7.8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7.15)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0-11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1,518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대비 3.5%(14억파운드) 증가

○ 이자지출 규모가 전년에 비해 41억파운드(54.8%)로 크게 증가한 114억파운드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이자	2.6	8.3	1.7	7.4	3.8	11.4	4.1	54.8
순사회복지급여	12.1	36.9	13.6	40.7	14.1	42.1	1.4	3.5
기타 재정지출	28.9	89.7	31.7	95.6	31.3	98.2	2.6	2.7
재정지출	43.6	134.9	47.1	143.7	49.3	151.8	8.1	5.6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7.15)

4. 국가채무 동향

□ FY2010-11 4~6월까지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403억파운드

○ 중앙정부의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9.0% 감소

○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순차입규모는 전년 대비 각 44.7%, 32.4% 크게 감소

□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전년에 비해 GDP의 6.6%p 증가한 63.9%로 상승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재정수지			-5.8	-16.9	-11.9	-35.0	-12.6	-34.6	0.4	-1.3
순투자			1.5	3.9	2.8	5.9	1.9	5.7	-0.2	-3.6
순차입	공공부문(A+B)		7.3	20.8	14.7	40.9	14.5	40.3	-0.7	-1.6
	정부(A)	중앙정부	8.7	25.9	19.0	51.0	15.3	46.4	-4.6	-9.0
		지방정부	-1.5	-4.6	-0.1	-5.6	0.1	-3.1	2.5	-44.7
		합계	7.2	21.3	18.9	45.4	15.5	43.3	-2.1	-4.6
	공기업(B)		0.2	-0.5	-4.2	-4.5	-1.0	-3.0	1.5	-32.4
순국가채무			641.4		797.5		926.9		129.4	
GDP 대비 국가채무			44.4		57.3		63.9		6.6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0.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0.7.15)

Ⅳ 독일 (2010년 6월 기준, FY2010: 2010.1~2010.12)

1. 세입 및 세출동향

□ 2010년 6월(누계) 재정적자는 329억유로로 전년 대비 123.8% 크게 증가

○ 재정수입은 1,224억유로로 전년 대비 3.5% 감소

○ 재정지출은 1,553억유로로 전년 대비 9.8% 증가

〈표 3-Ⅳ-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6월	누계[1]	6월	누계[1]	6월	누계[1]	변동분	%	
재정지출	20.2	139.6	21.0	141.5	26.1	155.3	13.8	9.8	319.5
재정수입	23.5	126.5	24.5	126.8	28.4	122.4	−4.4	−3.5	238.9
세수	22.6	111.1	23.3	109.3	22.0	104.9	−4.4	−4.0	211.9
재정수지	3.2	−13.1	3.4	−14.7	2.3	−32.9	−18.2	123.8	−80.6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5~6월, 2009.5~6월, 2010.5~6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6월까지 연방정부 총재정수입은 약 1,224억유로로 전년보다 43억유로(3.5%) 감소

○ 6월(누계)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약 1,049억유로로 전년 대비 4.0%(44억유로) 감소

○ 6월(누계) 기타수입은 약 175억유로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표 3-Ⅳ-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변동분	%	
Ⅰ. 조세수입	22,624	111,142	23,364	109,323	22,025	104,934	-4,389	-4.0	211,887
공동세:	20,176	94,017	17,906	88,405	18,461	87,673	-732	-0.8	171,884
소득세 및 법인세	12,352	46,842	10,026	41,498	10,834	40,953	-545	-1.3	73,391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5,076	27,287	4,824	25,933	4,648	24,490	-1,443	-5.6	53,083
소득세(연말정산분)	3,662	5,986	3,384	5,147	3,641	6,730	1,583	30.8	10,179
소득세(분리과세분)	760	5,348	367	4,653	515	4,475	-178	-3.8	5,343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261	3,438	253	3,394	136	2,367	-1,027	-30.3	5,060
법인세	2,594	4,783	1,197	2,370	1,894	2,890	520	21.9	3,595
부가가치세	7,812	46,783	7,878	46,588	7,626	46,385	-203	-0.4	97,274
수입부가가치세	11	392	2	319	1	335	16	5.0	1,219
에너지세	3,361	14,238	3,642	14,836	3,356	14,041	-795	-5.4	39,400
담배세	1,024	5,814	1,166	5,925	1,114	5,789	-136	-2.3	13,59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1,596	6,694	1,334	6,248	1,393	5,955	-293	-4.7	10,950
보험세	595	6,490	594	6,501	606	6,556	55	0.8	10,450
전기세	632	3,141	610	3,129	587	3,068	-61	-1.9	6,350
자동차세	-	-	-	-	714	4,581	-	-	8,240
주세	170	1,107	163	1,073	117	965	-108	-10.1	2,082
커피세	75	481	78	488	78	500	12	2.5	1,010
추가 주정부 교부금	-3,646	-7,259	-3,446	-6,891	-3,160	-6,348	543	-7.9	-12,694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664	-8,253	837	-6,068	-640	-9,193	-3,125	51.5	-22,03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157	-2,240	1,008	-1,182	-62	-947	235	-19.9	-1,93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557	-3,338	-565	-3,388	-573	-3,438	-50	1.5	-6,877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	-	0	-4,496	-	-	-8,992
Ⅱ. 기타 수입	808	15,327	1,084	17,454	6,359	17,455	1	0.0	27,037
경제활동 수입	14	4,086	177	3,996	202	4,093	97	2.4	4,279
이자수입	47	288	12	310	23	154	-156	-50.3	395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74	2,340	88	2,309	399	2,218	-91	-3.9	4,147
총재정수입	23,432	126,469	24,446	126,776	28,384	122,389	-4,387	-3.5	238,924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5~6월, 2009.5~6월, 2010.5~6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6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에 비해 138억유로(9.8%) 증가한 약 1,553억 유로

○ 사회보장 및 전쟁배상금 지출이 전년 대비 127억유로(16.9%) 증가하여 총재정지출 증가를 주도

□ (참고) 2차 경기부양책(2009.2월)의 '투자 및 상환펀드'에 2010년 6월까지 85억유로 집행

○ 배기가스기준 충족 신차구입 보조금(car-scrapping bonus)에 48억유로, 주 및 지방정부의 미래지향적 투자에 약 24억유로, 연방정부의 투자에 약 10억유로 집행

〈표 3-Ⅳ-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0 (추정)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3,790	23,956	4,097	26,003	4,321	25,873	-130	-0.5	54,219
경제협력 및 개발	342	2,815	263	3,065	453	2,841	-224	-7.3	6,000
국방	2,461	14,344	2,520	15,195	2,489	15,451	256	1.7	31,188
연방행정	204	2,727	449	3,202	413	2,949	-253	-7.9	6,258
세무행정	255	1,434	280	1,643	309	1,794	151	9.2	3,944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899	5,530	1,188	6,132	1,007	5,894	-238	-3.9	15,402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78	668	95	752	97	771	19	2.5	1,382
R&D	588	2,734	747	3,096	554	2,942	-154	-5.0	9,124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69,041	75,478	11,213	74,905	13,183	87,573	12,668	16.9	173,074
사회보장	6,146	42,960	6,267	43,421	6,418	44,453	1,032	2.4	78,088
실업보험	632	3,792	0	0	850	6,985	6,985	-	7,927
기초실업급여	2,896	17,101	2,824	17,540	2,981	17,947	407	2.3	38,311
:실업급여 Ⅱ	1,822	11,168	1,875	11,192	1,854	11,495	303	2.7	23,900
실업급여 Ⅱ, 주택 및 난방보조	334	1,972	296	1,734	279	1,639	-95	-5.5	3,400
주거보조	30	191	79	357	80	455	98	27.5	791
육아양육비	52	444	378	2,297	395	2,338	41	1.8	4,485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209	1,267	190	1,160	171	1,072	-88	-7.6	1,908
보건, 환경, 체육	116	430	101	466	81	443	-23	-4.9	1,414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69	582	82	602	108	713	111	18.4	2,034
주택	43	454	56	502	77	587	85	16.9	1,286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339	3,171	309	2,788	291	2,858	70	2.5	7,100
지역발전	70	350	45	284	37	221	-63	-22.2	684
석탄채굴	0	1,817	0	1,375	0	1,319	-56	-4.1	1,351
보증	128	301	124	261	98	382	121	46.4	2,050
교통, 통신	855	4,508	911	4,626	826	4,495	-131	-2.8	12,351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529	2,072	571	2,117	534	2,005	-112	-5.3	6,335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1,300	5,161	1,412	6,977	1,445	7,251	274	3.9	16,374
연방 철도기금	446	1,337	463	2,434	467	2,399	-35	-1.4	5,330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291	1,141	346	1,645	350	1,551	-94	-5.7	4,328
금융 일반	1,780	20,818	1,683	18,967	4,786	20,192	1,225	6.5	37,532
이자지출	1,646	20,005	1,529	18,247	4,721	19,729	1,482	8.1	36,751
총재정지출	20,255	139,634	20,996	141,466	26,049	155,292	13,826	9.8	319,500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5~6월, 2009.5~6월, 2010.5~6월

4. 국가채무 동향(5월말 기준)

□ 2010.5.31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 856억유로를 기록

○ 전년에 비해 물가연동국채 100억유로(45.5%), 특별연방채권 190억유로(11.4%), 연방재무부중기채권 110억유로(8.9%) 증가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140억유로(2.3%) 증가한 6,242억유로

〈표 3-Ⅳ-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08.05.31	'09.05.31	'10.05.31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599,218	22,000	32,000	10,000	45.5
연방채권(Federal bonds)[1]	18,000	610,218	624,204	13,986	2.3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164,000	166,000	185,000	19,000	11.4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9,905	9,535	9,437	-98	-1.0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114,000	123,000	134,000	11,000	8.9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35,512	90,598	84,782	-5,816	-6.4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2]	2,104	1,849	758	-1,091	-59.0
독일정부일일채권(German government day-bond)	0	3,313	2,173	-1,140	-34.4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14,620	12,935	12,374	-561	-4.3
Treuhand medium-term notes	205	51	51	0	0.0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0	100	829	729	729.0
합계	957,564	1,039,601	1,085,609	46,008	4.4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8.6월, 2009.6월, 2010.6월

Ⅴ 캐나다 (2010년 5월 기준[28], FY2010-11: 2010.4~2011.3)

1. 세입 및 세출동향

□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44억캐나다달러(CAD)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억달러(41.2%) 감소

○ 경기부양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따른 적자는 18억캐나다달러로, 총재정적자액의 약 40.9%를 차지

○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0%(24억CAD) 증가한 369억캐나다달러로, 이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개인소득세 및 기타수입 증가분이 법인세 및 비거주자 소득세의 감소분을 초과한 데에 따른 결과

○ 프로그램지출은 이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보다 1.4%(5억캐나다달러) 감소하였으며, 이자지출은 이자부 부채에 대한 평균실효금리(average effective interest rate)하락으로 인해 2억캐나다달러 감소

28) 단, [표 Ⅵ-4]의 채무관련 데이터는 2010년 3월 기준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18,769	37,101	17,088	34,541	18,461	36,948	2,407	7.0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5,964	-32,558	-18,138	-36,917	-18,027	-36,400	517	-1.4
이자지출	-2,605	-5,418	-2,494	-5,154	-2,423	-4,977	177	-3.4
재정수지(a)	200	-875	-3,544	-7,530	-1,989	-4,429	3,101	-41.2
예산외(b)	-2,449	-11,811	-318	-5,562	-2,388	-8,979	-3,417	61.4
필요/잉여 재원규모(a+b=c)	-2,249	-12,686	-3,862	-13,092	-4,377	-13,408	-316	2.4
순재원조달 규모(d)	8,690	14,863	3,053	-8,345	9,975	11,129	19,474	-233.4
순현금수지 변화분(c+d)	6,441	2,177	-809	-21,437	5,598	-2,279	19,158	-89.4
기말 현금수지		13,422		23,595		23,342	-253	-1.1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4~5월, 2010.4~5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 5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0%(2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69억캐나다달러

○ (소득세) 고용증가로 인하여 개인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4.2%(7억캐나다달러) 증가하였으나, 법인세(13.5%, 6억캐나다달러) 및 비거주자 소득세(26.9%, 3억캐나다달러)의 감소로 전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0.5%(1억캐나다달러) 감소

○ (소비세) GST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20억캐나다달러, 87.1%)하고, 그 외 에너지세와 기타 소비세 증가분이 수입관세 감소분을 초과하여, 총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48.8%(21억캐나다달러) 증가

○ (고용보험료 및 기타)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4,400만캐나다달러)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은 담배회사와의 합의(civil settlement)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4억캐나다달러) 증가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1,797	24,393	11,045	22,963	11,436	22,838	-125	-0.5
개인소득세	8,553	17,850	8,569	17,591	8,904	18,325	734	4.2
법인세	2,827	5,702	1,996	4,363	2,082	3,775	-588	-13.5
비거주자	417	841	480	1,009	450	738	-271	-26.9
소비세	3,287	5,901	2,310	4,358	3,380	6,484	2,126	48.8
GST (Goods and services tax)	2,130	3,685	1,255	2,288	2,212	4,281	1,993	87.1
에너지세	409	799	388	760	407	796	36	4.7
수입관세	294	609	243	518	244	503	-15	-2.9
기타소비세[1)]	454	808	424	792	517	904	112	14.1
조세수입 소계	15,084	30,294	13,355	27,321	14,816	29,322	2,001	7.3
고용보험료	1,655	3,412	1,696	3,500	1,718	3,544	44	1.3
기타 수입	2,030	3,395	2,037	3,720	1,927	4,082	362	9.7
총재정수입	18,769	37,101	17,088	34,541	18,461	36,948	2,407	7.0

주: 1) FY2008/09는 항공여객안전부과금(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항목을 합산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4~5월, 2010.4~5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5월(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6%(7억캐나다달러) 감소한 414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억캐나다달러) 감소한 364억캐나다달러를 기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인급여 및 자녀수당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1%(1.3억캐나다달러) 증가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은 법정 이전 프로그램의 증가(legislated growth in transfer programs)분이 지역사회 이전의 감소분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3,500만캐나다달러(0.4%) 감소

–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기타 이전지출은 올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억캐나다달러 감소

– 기타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7억캐나다달러) 증가

○ (이자지출) 평균실효금리의 하락을 초과하는 이자부 부채 채권의 증가로 2억캐나다달러(3.4%) 감소

〈표 3-Ⅴ-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2008.4~2008.5)	5월	누계 (2009.4~2009.5)	5월	누계 (2010.4~2010.5)	변동분	%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705	5,405	2,864	5,700	2,937	5,845	145	2.5
고용보험급여	1,026	2,482	1,867	3,735	1,559	3,610	-125	-3.3
자녀수당	1,025	2,042	1,019	2,048	1,074	2,156	108	5.3
소계	4,756	9,929	5,750	11,483	5,570	11,611	128	1.1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1,886	3,772	2,039	4,079	2,157	4,315	236	5.8
CST(Canada Social Transfer)	880	1,760	905	1,810	931	1,863	53	2.9
소계	2,766	5,532	2,944	5,889	3,088	6,178	289	4.9
재정이전	1,449	2,899	1,551	3,177	1,657	3,228	51	1.6
지역사회	0	0	0	957	0	626	-331	-34.6
Quebec주CHT, CST운영비 용대체지급[1]	-220	-439	-224	-448	-246	-492	-44	9.8
소계	3,995	7,992	4,271	9,575	4,499	9,540	-35	-0.4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50	144	83	171	60	141	-30	-17.5
외교 · 통상	285	482	457	588	484	533	-55	-9.4
보건	223	380	235	430	231	449	19	4.4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103	225	92	229	254	413	184	80.3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77	1,036	305	993	375	1,084	91	9.2
산업	95	231	50	191	78	250	59	30.9
기타	620	1,454	1,566	2,708	790	1,559	-1,149	-42.4
소계	1,753	3,952	2,788	5,310	2,272	4,429	-881	-16.6
이전지출 소계	10,504	21,873	12,809	26,368	12,341	25,580	-788	-3.0
기타 프로그램 지출								
국영기업	714	1,483	615	1,414	662	1,452	38	2.7
국방	1,341	2,602	1,407	2,709	1,296	2,652	-57	-2.1
부처별 사업비	3,405	6,600	3,307	6,426	3,728	6,716	290	4.5
기타 프로그램 지출 소계	5,460	10,685	5,329	10,549	5,686	10,820	271	2.6
총프로그램 지출	15,964	32,558	18,138	36,917	18,027	36,400	-517	-1.4
이자지출	2,605	5,418	2,494	5,154	2,423	4,977	-177	-3.4
총재정지출	18,569	37,976	20,632	42,071	20,450	41,377	-694	-1.6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 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4~5월, 2010.4~5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0.3.31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채무는 5,107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

○ 총부채는 8,761억캐나다달러로 작년 대비 6.3% 증가

– 시장성 채권 및 이자부 부채가 각각 767억캐나다달러, 525억캐나다달러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규모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5,747억캐나다달러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구분	08.3.31 (누계)	09.3.31 (누계)	10.3.31 (누계)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110,463	113,999	113,443	-556	-0.5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53,550	295,186	367,877	72,691	24.6
Treasury bills	116,936	192,275	175,675	-16,600	-8.6
Retail debt	13,068	12,532	11,860	-672	-5.4
기타	1,042	523	452	-71	-13.6
소계	384,596	500,516	555,864	55,348	11.1
외국통화표시 채권	9,498	10,381	8,242	-2,139	-20.6
이종통화 스와프 재평가 계정	-1,420	3,690	-4,233	-7,923	-214.7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6,213	-4,751	-5,092	-341	7.2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4,236	4,184	4,163	-21	-0.5
만기 전 채무 소계	390,697	514,020	558,944	44,924	8.7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7,371	139,909	143,113	3,204	2.3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47,901	50,311	54,122	3,811	7.6
기타 채무	5,895	5,923	6,461	538	9.1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91,167	196,143	203,696	7,553	3.9
이자부 부채 소계	581,864	710,163	762,640	52,477	7.4
총부채	692,327	824,162	876,083	51,921	6.3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82,878	122,147	103,223	-18,924	-15.5
외국환 계정	42,299	51,709	46,614	-5,095	-9.9
차관, 투자 및 선급금(순급여)	50,869	125,093	151,531	26,438	21.1
총금융자산	176,046	298,949	301,368	2,419	0.8
순채무	516,281	525,213	574,715	49,502	9.4
비재정자산	58,644	61,503	64,049	2,546	4.1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57,637	463,710	510,666	46,956	10.1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09.3월, 2010.3월

Ⅵ 호주 (2010년 5월 기준, FY2009-10: 2009.7~2010.6)

1. 세입 및 세출동향

□ 2009.7~2010.5월 예산적자는 약 423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0.7% 증가

○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적자폭 확대

–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6.2% 증가

– FY2009-10 연간전망치와 비교할 때 재정수입은 약 22억호주달러 감소, 지출은 약 2억호주달러 감소

□ 미래기금(Future Fund)을 포함한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351억호주달러

□ 2010.5월 누계기준 총부채는 3,370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6.5% 증가

○ 총자산이 9.4% 증가하여 2010.5월 누계기준 순채무는 전년 대비 293.5% 증가

〈표 3-Ⅵ-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누계 (2007.7~2008.5)	5월	누계 (2008.7~2009.5)	5월	누계 (2009.7~2010.5)	누계 기준	%	FY2009
수입	26,860	283,403	25,015	275,929	23,444	273,326	-2,603	-0.9	294,215
지출	23,955	253,155	27,656	285,919	30,167	303,745	17,826	6.2	343,122
순운영수지	2,905	30,249	-2,641	-9,990	-6,723	-30,419	-20,429	204.5	-48,907
순자본투자	371	1,478	553	2,343	738	4,728	2,385	101.8	5,847
재정수지[1]	2,534	28,771	-3,194	-12,333	-7,461	-35,147	-22,814	185.0	-54,753
예산수지[2]	2,221	18,708	-4,605	-21,100	-5,232	-42,341	-21,241	100.7	-57,079
총자산	3,692	242,932	–	299,168	–	327,246	28,078	9.4	317,569
총부채	128	206,834	–	247,495	–	337,935	90,440	36.5	337,706
순채무	-14,844	-50,019	–	-19,405	–	37,551	56,956	-293.5	41,838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 수입 – 지출) – 순자본투자(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09.7~2010.1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전년에 비해 26억호주달러(0.9%) 감소한 2,733억호주달러 규모

○ 소득세는 전년 대비 5.5%(102억호주달러) 감소

○ 기타 소득세 중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40억호주달러(7.2%), 국민연금기금이 30억호주달러(32.0%) 크게 감소

○ 반면 간접세 중 재화 및 서비스세(GST)는 7% 증가하였고, 배당소득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2%(47억호주달러) 증가

〈표 3-Ⅵ-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누계 (2007.7~2008.5)	5월	누계 (2008.7~2009.5)	5월	누계 (2009.7~2010.5)	누계 기준	%	FY2009
총재정수입	26,860	283,403	25,015	275,929	23,444	273,326	-2,603	-0.9	294,215
조세수입	25,487	267,174	23,697	257,327	21,778	250,044	-7,283	-2.8	269,529
소득세	18,818	195,303	16,978	185,135	14,406	174,971	-10,164	-5.5	188,140
개인소득세	14,490	115,536	13,248	114,697	12,659	112,049	-2,648	-2.3	123,350
원천징수	10,499	106,325	9,702	108,145	10,351	109,981	1,836	1.7	119,970
기타 개인소득세	4,960	27,476	5,020	29,420	3,707	25,375	-4,045	-13.7	28,500
환급	970	18,265	1,475	22,869	1,399	23,308	439	1.9	25,120
기타소득세	4,328	79,767	3,730	70,438	1,747	62,922	-7,516	-10.7	64,790
법인세	3,238	62,427	3,000	55,730	1,495	51,739	-3,991	-7.2	53,650
국민연금기금	822	11,801	453	9,250	-31	6,291	-2,959	-32.0	5,990
석유세	-25	1,775	-9	1,930	8	1,272	-658	-34.1	1,480
간접급여세	294	3,764	286	3,529	275	3,622	93	2.6	3,670
간접세	6,669	71,871	6,720	72,192	7,373	75,073	2,881	4.0	81,389
소비세	1,868	21,384	1,939	22,214	2,296	22,591	377	1.7	24,890
관세	509	5,552	483	5,776	445	5,271	-505	-8.7	5,830
재화 · 서비스세[1]	-	-	3,757	40,673	4,252	43,523	2,850	7.0	46,830
기타 간접세	4,292	44,935	541	3,529	380	3,688	0	3,839	0
세외수입[2]	1,372	16,228	1,318	18,602	1,666	23,283	4,681	25.2	24,687
재화 및 서비스매출	483	5,002	536	5,714	695	7,046	1,332	23.3	7,699
이자	545	4,793	277	4,728	422	4,071	-657	-13.9	4,569
배당소득	84	2,863	104	3,190	112	7,500	4,310	135.1	7,426
기타	260	3,570	401	4,970	437	4,666	-304	-6.1	4,993

주: 1) 재화 · 서비스(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s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0.5월(누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037억호주달러를 기록

○ 교육지출 및 공공채무 지급이자의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임

– 교육지출이 전년 대비 74.0%(142억호주달러) 크게 증가, 주거 및 지역사회 개선 55.5%(28억호주달러), 연료 및 에너지 53.1%(26억호주달러), 공공서비스 12.9%(19억호주달러), 의료 6.3%(28억호주달러) 증가

– 반면 공공채무 지급이자도 전년 동기 대비 122.3%(31억호주달러)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9.2%, 10억호주달러), 교통 및 통신(14.4%, 7억호주달러), 기타경상비(13.0%, 8억호주달러) 등은 감소

〈표 3-Ⅵ-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7~5월	5월	7~5월	5월	7~5월	누계 기준	%	FY 2009-10
공공서비스	991	16,469	2,022	14,707	2,075	16,610	1,903	12.9	18,864
국방비	2,301	17,181	2,037	17,007	1,674	17,553	546	3.2	20,620
공공질서 및 안전	299	3,267	565	3,114	236	3,238	124	4.0	3,936
교육	1,340	18,566	3,398	19,158	2,186	33,344	14,186	74.0	34,895
의료	3,712	39,608	4,361	43,788	4,445	46,558	2,770	6.3	52,786
사회보장 및 복지	8,484	86,723	10,132	111,195	8,788	100,956	-10,239	-9.2	109,675
주거 및 지역사회 개선	197	2,422	1,331	4,965	1,694	7,721	2,756	55.5	9,270
여가 및 문화	183	2,296	6	1,611	214	2,512	901	55.9	3,208
연료 및 에너지	416	4,520	384	4,910	478	7,516	2,606	53.1	8,971
농업, 산림, 어업	307	3,314	434	2,237	286	2,444	207	9.3	3,330
광업	105	1,315	288	1,729	254	2,000	271	15.7	1,690
교통 및 통신	322	3,547	841	4,746	651	4,061	-685	-14.4	6,837
기타 경상비	344	5,298	739	6,197	538	5,390	-807	-13.0	8,796
기타 목적	4,953	48,629	1,118	50,556	6,648	53,842	3,286	6.5	60,244
공공채무 지급이자	308	3,240	215	2,557	640	5,685	3,128	122.3	6,514
연금 지급이자	170	1,873	451	5,772	750	6,098	326	5.6	6,695
정부간 이전	4,278	42,934	452	42,148	5,245	41,934	-214	-0.5	47,632
자연재해 구조비용	196	574	0	59	13	125	66	111.9	402
긴급예비비[1)]	1	8	0	20	0	0	-20	-100.0	-999
총지출	23,955	253,155	27,656	285,919	30,167	303,745	17,826	6.2	343,122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0.5월말 일반정부 순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0.7%(624억호주달러) 감소한 107억호주달러 적자 기록

○ 자산이 281억호주달러(9.4%) 증가하였으나, 부채도 904억호주달러(36.5%)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

– 부채 중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 부채규모는 1,627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9%(556억호주달러) 증가

□ 2010.5월말 순채무 규모는 376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5%(570억호주달러) 증가(채무구조 악화)

〈표 3-Ⅵ-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7-08	FY2008-09	FY2009-10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2008.5.31.	2009.5.31.	2010.5.31.	증감액	%	2010.6.30.
자산	242,932	299,168	327,246	28,078	9.4	317,569
금융자산	192,870	207,352	229,303	21,951	10.6	219,197
비금융자산	50,062	91,816	97,943	6,127	6.7	98,372
부채	206,834	247,495	337,935	90,440	36.5	337,706
이자발생부채	692,698	107,163	162,732	55,569	51.9	166,575
예치금	318	329	233	-96	-29.2	230
정부채권	57,743	98,968	150,603	51,635	52.2	154,080
차입	6,431	6,921	11,040	4,119	59.5	11,430
기타	408	944	856	-88	-9.3	835
의무지급금	141,934	140,333	175,203	34,870	24.8	171,131
순자산[1]	36,098	51,673	-10,689	-62,362	-120.7	-20,137
순금융자산[2]	-13,964	-40,143	-108,632	-68,489	170.6	-118,509
순금융부채[3]	–	60,182	135,137	74,955	124.5	144,861
순채무[4]	-50,019	-19,405	37,551	56,956	-293.5	41,838

주: 1) FY2007년도에는 해당 계정이 없이 하위항목 연금부채, 기타 고용자 관련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항목들의 합계 값을 구하였음.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3)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비금융자산 제외)

4)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FY2007-08 보고서에는 본 계정금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계정항목이 없음

5)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8~2010년 각 연도 5월 보고서